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 연구 -

차 현 숙



입법평가 연구 15-17-①-1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 연구 -**

차 현 숙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 연구 -

Study 1 on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Study on 「Exemplary Municipal Ordinances (Bills) 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Based on Experts' Responses to Questionnaires -

연구자 : 차현숙(연구위원)

Cha, Hyun-Sook

2015. 10. 31.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제정 조례 및 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및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조례로의 도약을 위하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이 활발한 실정임
- 이 연구는 지방의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도입하려는 경우 활용 가능한 모범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조례 입법평가 도입의 필요성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 분석
 -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유사 조례 분석
-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인지도 조사
 - 2013년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한 의견 조사
-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 제시

III. 기대효과

- 조례 입법평가 도입시 활용할 수 있는 모범조례안을 제시하여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를 지원하고, 조례 입법평가의 정착을 통하여 좋은 조례가 제정·개정되는데 일조함

▶ 주제어 : 입법평가,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사전적 입법평가, 모범조례안

Abstract

I .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role and functions of local assemblies have been strengthened since 20 years before, when local autonomy was implemented, and consequently the number of bills presented for enactment or amendment of municipal ordinances of each local government has been rapidly increasing.
- Inadequate examination of practical effects, relevancy, possibility to accomplish purposes, and necessity for amending a municipal ordinance in compliance with an amendment of a superior statute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 In order to overcome such problem and make a new leap towards better municipal ordinances, the system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has been actively introduced.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epare and propose an exemplary bill for a municipal ordinance based on responses of experts in local legislature to questionnaires, which may be utilized when a local assembly intends to introduce the system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in conne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a local assembly as it is expected that demands for such system will continually arise.

II. Major Content

- Necessity for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Analysis of “ordinances 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metropolitan/provincial governments
 - Analysis of “ordinances 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Government,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imilar ordinances
- Questionnaire surveys targeting experts
 - Surveys on the level of awareness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Surveys of opinions on checklist items based on the report released in 2013 on the “Study on Standard Municipal Ordinance Bills for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Local Legislature”
- Proposal of an “exemplary municipal ordinance (bill)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III. Expected Effects

- It is expected to render assistance in institutionalizing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by proposing an exemplary municipal ordinance bill that may be utiliz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nd to contribute to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better ordinances by materializing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Key Words : legislative evaluation, local assembly,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ex-ante* legislative evaluation, exemplary municipal ordinance bill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I. 연구의 범위	12
II. 연구방법	13
제 2 장 조례 입법평가 도입 현황 및 관련 조례 분석·평가	17
제 1 절 조례 입법평가 도입 필요성 및 현황	17
I. 조례 발의 및 제정절차	17
II. 제·개정 조례 발의 현황	18
III. 조례 입법평가 도입 현황	25
제 2 절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 분석	27
I.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조문 구성 비교·분석	27
II.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세부사항 비교·분석	30
III.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2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49
I. 전문가 설문조사 개관	49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52

Ⅲ.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요약	102
제 4 장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의 도출	105
제 1 절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의 주요내용	105
Ⅰ.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제명	106
Ⅱ. 조례 입법평가의 목적	106
Ⅲ. 조례 입법평가의 정의	107
Ⅳ. 입법평가의 원칙	108
Ⅴ. 조례 입법평가의 대상 또는 적용범위	108
Ⅵ. 조례 입법평가의 기준	109
Ⅶ. 조례 입법평가의 주체: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114
Ⅷ.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 평가의 시기	116
Ⅸ.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구속력 부여 여부	117
Ⅹ. 시행규칙의 제정	118
제 2 절 ‘조례 입법평가’ 정착을 위한 제언	119
Ⅰ. 사전 입법평가와 사후 입법평가의 환류를 통한 결과 축적 ...	119
Ⅱ. 입법평가서 작성자 등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인력 확보 ...	120
참 고 문 헌	121
부 록 1 조사설문지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 전문가조사	123
부 록 2 조사 통계표	14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자치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입법권이라 한다.¹⁾ 이와 같은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인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상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관 조례가 400여건 이상이며, 해마다 발의되는 조례의 건수도 100여건을 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²⁾

조례가 증가하면서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의문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³⁾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금보다 좋은 조례 입법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최근 도입 현실화 및 도입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에 경기도의회에서 최초로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같은 해 7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 평가조례”가 제정되었다.⁴⁾ 특히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회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개정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여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조례에

1)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5, 59쪽.

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사이트 의안통계, http://www.smc.seoul.kr/program/bill/bill_statistics_01.jsp?menuID=006005001 (2015.9.15. 검색)

3) 전북일보, [민선지방자치 20년 현안 ③ 자치입법권] 지방 조례 제정권 허울뿐, 2015. 6.3.일자,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50772> (2015.6.10.검색).

4) 차현숙·최혜선,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모범조례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3쪽.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는 달리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동 연구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되었으며, 향후 관련 조례제정에 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조례를 대상으로 한 평가지표를 포함하여 지방의회가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모범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모범조례안은 2013년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가조사 등을 통한 보완 및 주요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실제 개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대상 자치단체의 평가기준을 근거로 수행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I.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을 위하여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현재 제정하여 시행 중인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모범조례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배경과 현황에 대하여 개관한다. 또한 현재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확인한다.

나아가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개별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기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 혹은 이와 유사한 조례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 입법평가연구팀의 연구자가 각각 수행하여 제시하며, 이 보고서에서는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범조례안 도출에 활용한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의 2013년도 보고서인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의 적정성 및 보완사항 등을 확인하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여 모범조례안을 도출에 활용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II. 연구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조례 평가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가지표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모범조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문헌연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비교연구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문헌연구는 조례 (입법)평가에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연구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조례 입법평가 관련 조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제4251호로 2013년 7월1일 제정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13년 발의 후 2014년 제정된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2014년 제정된 부산광역시의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입법평가제도가 도입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조례안 제안 시 입안심사기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제정 1년 후에 사후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입법평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 분석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의 개별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입법지원 업무 담당자들에게 대상조례 추천을 받았으며, 추천 받은 개별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상의 평가기준을 잣대로 하여 입법평가연구팀에서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치법규 입안 전문가 및 입법평가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입법평가의 제도화 방향성을 점검하고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에 포함될 체크리스트(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2013년도에 수행되었던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연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전적인 모범조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입법평가연구팀 5인이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담당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결과를 각각 개별 보고서로 작성한다.

연구자	연구분야
차현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비교·분석 - 설문조사 분석 -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 초안 도출
윤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분석 - 경기도 개별 조례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최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분석 - 서울특별시 개별 조례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배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분석 - 광주광역시 개별 조례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백옥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분석 - 부산광역시 개별 조례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위의 표와 같은 업무분장을 통하여 유기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한다. 모범조례안은 초안을 마련하여 원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시하여 조례 입법평가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제 2 장 조례 입법평가 도입 현황 및 관련 조례 분석·평가

제 1 절 조례 입법평가 도입 필요성 및 현황

입법평가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의회에서 제·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이 실질화 되고 있다.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이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4건에 이르는 등 실질화 되고 있는 상황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증가되어 온 제·개정 조례안 발의 건수 및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조례 발의 및 제정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발의 증가 관련 현황을 분석한 후 현재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I. 조례 발의 및 제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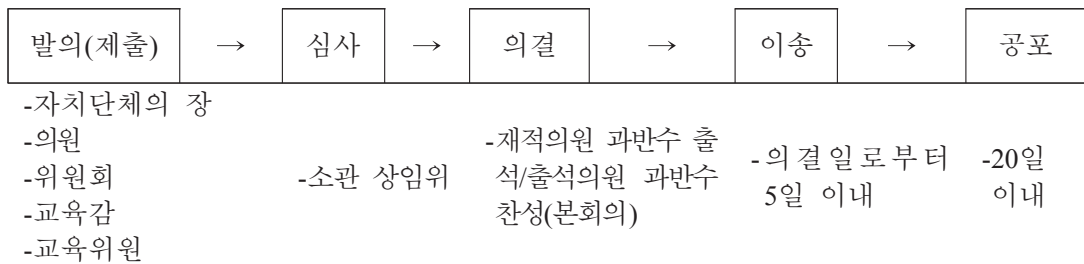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이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근간이 된다.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은 헌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경우 개개의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제정이 가능하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⁵⁾

조례제정의 절차를 발의, 심사, 의결, 이송, 공포의 진행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1> 조례 제정 절차⁶⁾



조례는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위원회, 교육감 및 교육위원이 발의 또는 제출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한다.⁷⁾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개정되는 조례의 발의 현황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II. 제·개정 조례 발의 현황

조례 입법평가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증가되고 있는 제·개정 조례의 건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광역자치단체로 소관 조례의 건수가 많은 서울특별시(약 470건)와 경기도(약 550건)의 조례안 발의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5) 차현숙·최혜선, 앞의 책, 2013, 20쪽.

6) 차현숙·최혜선, 앞의 책, 2013, 22쪽.

7) 안전행정부·한구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가이드, 2014, 28쪽.

먼저 서울특별시의 제8대 의회(2010년 7월 1일~ 2014년 6월 30일)의 의안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1> 서울특별시 제8대 의회 의안 처리현황⁸⁾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총계	1931	1930	1185	345	15	330	55		
조례안	소계	1025	1025	431	304	4	266	20	
	의원	609	609	215	157	2	227	8	
	위원회	54	54	52	1		1		
	시장	298	298	136	115	2	35	10	
	교육감	64	64	28	31		3	2	
재의요구안	(24)	(24)	(8)		(1)	(10)	(5)		
예산안	14	14		14					
결산안	8	8	8						
동의(승인)안	301	300	232	23	4	10	31		
결의안	166	166	146	1	1	18			
건의안	56	56	43	1		12			
의견청취안	65	65	64				1		
규칙안	13	13	5	2	1	5			
기타	소계	217	217	215		1	1		
	중요동의	69	69	68			1		
	안건	148	148	147		1			
청원	66	66	41		4	18	3		

8) 서울특별시의회, 의안통계 홈페이지, http://www.smc.seoul.kr/program/bill/bill_statistics_01.jsp?menuID=006005001(2015.8.21. 검색).

2010년 7월 1일~ 2014년 6월 30일의 기간 동안 운영된 서울특별시 제8대의회의 경우 1025건의 조례가 접수되었다. 이 중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609건이었으며, 이중 227건이 폐기되었고 215건이 원안가결, 157건이 수정가결 되었다.9)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제8대의회의 의원발의 법률안 중 약 37%의 조례안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298건이었으며 이 중 136건이 원안가결, 115건이 수정가결 되었다.10) 시장이 발의한 조례 중 35건이 폐기되었으며 이는 시장 발의 조례안의 11%에 해당한다.

<표2> 서울특별시 의회 제9대 의안처리 현황표11)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총계	722	508	362	93	1	40	13	213	
조례안	소계	465	297	173	80		38	6	167
	의원	343	196	108	53		30	5	146
	위원회	21	21	20			1		
	시장	83	64	35	21		7	1	19
	교육감	18	16	10	6				2
재의요구안									
예산안	7	6	1	4			1	15	

9) 서울특별시의회, 의안통계 홈페이지, http://www.smc.seoul.kr/program/bill/bill_statistics_01.jsp?menuID=006005001(2015.8.21. 검색).

10) 서울특별시의회, 의안통계 홈페이지, http://www.smc.seoul.kr/program/bill/bill_statistics_01.jsp?menuID=006005001(2015.8.21. 검색).

11) 서울특별시의회, 의안통계 홈페이지, http://www.smc.seoul.kr/program/bill/bill_statistics_01.jsp?menuID=006005001&generation_num=009&startDate=2014-07-01&endDate=2015-08-31&startDay=20140701&endDay=20150831(2015년 8월 31일 검색).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내용					미처리
			가 결		부 결	폐 기	철 회	
			원 안	수 정				
결산안	5	5	5					
동의(승인)안	65	46	35	3	1	2	5	19
결의안	36	34	31	3				2
건의안	39	32	31	1				7
의견청취안	20	17	16				1	3
규칙안	3	1	0	1				2
기 타	소 계	66	63	63				3
	중요동의	21	19	19				2
	안 건	45	44	44				1
청 원	16	7	7					9

서울특별시 제9대 의회는 2014년 7월 1일 개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5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제9대 의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2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343건이고, 시장 제출 조례안은 83건이다.¹²⁾ 서울특별시 제8대의회 총 접수 안건이 1931건이며, 의원 발의 조례안의 건수가 609건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2015년 8월 31일 기준의 발의 조례안의 건수는 조례 발의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경기도 제8대 의회(2010년 7월 1일~ 2014년 6월 30일)의 의안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12) 서울특별시의회, 의안통계 홈페이지, http://www.smc.seoul.kr/program/bill/bill_statistics_01.jsp?menuID=006005001&generation_num=009&startDate=2014-07-01&endDate=2015-08-31&startDay=20140701&endDay=20150831(2015년 8월 31일 검색).

<표3> 경기도의회 제8대 의안처리 현황표¹³⁾

구 분	접 수	상정 전	처리결과							계류
			계	가 결		승 인	부 결	철 회	폐 기	
				원 안	수 정					
합 계	1529	1	1528	976	355	20	28	13	136	
조례	소 계	817	817	439	265		15	7	91	
	의원발의	520	520	240	193		8	3	76	
	위원회 제안	23	23	21	1				1	
	도지사 제출	190	190	113	59		4	2	12	
	교육감 제출	84	84	65	12		3	2	2	
규칙안(의회)	14		14	12	1				1	
승인안	49		49	49						
동의안	72		72	60	8		2	2		
중요동의	81		81	81						
결의안	209	1	208	152	37				19	
건의안	58		58	32	16		2		8	
예산·결산안	55		55	8	27	20				
의견청취안	3		3	3						
재 의	19		19	9			2		8	
청 원	24		24	13			3	4	4	
기 타	128		128	118	1		4		5	

13) 경기도의회 제8대 의안처리현황,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의안통계, <http://www.ggc.go.kr/app/bill/statistics/status?menu=4/9/3>(2015년 8월 21일 검색).

경기도 제8대 의회의 경우 동 기간 동안 1529건의 조례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570건이다. 240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193건이 수정가결 되었다.¹⁴⁾ 이 중 91건이 폐기되어 1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은 190건으로 이중 113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59건이 수정가결 되었다.¹⁵⁾ 12건의 조례안이 폐기되어 6%의 비율을 차지한다.

<표4> 경기도의회 제9대 의안처리 현황표¹⁶⁾

구 분	접 수	상정 전	처리결과							계류	
			계	가 결		승인	부결	철회	폐기		
				원안	수정						
합 계	570	2	528	347	153	4	6	4	14	40	
조 례	소 계	321	1	295	160	114		5	2	14	25
	의원발의	235	1	210	106	87		4		13	24
	위원회 제안	21		21	21						
	도지사 제출	51		50	23	23		1	2	1	1
	교육감 제출	14		14	10	4					
규칙안(의회)	4		4	4							
승인안	11		11	11							

14) 경기도의회 제8대 의안처리현황,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의안통계, <http://www.ggc.go.kr/app/bill/statistics/status?menu=4/9/3>(2015년 8월 21일 검색).

15) 경기도의회 제8대 의안처리현황,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의안통계, <http://www.ggc.go.kr/app/bill/statistics/status?menu=4/9/3>(2015년 8월 21일 검색).

16) 경기도의회 제9대 의안처리현황,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의안통계, <http://www.ggc.go.kr/app/bill/statistics/status?menu=4/9/3>(2015년 8월 31일 검색).

제2장 조례 입법평가 도입 현황 및 관련 조례 분석·평가

구분	접수	상정전	처리결과							계류
			계	가결		승인	부결	철회	폐기	
				원안	수정					
동의안	19		18	12	4			2		1
중요동의	28		28	28						
결의안	63	1	52	45	7					10
건의안	56		53	36	17					3
예산·결산안	18		18	3	11	4				
의견청취안	2		2	2						
재의	3		2	1			1			1
청원	3		3	3						
기타	42		42	42						

경기도 제9대 의회는 2014년 7월 1일 개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5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제9대 의회에 접수된 안건은 570건이며, 이 중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235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은 51건에 이르고 있다.¹⁷⁾ 제9대 의회의 임기가 3분의 1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미 지난회기의 절반에 가까운 조례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의 급증현상을 경기도의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대표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면서 소관 조례의 건수가 많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례안 발의 건수를 중심으로 그 증가 추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조례 입법평가 도입에 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7) 경기도의회 제9대 의안처리현황,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의안통계, <http://www.ggc.go.kr/app/bill/statistics/status?menu=4/9/3>(2015년 8월 31일 검색).

Ⅲ. 조례 입법평가 도입 현황

지방자치의 활성화 및 지방의회의 기능강화 등 지방자치 입법 관련 환경의 변화는 제·개정 조례(안) 발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개정 조례(안) 발의의 급증으로 인하여 일부 조례는 그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¹⁸⁾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조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조례가 가지는 사전·사후적 영향을 분석하여 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및 목적달성도를 높여 보다 나은 조례에 도달하고자 하는 시도가 조례 입법평가의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⁹⁾

2015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조례 입법평가를 제도화한 광역단위의 자치단체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4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의회가 중심이 되어 2013년 전국 최초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의회 내외의 의견 수렴 및 숙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경기도조례 제4677호)를 2014년 제정하였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자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며, 전부개정 조례도 제정조례로 보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로 포함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광주광역시 조례 제4251호)는 2013년 7월 전국최초로 제정되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광주광역시규칙 제2935호)」을 통하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18) 제주신보, 특별도 조례 급증...재정비 시급-544건 이르면서 실효성 의문, 불합리한 규제 증가 등 후유증 늘어-, 2015. 4. 27. 기사,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1852>, (2015년 9월 1일 검색).

19) CNBNEWS, 경기도의회, 2년연속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다 수상. 2015. 2. 28. 기사,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80633>, (2015년 9월 1일 검색).

규정하였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 위원회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및 종합보고서의 작성 양식 등 조례 사후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5078호)를 2014년 말에 제정하였다.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는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시장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37호)를 2015년 8월에 제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별표에 따른 입법평가문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동 조례 제4조). 평가대상 조계는 현행 조례 중에서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동 조례 제3조)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 아직까지는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09호)에 따라 조례안을 제안할 때 동 조례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안심사기준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이후 1년 후에 조례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입안심사기준표는 사전적 입법평가와 사후적 입법평가를 시행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하나의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항목이 110여개에 달하므로 너무 많고 중복적인 문항도 있어서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기초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익산시, 제천시 등에서도 조례 입법평가 또는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⁰⁾ 이 보고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례는 제외하고 향후 보다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조례 입법평가 관련 조례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모범조례안 도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 2 절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 분석

이 절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경기도조례 제4677호),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광주광역시 조례 제4251호),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5078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37호)를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아직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도입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09호)를 통하여 사전·사후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관련 유사 조례를 포함하여 분석·평가하기로 한다.

I.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조문 구성 비교·분석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한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입법평가 관련 조례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년 8월 검색.

<표5> 조례 입법평가 관련 조례의 조문 구성 비교²¹⁾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등)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책무)	제3조(평가대상)	제3조(기본원칙)
제4조(입법영향 분석 기준)	제4조(평가대상)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입법평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5조(사전입법 영향분석)	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	제5조(평가대상)	제5조(자료 제출 등)	제5조(예고문 작성)
제6조(사후입법 영향분석)	제6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제6조(평가시기 등)	제6조(용역실시)	제6조(예고방법)
제7조(입법 영향분석 기준 수정의 심의)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제7조(예고기간)
제8조(입법영향 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제8조(기능)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제8조(구성)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시행규칙)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9조(구성·운영)	제9조(운영)	제9조(공청회)
부칙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분석지표 수정)	제10조(협의 등)
별표 1 사전 입법 영향분석 지표	제11조(수당 등)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제11조(입법안 작성)

21) 차현숙, “조례 입법평가 제도의 현황과 전망”, 『입법&정책』 제11호, 서울특별시의회, 2015. 9., 34쪽 <표-1>을 기반으로 조례 입법평가 관련 조례의 조문 구성 비교는 가나다순으로 하고, 아직 도입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는 가장 마지막에 넣어 비교하는 것으로 재구성함.

제 2 절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 분석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별표 2 사후 입법영향분석 지표	제12조(종합결 과보고서 제출)	제12조(종합결 과보고서 제출)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입법안 심사)
	제13조(규칙)	부칙	부칙	제13조(이법안 평가 및 심사 방법)
	부칙		별표 1 입법평 가 분석지표	제14조~제16조 삭제
				제17조(전문)
				제 18 조 (규 칙 등의 제출)
				제19조(공포번호)
				제20조(공포방법)
				제21조(공포일)
				제22조(시행일)
				제23조(자치법 규의 시행유예 기간)
				제24조(사전교 육 등)
				제25조(자치법 규 정비)
				제26조(입법의 견 제출)
				제27조(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 서 주민의 수)

제2장 조례 입법평가 도입 현황 및 관련 조례 분석·평가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칙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서식 1 비용추계서
				서식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구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된 4곳의 조례는 약 12개에서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된 4곳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별표에서 별도로 입법평가를 위한 분석지표를 제시하고 있다(경기도 조례 별표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별표). 경기도를 제외하고 세 곳은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조례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7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위원회에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II.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세부사항 비교·분석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한 광역지방자치단체 4곳의 조례 입법평가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시행일, 평가목적, 평가주기, 평가대상, 평가기준,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결과반영여부 등 조례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경

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모범조례안 도출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제정 및 시행일 비교·분석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일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6>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일 비교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조례 제정일	2014. 1. 10	2013. 7. 1	2014. 11. 5 (2015.1.1. 개정)	2015.8.18	2002.5.20. 제정/ 2015.1.2. 타법개정
조례 시행일	2014. 7. 1	2013. 7. 1	2015. 7. 1	2015.8.18	2002.5.20.(제정 시행일)/현행 2015.1.2.시행

‘조례 입법평가 조례’와 관련하여 입법예고는 경기도가 빨랐지만, 조례의 성안은 광주광역시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2013년 7월 1일에 제정되면서 바로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2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조례 입법평가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례 제정 및 시행 관련 시기 비교에서는 제외한다.

2. 조례의 목적 비교·분석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평가목적은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울특별시

의 조례 제정 목적을 살펴본 바, 공통적으로 조례의 시행효과를 확인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 표와 같다.

<표7>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평가목적 비교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목적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그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경기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	-광주광역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를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을 사전 및 사후에 분석·평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기에 청구에 필요한 연서(連署) 주민의 수를 정하여 입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

3. 평가시행주기 비교·분석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평가시행주기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8>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평가시행주기 비교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 시행주기	-사전평가:입안시(제3조제1항) -사후평가:최초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2016년 12월 시행, 이후 4년마다 매년 12월 중 시행(부칙 제2조)	-2년마다 시행(제5조제2항)	-3년마다 시행(제4조제1항)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후 2년(제3조제1항) -입법평가를 실시한 후 4년 경과(제3조제1항)	-입안시(제11조제1항) -사후평가:시행 후 1년(제25조제1항)

경기도의 경우 사전평가는 입안 시에 행하도록 규정(제3조제1항)하고 있으며, 최초의 사후입법영향분석은 2016년 12월에 시행하고, 이후 4년마다 매년 12월 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부칙 제2조)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2년 마다 시행하도록 규정(제5조제2항)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3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제4조제1항)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및 입법평가를 실시한지 4년이 지난 조례로 규정(제3조제1항)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조례입안기준에 따르면 조례 입안 시 사전심사(제11조제1항)를 하고, 시행 후 1년이 되면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제25조제1항)하고 있으나 실시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평가시행주기를 비교하여 살펴본바 제·개정 이후 최소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입법평가 수행 후 4년이 경과하면 다시 사후 입법평가를 통해서 효과를 평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4. 평가대상 조례 비교·분석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평가대상 조례를 비교·분석하여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9>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평가대상 비교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평가대상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 발의하여 제출하거나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 중	-광주광역시 조례(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4조)	-시의 조례(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외) (제5조)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제4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 -입법평가 대상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 (제3조)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 (제11조, 제25조)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사전·사후 입법 영향 분석 대상에서 제외 (제3조)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4곳은 입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4곳이 공히 입법평가 대상조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제4조)와 부산광역시(제5조)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는 사후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의 경우에도 상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술적 내용의 조례로 분류하고 있는 기관설치 및 조직운영 관련 조례의 경우에도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조례의 목적달성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더 나은 조례로의 진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조례가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만을 담고 있는 조례로 분류할 수 있는지 조문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 하나의 조례가 온전하게 기술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5. 평가기준 비교·분석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평가기준을 비교·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0>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평가기준 비교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평가기준	-별표에서 사전, 사후 입법영향 분석 지표 제시 (별표 1, 별표 2)	-입법 목적의 실현성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제5조제1항)	-입법 목적의 실현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6조제1항)	-별표에서 입법 평가 분석지표 제시 (별표 1)	-별표에서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를 제시하여 점검하도록 함 (별표)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별표에서 분석지표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와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의 경우 입법의 필요성, 적법성/중복성, 비용/의견수렴의 대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별표 1).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의 경우 입법목적의 실현성, 유효

성 및 효율성, 법적합성, 조례의 기여도, 조례와 도민과의 관계, 조례의 필요성의 대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입법의 필요성, 조례의 유효성, 조례의 효율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와 도민의 관계, 조례 유지 필요성, 조례의 적법성, 제주현실 부합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의 9개 대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별표 1). 광주광역시의 경우 평가기준으로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를 들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제5조제1항).

6. 사전·사후 평가 여부 비교·분석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가 사전 입법평가와 사후 입법평가 중 어느 쪽을 도입하고 있는가에 관한 비교는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11>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사전·사후평가 여부 비교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사전	○	×	×	×	○
사후	○	○	○	○	○

경기도(제3조제1항)와 서울특별시(제11조제1항)의 경우 사전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광주광역시(제5조제1항)와 부산광역시(제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제3조제1항)는 규정상 사후 입법평가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목적조항(제1조)에서는 사전·사후로 나누어 조례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대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후 입법평가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향후 동 조례 개정시 반영이 필요하다.

7.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비교·분석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12>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능 비교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평가위원회 구성	-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에서 사후 입법영향분석 수행(이 조례에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은 없음) (제6조)	-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시장이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 - 임기 :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완료시까지 (제7조)	- 부산광역시입법평가위원회 구성(시장이 구성) (제8조)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위촉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제9조 제1항, 제2항) - 임기 :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 (제9조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제7조)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소관 상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임명) - 임기 : 2년(연임가능) (제8조)	×
평가위원회 기능	- 사후 입법영향분석 수행 (제6조 제1항) - 별표에서 정한 입법영향분석 지표의 일부 변경 또는 새로운 입법영향분석	-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	×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심의 (제7조)	-그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각 호)	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음 (제5조제1항) -별표 1에 정한 입법평가분석지표에 따라 평가 실시 (제4조제1항) - 분석 지표의 수정 (제10조)	

경기도의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에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입법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제6조제1항). 광주광역시(제8조)와 부산광역시(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는 입법평가위원회(제7조)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구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의회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제7조제2항)와 부산광역시(제9조제1항)의 경우 15명 이내로, 제주특별자치도(제8조제1항)의 경우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임기는 광주광역시(제8조)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완료시까지, 부산광역시(제9조)의 경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제8조)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1회적인 위원회 운영인지 지속적인 위원회 운영인지 여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제8조)의 경우 사후 입법평가 결과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주된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제7조)와 부산광역시(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제4조)의 경우 위원회에서 사후 입법평가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 정수를 감안한다면 사후 입법평가 전부를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 등에 입법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8. 조례 입법평가서 작성 주체 비교·분석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평가서 작성 주체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3>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평가서 작성 주체 비교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평가서 작성 주체	-사전평가 :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제3조) -사후평가 :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입법영향분석 용역 실시 가능)(제6조)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제6조)	-조례 주관부서의 장이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정리하여 부산광역시 입법평가 위원회에 제출(제7조)	×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자(제11조)

사전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 사후평가는 경기도의회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 광주광역시(제6조)와 부산광역시(제7조)의 경우 대상 조례의 주관부서 장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제11조)하고 있다.

9. 평가 결과 반영 여부 비교 · 분석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평가결과 반영 여부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14>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결과반영 여부 비교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결과 반영	-사전평가 결과 :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통보할 수 있음 (제8조제1항) -사후평가 결과 :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후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음 (제8조제2항)	-원칙 :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 반영 -예외 :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 (제10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11조) -시장은 입법평가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제12조)	-입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제11조)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 입안 심사기준표의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 (제25조제1항0)

경기도를 제외한 4곳은 입법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 혹은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에 대한 개선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경기도는 입법평가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제8조)만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권 침해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하여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인 모범조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경기도조례 제4677호),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광주광역시 조례 제4251호),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5078호) 및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09호)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를 대상으로 실제 입법평가를 수행하여 보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가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수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실제 기준 마련시 시사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서론에서 밝혀두었듯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 자체에 대한 분석과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관련 조례를 기준으로 실제 개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연구는 입법평가연구팀의 개별 연구자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다. 이때의 입법평가는 개별 조례의 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는 법학 전공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진의 한계이며 동시에 시간적 제약에 따른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개별사례 연구가 수행되지 아

니하였다. 이는 연구 기획 단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며, 원거리에 따른 전문가 면담 등 업무 진행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고려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는 모범조례안 도출을 위한 개별연구의 교집합을 찾고자 하는 일환이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및 경기도 개별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표15> 경기도 입법평가 조례의 시사점²²⁾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경우 사후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을 경기도 의회에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평가 주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매우 짧은 기간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으며, 제정이나 전부개정이 아니라 일부개정이거나 하더라도 조례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거나 경기도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후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그 시기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영향분석의 지표가 다소 추상적이고 불필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후 입법영향분석 지표 중 법적합성 항목 중에 “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녀(성별영향)/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등을 차별하는 효과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내용은 법적합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조례규정이 입법이 아닌 다른 영역(차별금지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영향분석 항목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례와 도민의 관계”에 대한 항목은 해당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세부항목의 내용, 도민들의 평가, 도민들이 조례에 대해 낮설게

22) 윤계형, 경기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5, 77-79쪽.

느끼지 않도록 하였는지, 도민들의 이해도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조사)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항목들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개발하여 사후 입법영향분석에 활용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및 광주광역시 개별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표16>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의 시사점²³⁾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경우 입법평가의 목적과 관련하여 “실현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데, “실현성”의 일반적 의미는 가능성을 말하므로 조례의 “실현가능성”이란 의미로 해석한다면 사후 입법평가에서 사전예측적 성격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 입법평가위원회 및 시장은 모두 평가의 수행과 관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직접적인 평가주체가 누구이며, 평가수행과 관련해 각각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갖는지는 보다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이 갖는 불명확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입법평가위원회와 관련하여 임기시작이 불명확하고 활동기간이 유동적으로 단축되어 위원들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 나아가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 사후 입법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를 위해서 전문가 그룹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의 사후입법평가는 ① 입법 목적의 실현성, ②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④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⑤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⑥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⑦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까지 총 7개의 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그러나 인권 및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여부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는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에 그와 관련된 세부 평가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23) 배건이, 광주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5, 109-111쪽.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개별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표17> 부산광역시 입법평가 조례의 시사점²⁴⁾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경우 먼저, 평가대상 조례 선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자치사항을 모두 담는 방법으로 제정된 위임조례의 경우 자치내용에 대한 입법평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조례 입법평가의 대상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입법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기는 하되, 입법평가를 언제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방식에 따르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입법평가가 일정하지 않게 시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최초의 입법평가를 언제 실시할 것인지, 3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부산광역시 입법평가 관련 추진계획에 관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의 내용으로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어서 체계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평가위원회는 추진계획에 관해 심의하고, 추진계획에는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추진계획의 수립과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의 순서 간에 모순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입법평가위원회의 소속이 불분명한 것은 물론 절차적으로도 입법평가위원회가 심의를 마친 경우 입법평가 결과를 어디에 보고하여야 하는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장이 입법평가위원회의 개선사항이 있다는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다시 입법평가를 거칠 수 있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이와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다.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르면 기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서 입법평가위원회가 입법평가 수행 시에 기본 자료의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자료를 토대로 입법평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입법평가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리고 기본 자료

24) 백옥선,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5, 94-101쪽.

의 형식 등에 관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시행규칙 혹은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평가기준은 추상적이므로 실질적인 조례입법평가를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평가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및 개별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표18> 서울특별시 입법평가 관련 조례의 시사점²⁵⁾

서울특별시는 2002년부터 조례입안에 관하여 조례입안작성기준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조례에 관한 입법평가의 제도적 기초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까지 입안심사기준표와 그와 관련된 종합평가서의 작성예가 현저히 적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례의 입안작성기준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입안심사기준표의 111가지 항목이 상위법 및 입법의 필요성에 관하여 매우 의미 있는 사항들을 망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심사항목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내용적으로는 위임입법과 자치입법의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통합 내지 조정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조례입안심사기준표의 작성형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비록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 평가부분 제1항 제3호는 평가결과를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별로 평가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형식을 따르는 예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지금의 작성형식은 체크리스트라는 기능에 맞게 간단히 가부만을 묻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의회에서 조례입안심사기준표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매우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조례입안심사기준표는 사실상 시청 내부의 단계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향후 시청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이를 심사할 때, 시의회가 입안심사기준표를 활용하여 매 항목마다 체크하는 형식을 갖춘다면 조례의 사전평가가 활성화될

25) 최 유,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5, 130-132쪽.

수 있지만 조례입법절차는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며, 시청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화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002년부터 입안기준심사표가 활용되어 있지만 실제 시청내부의 조례입안심사에서 간단한 ‘법제심사조서’만이 작성되고 있다. 이러한 조서조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실정에서 조례입안심사기준표와 관련 자료 등에 관한 입법자료의 보관과 공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별 개별 조례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모범조례안 도출에 활용하기로 한다.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을 위하여 수행된 전문가 설문조사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안 관련 전문가를 모집단으로 하여 유효표본 100명을 유의 할당방식으로 추출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금번 조사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웹 조사(CAWI)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9.8\%$ 이다. 조사기간은 2015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의 7일간이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례 입법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정되어 있는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의 도출에 있어서 2013년의 연구 성과에 대한 사후적 검증 및 조례 입안 관련 실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체크리스트 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 입안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I. 전문가 설문조사 개관

1. 조사 설계

전문가 설문조사의 설계는 다음 표와 같다.

<표19> 조례 입법평가 전문가조사 설계표

모집단	17개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안 전문가
표본크기	유효표본 100명
표본추출	유의 할당 추출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9.8%
조사기간	2015년 9월 3일 - 9월 9일(7일간)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2. 조사 내용

전문가조사는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인지 정도,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시 고려사항 및 입법평가 체크리스트의 항목별 필요 정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인 문항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20> 조례 입법평가 전문가조사 세부항목

구 분	세 부 항 목
조례 입법평가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입법평가 인지도 · 시행 조례 중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조례 · 조례 입법평가 필요성 정도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입법평가 도입 논의 여부 · 조례 입법평가의 주체 · 사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 · 사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 · 조례 입법평가의 시기 · 평가 시기에 따른 평가 기준 · 위임조례 평가 및 기준 · 타 기관의 입법평가지 구속력 인정에 대한 의견
입법평가 항목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평가 체크리스트(분석지표) 대항목 · 세부항목별 중요도 및 신규 포함 항목

3. 응답자 구성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을 위한 전문가조사의 경우 조례 입안 관련 전문가라는 측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할당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연령과 경력에 따른 유의 할당을 하였다.

전문가조사의 구체적인 응답자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21> 응답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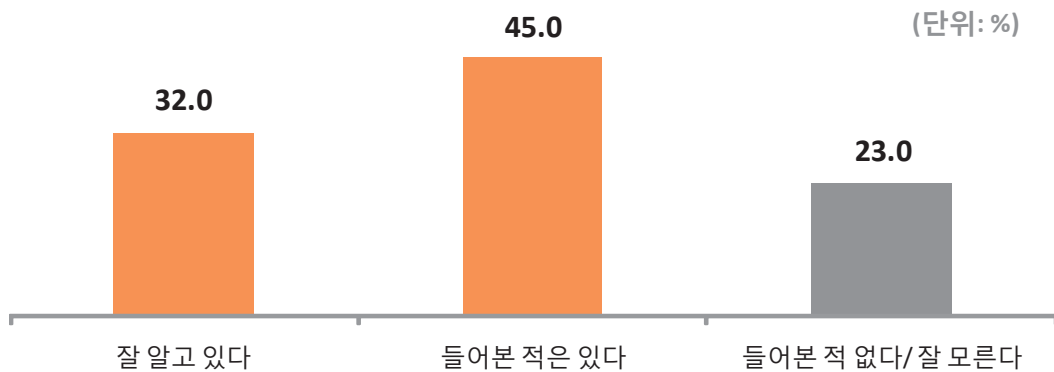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비율 (%)
▣ 전	체 ▣	(100)	100.0
성	별		
	남 자	(63)	63.0
	여 자	(37)	37.0
연	령		
	20대	(1)	1.0
	30대	(21)	21.0
	40대	(41)	41.0
	50세 이상	(37)	37.0
근 무	경력		
	3년 미만	(65)	65.0
	3~5년	(12)	12.0
	5~10년	(6)	6.0
	10년이상	(17)	17.0
근 무	지역		
	서울	(9)	9.0
	인천/경기	(16)	16.0
	경북/대구	(21)	21.0
	부산/울산/경남	(3)	3.0
	광주/전라	(23)	23.0
	대전/충청	(13)	13.0
강원/제주	(15)	15.0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아래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을 세부항목별로 분석하기로 한다.

1. 조례 입법평가 인지

1) 조례 입법평가 인지도



○ 조례 입법평가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77.0%가 인지를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32.0%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3.0%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특성별로 분석하여 볼 때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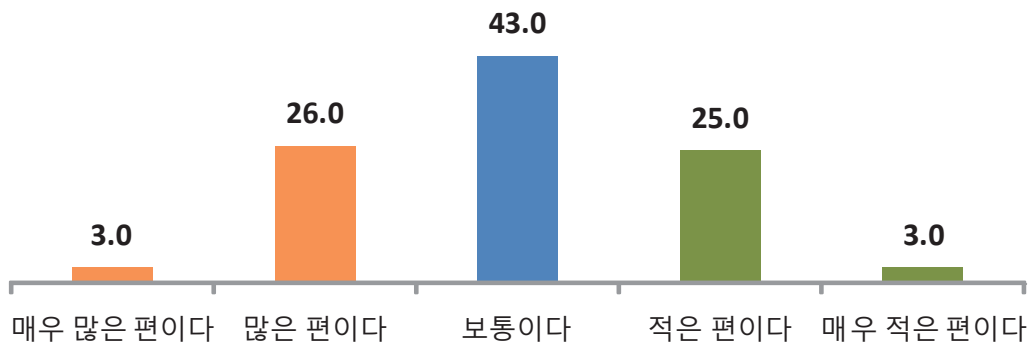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단위 : %)

	사례수 (명)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들어본 적 없다/ 잘 모른다
▣ 전 체 ▣	(100)	32.0	45.0	23.0
연령				
20대	(1)	0.0	100.0	0.0
30대	(21)	28.6	52.4	19.0
40대	(41)	31.7	36.6	31.7
50대 이상	(37)	35.1	48.6	16.2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6.9	55.4	27.7
3~5년	(12)	58.3	25.0	16.7
5~10년	(6)	66.7	16.7	16.7
10년이상	(17)	58.8	29.4	11.8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66.7	28.6	4.8
미도입	(79)	22.8	49.4	27.8
소속				
의회	(66)	42.4	39.4	18.2
집행부	(34)	11.8	55.9	32.4

2) 실효성 없는 조례

(단위: %)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 현재 시행중인 조례 중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조례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29.0%는 ‘많은 편’(매우: 3.0%+많은 편: 26.0%)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적은 편’이라는 응답은 28.0%(적은 편: 25.0%+매우: 3.0%)로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라는 응답은 43%였다.
- 29%의 응답자가 실효성 없는 조례가 많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는 조사결과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입법평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 응답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근무경력이 5~10년차 전문가의 경우, 실효성 없는 조례가 ‘많다’(평균: 3.83점)고 생각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3년 미만의 전문가는 ‘적은 편’(평균: 2.91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례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장기 근무경력자가 실효성 없는 조례가 더 많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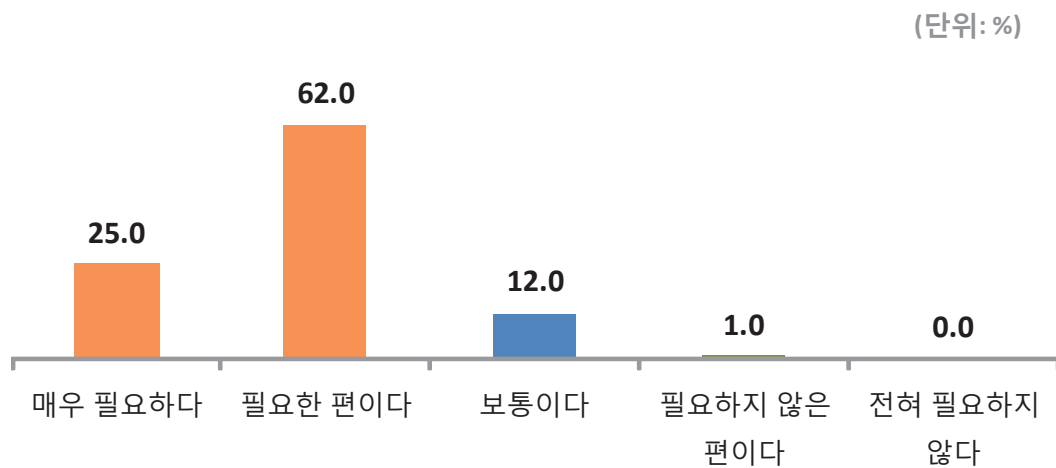
	사례수 (명)	매우 많은 편이다	많은 편이다	보통 이다	적은 편이다	매우 적은 편이다	Top2	Bot2	평 균
■ 전 체 ■	(100)	3.0	26.0	43.0	25.0	3.0	29.0	28.0	3.01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30대	(21)	4.8	33.3	57.1	4.8	0.0	38.1	4.8	3.38
40대	(41)	2.4	29.3	39.0	22.0	7.3	31.7	29.3	2.98
50대 이상	(37)	2.7	18.9	37.8	40.5	0.0	21.6	40.5	2.84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사례수 (명)	매우 많은 편이다	많은 편이다	보통 이다	적은 편이다	매우 적은 편이다	Top2	Bot2	평 균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5	20.0	47.7	29.2	1.5	21.5	30.8	2.91
3~5년	(12)	8.3	33.3	25.0	25.0	8.3	41.7	33.3	3.08
5~10년	(6)	16.7	50.0	33.3	0.0	0.0	66.7	0.0	3.83
10년이상	(17)	0.0	35.3	41.2	17.6	5.9	35.3	23.5	3.06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0.0	28.6	47.6	23.8	0.0	28.6	23.8	3.05
미도입	(79)	3.8	25.3	41.8	25.3	3.8	29.1	29.1	3.00
소속									
의회	(66)	4.5	28.8	42.4	22.7	1.5	33.3	24.2	3.12
집행부	(34)	0.0	20.6	44.1	29.4	5.9	20.6	35.3	2.79

※ 평균값이 높을수록 많은 편에 가까운 것임. 이하 동일함

3) 조례 입법평가의 필요성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 조례 입법평가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조례 입법평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7.0%(매우: 25.0%+필요한편: 62.0%)로 나타나, 10명중 8명 이상이 조례 입법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조례 입안 전문가의 대부분이 조례 입법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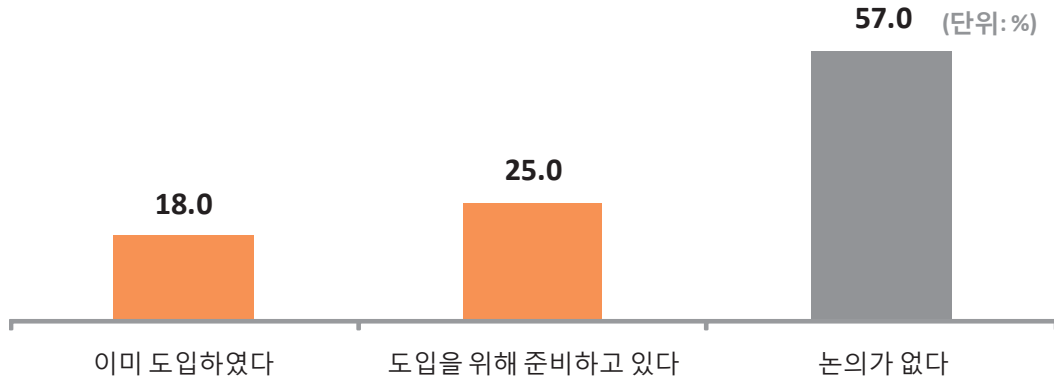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조례 입법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의 질문인 ‘실효성 없는 조례가 많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근무경력이 많은 전문가에게서 많았다는 점과 같은 맥락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필요 하다	필요한 편이다	보통 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Top2	Bot2	평 균
▣ 전 체 ▣	(100)	25.0	62.0	12.0	1.0	87.0	1.0	4.11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4.00
30대	(21)	23.8	61.9	14.3	0.0	85.7	0.0	4.10
40대	(41)	26.8	56.1	17.1	0.0	82.9	0.0	4.10
50대 이상	(37)	24.3	67.6	5.4	2.7	91.9	2.7	4.14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1.5	66.2	10.8	1.5	87.7	1.5	4.08
3~5년	(12)	16.7	66.7	16.7	0.0	83.3	0.0	4.00
5~10년	(6)	50.0	33.3	16.7	0.0	83.3	0.0	4.33
10년이상	(17)	35.3	52.9	11.8	0.0	88.2	0.0	4.24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8.1	61.9	0.0	0.0	100.0	0.0	4.38
미도입	(79)	21.5	62.0	15.2	1.3	83.5	1.3	4.04
소속								
의회	(66)	28.8	59.1	12.1	0.0	87.9	0.0	4.17
집행부	(34)	17.6	67.6	11.8	2.9	85.3	2.9	4.00

2.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시 고려사항

1) 조례 입법평가 도입 논의



○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도입 논의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57.0%는 논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미 도입하였다’는 응답은 18.0%였으며,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25.0%로 나타났다.

▣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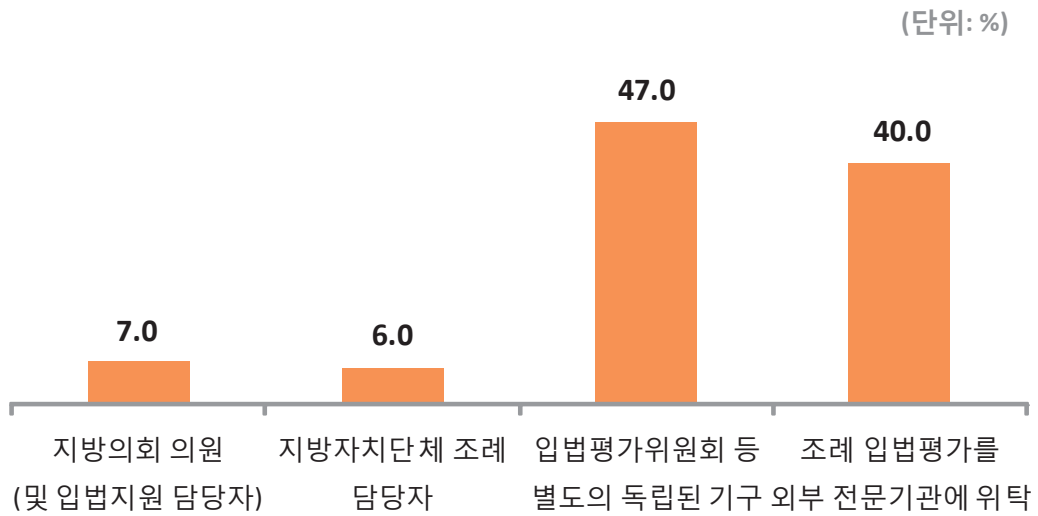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이미 도입하였다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논의가 없다
▣ 전 체 ▣	(100)	18.0	25.0	57.0
연령				
20대	(1)	0.0	0.0	100.0
30대	(21)	28.6	14.3	57.1
40대	(41)	17.1	24.4	58.5
50대 이상	(37)	13.5	32.4	54.1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사례수 (명)	이미 도입하였다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논의가 없다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3.8	27.7	58.5
3~5년	(12)	33.3	25.0	41.7
5~10년	(6)	33.3	0.0	66.7
10년이상	(17)	17.6	23.5	58.8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81.0	19.0	0.0
미도입	(79)	1.3	26.6	72.2
소속				
의회	(66)	19.7	33.3	47.0
집행부	(34)	14.7	8.8	76.5

2) 조례 입법평가의 주체



- 조례 입법평가를 누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입법평가위원회 등 별도의 독립된 기구’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았으며, ‘조례 입법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40.0%)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조례 입법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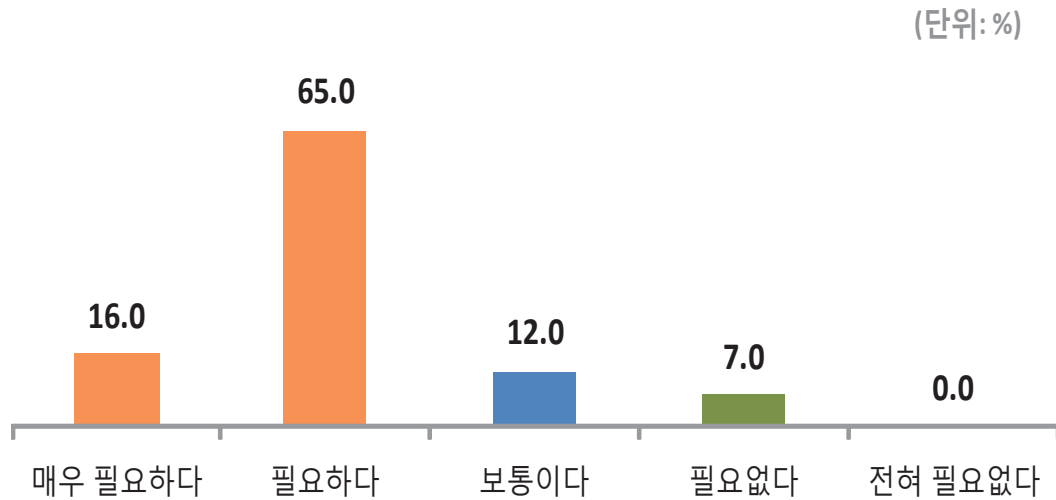
가가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목적달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평가를 통하여 보다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면에서 독립된 기구에서 입법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 ‘별도의 독립된 기구’에서 수행해야한다는 의견은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은 근무경력이 3~5년차에서 5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사례수 (명)	지방의회 의원(및 입법지원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담당자	입법평가위원회 등 별도의 독립된 기구	조례 입법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 전 체 ▣	(100)	7.0	6.0	47.0	40.0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30대	(21)	4.8	9.5	42.9	42.9
40대	(41)	7.3	4.9	56.1	31.7
50대 이상	(37)	8.1	5.4	37.8	48.6
근무경력					
3년 미만	(65)	7.7	6.2	47.7	38.5
3~5년	(12)	0.0	8.3	33.3	58.3
5~10년	(6)	16.7	16.7	50.0	16.7
10년이상	(17)	5.9	0.0	52.9	41.2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9.5	9.5	57.1	23.8
미도입	(79)	6.3	5.1	44.3	44.3
소속					
의회	(66)	9.1	4.5	50.0	36.4
집행부	(34)	2.9	8.8	41.2	47.1

3) 사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



○ 조례 제정 전에 사전적 입법평가가 필요한지를 물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매우: 16.0%+필요하다: 65.0%)로 대다수가 사전적 입법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사전적 입법평가가 ‘필요없다’는 응답은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대부분의 전문가가 사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응답자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사전적 입법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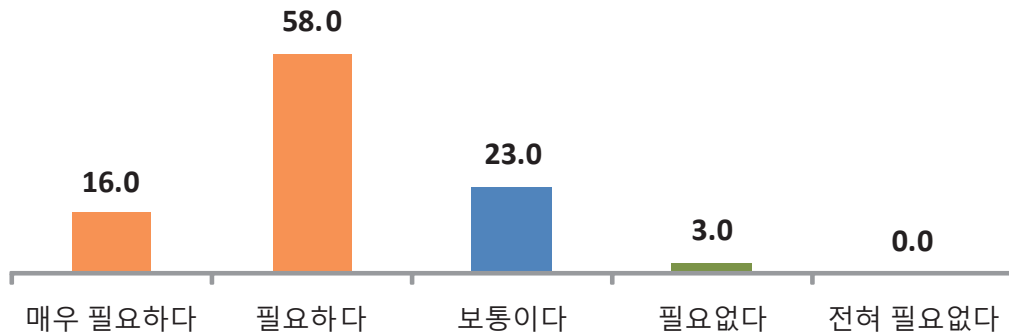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필요 하다	필요 하다	보통 이다	필요 없다	Top2	Bot2	평 균
▣ 전 체 ▣	(100)	16.0	65.0	12.0	7.0	81.0	7.0	3.90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3.00
30대	(21)	19.0	57.1	14.3	9.5	76.2	9.5	3.86
40대	(41)	17.1	63.4	9.8	9.8	80.5	9.8	3.88
50대 이상	(37)	13.5	73.0	10.8	2.7	86.5	2.7	3.97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2.3	70.8	13.8	3.1	83.1	3.1	3.92
3~5년	(12)	16.7	41.7	16.7	25.0	58.3	25.0	3.50
5~10년	(6)	33.3	50.0	0.0	16.7	83.3	16.7	4.00
10년이상	(17)	23.5	64.7	5.9	5.9	88.2	5.9	4.06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23.8	71.4	4.8	0.0	95.2	0.0	4.19
미도입	(79)	13.9	63.3	13.9	8.9	77.2	8.9	3.82
소속								
의회	(66)	16.7	68.2	7.6	7.6	84.8	7.6	3.94
집행부	(34)	14.7	58.8	20.6	5.9	73.5	5.9	3.82

4) 사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

(단위: %)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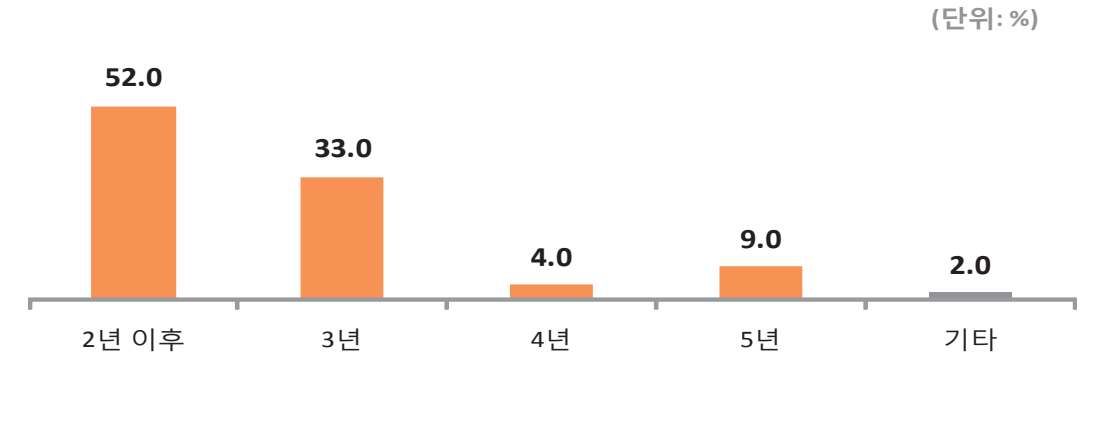
○ 조례 제정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사후적인 입법평가가 필요한지를 물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74.0%(매우: 16.0%+필요하다: 58.0%)로 나타났다. 사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81.0%) 보다는 필요성의 정도가 조금 낮았다. 한편, 사후적 입법평가가 ‘필요없다’는 응답은 3.0%로 사전적 입법평가의 불필요(7.0%) 보다 낮게 나타났다.

▣ 상대적으로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사후적 입법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필요 하다	필요 하다	보통 이다	필요 없다	Top2	Bot2	평 균
▣ 전 체 ▣	(100)	16.0	58.0	23.0	3.0	74.0	3.0	3.87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4.00
30대	(21)	14.3	57.1	19.0	9.5	71.4	9.5	3.76
40대	(41)	17.1	53.7	26.8	2.4	70.7	2.4	3.85
50대 이상	(37)	16.2	62.2	21.6	0.0	78.4	0.0	3.95
근무경력								
3년 미만	(65)	7.7	63.1	24.6	4.6	70.8	4.6	3.74
3~5년	(12)	25.0	50.0	25.0	0.0	75.0	0.0	4.00
5~10년	(6)	33.3	50.0	16.7	0.0	83.3	0.0	4.17
10년이상	(17)	35.3	47.1	17.6	0.0	82.4	0.0	4.18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9.0	66.7	14.3	0.0	85.7	0.0	4.05
미도입	(79)	15.2	55.7	25.3	3.8	70.9	3.8	3.82
소속								
의회	(66)	18.2	63.6	15.2	3.0	81.8	3.0	3.97
집행부	(34)	11.8	47.1	38.2	2.9	58.8	2.9	3.68

5) 사후적 입법평가 시기



- 사후적 입법평가의 시기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2년 이후’라는 응답이 52.0%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년’(33.0%), ‘5년’(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례 입안 전문가들은 사후적 입법평가는 최소한 조례 제·개정 이후 2년이 경과된 후에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하여 ‘기타’ 응답으로는 ‘최소 6개월 이후’ 및 ‘정책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이 언급되었다.
- ▣ 응답자 특성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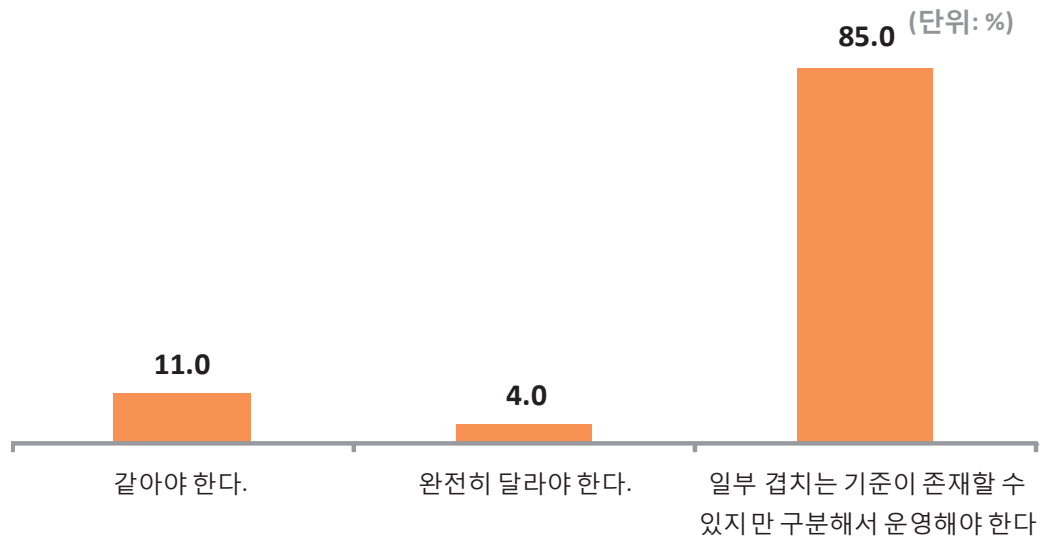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2년 이후	3년	4년	5년	6개월 이후	정책내용 에 따라 결정
▣ 전 체 ▣	(100)	52.0	33.0	4.0	9.0	1.0	1.0
연령							
20대	(1)	100.0	0.0	0.0	0.0	0.0	0.0
30대	(21)	38.1	38.1	9.5	14.3	0.0	0.0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사례수 (명)	2년 이후	3년	4년	5년	6개월 이후	정책내용 에 따라 결정
40대	(41)	46.3	31.7	4.9	12.2	2.4	2.4
50대 이상	(37)	64.9	32.4	0.0	2.7	0.0	0.0
근무경력							
3년 미만	(65)	52.3	35.4	3.1	9.2	0.0	0.0
3~5년	(12)	50.0	16.7	8.3	16.7	8.3	0.0
5~10년	(6)	33.3	50.0	16.7	0.0	0.0	0.0
10년이상	(17)	58.8	29.4	0.0	5.9	0.0	5.9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7.6	42.9	9.5	0.0	0.0	0.0
미도입	(79)	53.2	30.4	2.5	11.4	1.3	1.3
소속							
의회	(66)	48.5	33.3	6.1	10.6	0.0	1.5
집행부	(34)	58.8	32.4	0.0	5.9	2.9	0.0

6) 사전/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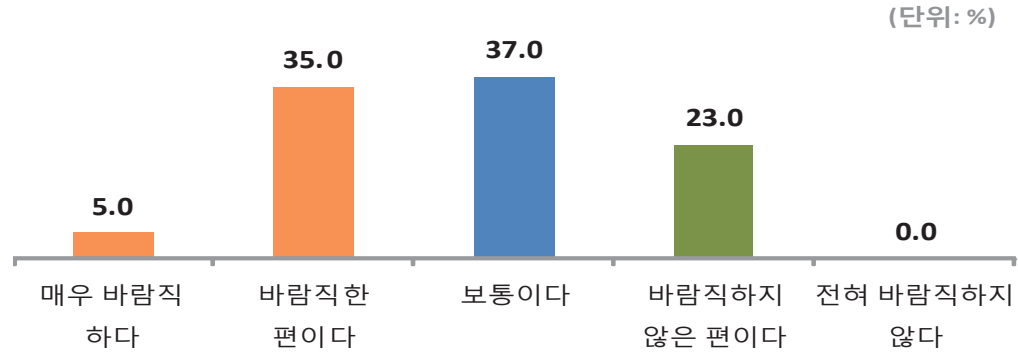
○ 사전적 및 사후적 입법평가의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일부 겹치는 기준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구분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85.0%로 대다수였으며, ‘같아야 한다’는 의견은 11.0%로 조사되었다.

▣ 응답자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사항은 없었다는 점에서 조례 입안 전문가집단은 사전적 입법평가와 사후적 입법평가의 평가기준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같아야 한다	완전히 달라야 한다	일부 겹치는 기준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구분해서 운영해야 한다
▣ 전 체 ▣	(100)	11.0	4.0	85.0
연령				
20대	(1)	0.0	0.0	100.0
30대	(21)	9.5	4.8	85.7
40대	(41)	7.3	2.4	90.2
50대 이상	(37)	16.2	5.4	78.4
근무경력				
3년 미만	(65)	9.2	3.1	87.7
3~5년	(12)	0.0	16.7	83.3
5~10년	(6)	16.7	0.0	83.3
10년이상	(17)	23.5	0.0	76.5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8	14.3	81.0
미도입	(79)	12.7	1.3	86.1
소속				
의회	(66)	12.1	1.5	86.4
집행부	(34)	8.8	8.8	82.4

7) 위임 조례의 입법평가에 대한 적정성



○ 위임조례의 입법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8.0%(매우: 5.0%+바람직한 편:35.0%)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2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임조례의 입법평가에 대해 적정하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상대적으로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위임조례에 대한 평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도입지역의 경우 미도입 지역(평균: 3.14점)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52점으로 특히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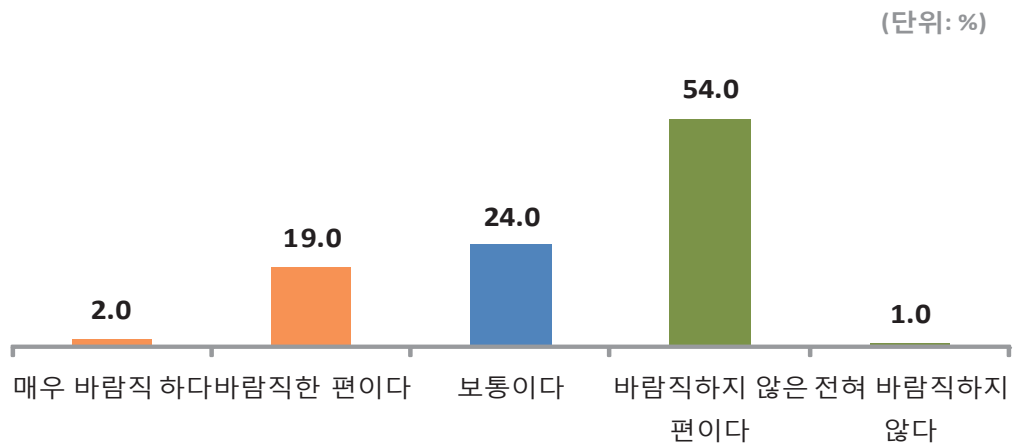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바람직 하다	바람 직한 편이다	보통 이다	바람직 하지 않은 편이다	Top2	Bot2	평 균
▣ 전 체 ▣	(100)	5.0	35.0	37.0	23.0	40.0	23.0	3.22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3.00
30대	(21)	0.0	23.8	47.6	28.6	23.8	28.6	2.95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사례수 (명)	매우 바람직 하다	바람 직한 편이다	보통 이다	바람직 하지 않은 편이다	Top2	Bot2	평 균
40대	(41)	7.3	29.3	39.0	24.4	36.6	24.4	3.20
50대 이상	(37)	5.4	48.6	27.0	18.9	54.1	18.9	3.41
근무경력								
3년 미만	(65)	3.1	32.3	41.5	23.1	35.4	23.1	3.15
3~5년	(12)	16.7	16.7	41.7	25.0	33.3	25.0	3.25
5~10년	(6)	16.7	50.0	0.0	33.3	66.7	33.3	3.50
10년이상	(17)	0.0	52.9	29.4	17.6	52.9	17.6	3.35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9.5	47.6	28.6	14.3	57.1	14.3	3.52
미도입	(79)	3.8	31.6	39.2	25.3	35.4	25.3	3.14
소속								
의회	(66)	4.5	33.3	36.4	25.8	37.9	25.8	3.17
집행부	(34)	5.9	38.2	38.2	17.6	44.1	17.6	3.32

8) 위임 조례와 자치 조례 평가 기준의 동일 적용에 대한 의견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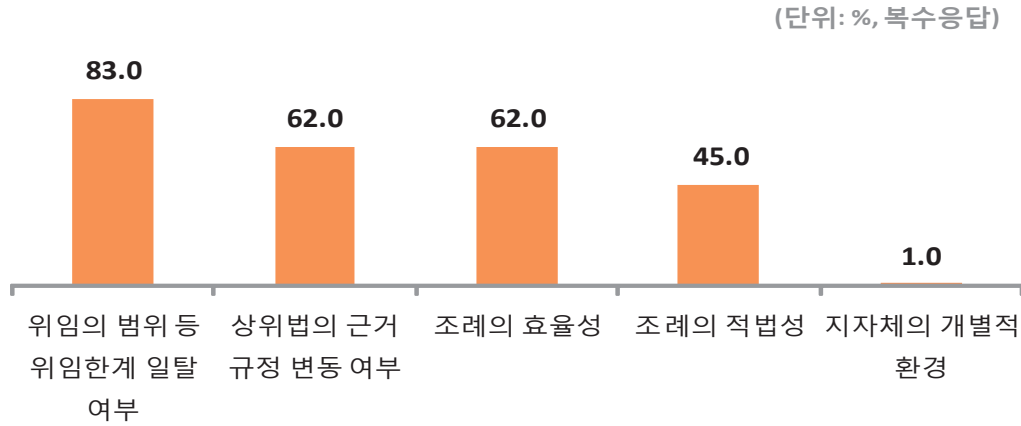
- 위임조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의 평가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질문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5.0%(바람직하지 않는 편: 54.0%+전혀: 1.0%)로 ‘바람직하다’는 의견 21.0%(매우: 2.0%+바람직한 편: 19.0%)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의 평가기준의 동일 적용에 있어 과반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보였다.

▣ 응답자 특성별로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바람직 하다	바람 직한 편이다	보통 이다	바람직 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바람직 하지 않다	Top2	Bot2	평 균
▣ 전 체 ▣	(100)	2.0	19.0	24.0	54.0	1.0	21.0	55.0	2.67
연령									
20대	(1)	0.0	0.0	0.0	100.0	0.0	0.0	100.0	2.00
30대	(21)	0.0	23.8	14.3	57.1	4.8	23.8	61.9	2.57
40대	(41)	0.0	14.6	22.0	63.4	0.0	14.6	63.4	2.51
50대 이상	(37)	5.4	21.6	32.4	40.5	0.0	27.0	40.5	2.92
근무경력									
3년 미만	(65)	3.1	16.9	23.1	56.9	0.0	20.0	56.9	2.66
3~5년	(12)	0.0	8.3	25.0	58.3	8.3	8.3	66.7	2.33
5~10년	(6)	0.0	16.7	50.0	33.3	0.0	16.7	33.3	2.83
10년이상	(17)	0.0	35.3	17.6	47.1	0.0	35.3	47.1	2.88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0.0	28.6	19.0	52.4	0.0	28.6	52.4	2.76
미도입	(79)	2.5	16.5	25.3	54.4	1.3	19.0	55.7	2.65
소속									
의회	(66)	1.5	19.7	22.7	56.1	0.0	21.2	56.1	2.67
집행부	(34)	2.9	17.6	26.5	50.0	2.9	20.6	52.9	2.68

9) 위임 조례 평가의 적합한 기준



○ 위임조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경우 평가기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본 결과, ‘위임의 범위 등 위임한계 일탈 여부’가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상위법의 근거 규정 변동 여부’ 및 ‘조례의 효율성’이 각각 62.0%로 조사되었다.

▣ 응답자 특성별로 응답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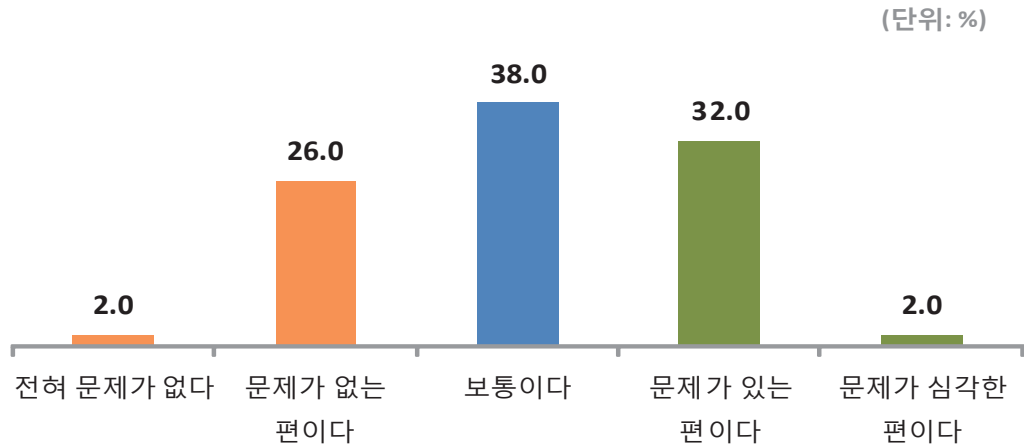
(단위 : %, 복수응답)

	사례수 (명)	위임의 범위 등 위임한계 일탈 여부	상위법의 근거 규정 변동 여부	조례의 효율성	조례의 적법성	지자체의 개별적 환경
▣ 전 체 ▣	(100)	83.0	62.0	62.0	45.0	1.0
연령						
20대	(1)	100.0	0.0	0.0	100.0	0.0
30대	(21)	90.5	66.7	47.6	42.9	0.0
40대	(41)	80.5	65.9	63.4	41.5	2.4
50대 이상	(37)	81.1	56.8	70.3	48.6	0.0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사례수 (명)	위임의 범위 등 위임한계 일탈 여부	상위법의 근거 규정 변동 여부	조례의 효율성	조례의 적법성	지자체의 개별적 환경
근무경력						
3년 미만	(65)	81.5	64.6	63.1	44.6	1.5
3~5년	(12)	91.7	50.0	41.7	58.3	0.0
5~10년	(6)	66.7	66.7	50.0	0.0	0.0
10년이상	(17)	88.2	58.8	76.5	52.9	0.0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85.7	52.4	61.9	38.1	0.0
미도입	(79)	82.3	64.6	62.0	46.8	1.3
소속						
의회	(66)	81.8	62.1	57.6	42.4	1.5
집행부	(34)	85.3	61.8	70.6	50.0	0.0

10) 조례 입법평가의 구속력에 대한 의견



○ 조례 입법평가를 지방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수행한 경우에 그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34.0%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문제가 있는 편: 32.0%+ 심각한 편: 2.0%)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 28.0%(전혀: 2.0%+문제가 없는 편: 26.0%)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부기관의 평가에 대한 구속력 인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 이는 외부기관의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입법권 침해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 외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구속력 인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근무경력 ‘5~10년’의 전문가에게서 83.3%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사례수 (명)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문제가 있는 편이다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2.0	26.0	38.0	32.0	2.0	28.0	34.0	2.94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30대	(21)	0.0	14.3	42.9	42.9	0.0	14.3	42.9	2.71
40대	(41)	0.0	26.8	34.1	36.6	2.4	26.8	39.0	2.85
50대 이상	(37)	5.4	32.4	37.8	21.6	2.7	37.8	24.3	3.16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5	21.5	41.5	35.4	0.0	23.1	35.4	2.89
3~5년	(12)	0.0	25.0	33.3	41.7	0.0	25.0	41.7	2.83
5~10년	(6)	0.0	0.0	16.7	66.7	16.7	0.0	83.3	2.00
10년이상	(17)	5.9	52.9	35.3	0.0	5.9	58.8	5.9	3.53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0.0	33.3	28.6	33.3	4.8	33.3	38.1	2.90
미도입	(79)	2.5	24.1	40.5	31.6	1.3	26.6	32.9	2.95
소속									
의회	(66)	1.5	28.8	33.3	33.3	3.0	30.3	36.4	2.92
집행부	(34)	2.9	20.6	47.1	29.4	0.0	23.5	29.4	2.97

11) 조례 입법평가의 제도화 관련 문제점

- 조례 입법평가의 제도화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개방형 질문지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15.0%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 마련/절차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와 ‘입법평가는 외부기관(전문가)에서 수행해야 하며,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13.0%로 나타났다.

(단위 : %, 복수응답)

응답내용	%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구속력이 있어야 함	15.0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 마련해야/절차의 정비 등이 필요	13.0
입법평가는 외부기관(전문가)에서 수행/독립성이 중요	13.0
의원의 압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운영이 필요	10.0
입법권 제한이라는 부정적 의견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이 필요함	10.0
조례입법평가가 조례제정활동을 위축할 수 있음	7.0
입법평가는 반드시 필요함	7.0
입법평가가 법률의 지연,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7.0
준거기준에 입각한 평가가 필요(지역특수성, 차별적 평가 필요)	3.0
없 음	16.0
모름/무응답	8.0

3. 입법평가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체크리스트의 항목별 평가를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체크리스트는 설문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 입법평가 도입 현황을 반영하여 조례 입법평가를 이미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4곳이 공히 도입한바 있는 사후적 입법평가를 기준으로 놓고 제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문의하였다. 전문가조사 설문지의 기준이 된 사후적 입법평가 체크리스트는 2013년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지표를 중심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2013년에 수행된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에서는 일본 사례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최소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체크해야 하는 항목으로 ① 필요성, ② 유효성, ③ 효율성, ④ 공평성, ⑤ 협동성(참가성), ⑥ 적법성을 대항목으로 두고 각각의 항목에 세부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²⁶⁾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 2013년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진화된 모범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목과 세부항목을 대상으로 각각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개방형 응답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래에서는 체크리스트의 항목별 평가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분석한다.

1) 입법평가지 포함되어야 하는 대항목

- 조례 입법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제시되었던 6개의 대항목 이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항목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

26) 차현숙·최혜선, 앞의 책, 2013, 114쪽.

‘치성/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로 나타났으며, ‘시의성’ 및 ‘합목적성’은 7.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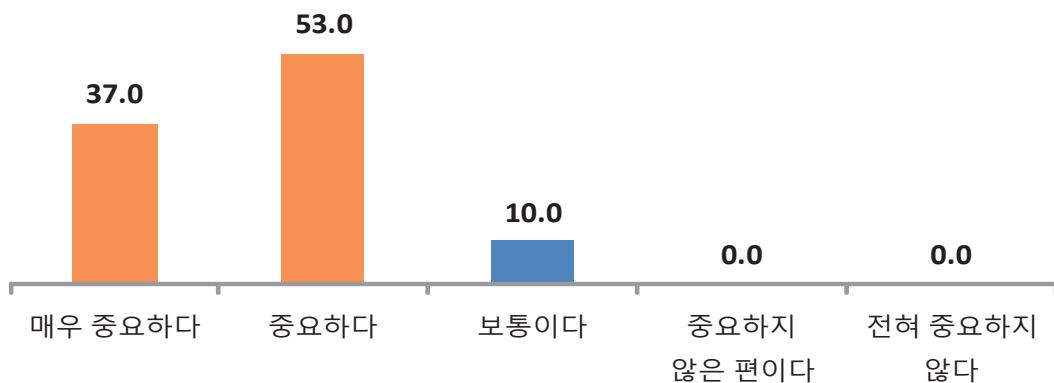
○ 한편, ‘추가항목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48.0%로 조사되었다.

(단위 : %, 복수응답)

응답내용	%
가치성/효과성	9.0
실현가능성	9.0
적정/적합성	9.0
시의성	7.0
합목적성	7.0
중복여부	6.0
공익성	5.0
지역/특수/차별성	4.0
경제성	3.0
만족도	2.0
추가항목 없음	48.0

2) 필요성 항목의 중요도

(단위: %)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 입법평가시 대항목인 ‘필요성’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90.0%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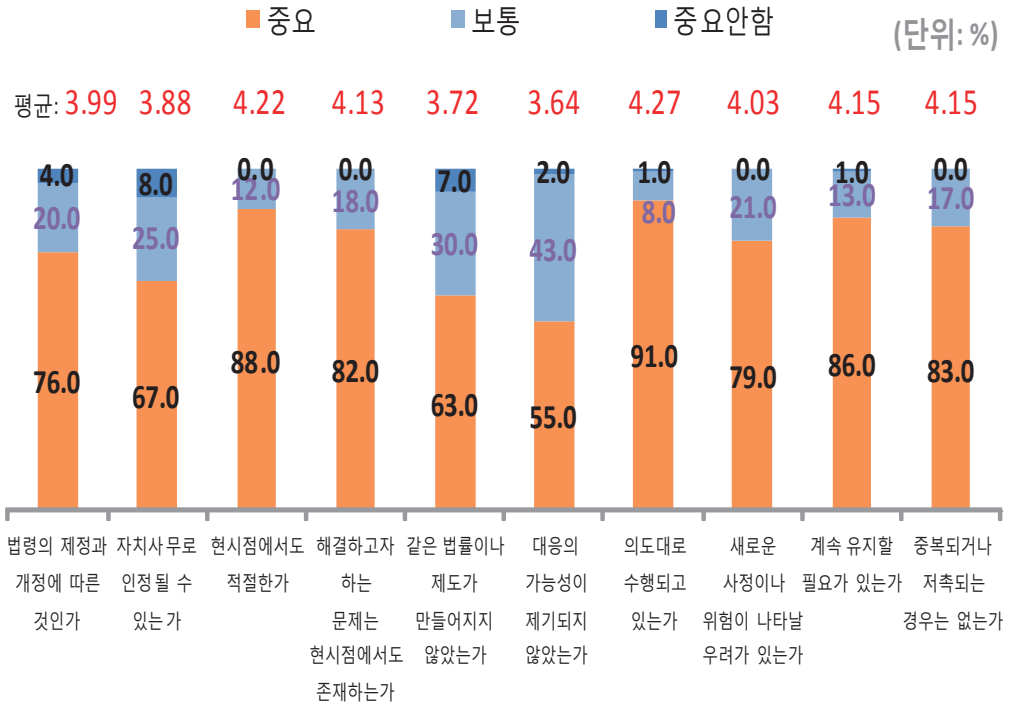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성’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Top2	평 균
▣ 전 체 ▣	(100)	37.0	53.0	10.0	90.0	4.27
연령						
20대	(1)	0.0	100.0	0.0	100.0	4.00
30대	(21)	23.8	71.4	4.8	95.2	4.19
40대	(41)	39.0	48.8	12.2	87.8	4.27
50대 이상	(37)	43.2	45.9	10.8	89.2	4.32
근무경력						
3년 미만	(65)	33.8	52.3	13.8	86.2	4.20
3~5년	(12)	41.7	58.3	0.0	100.0	4.42
5~10년	(6)	33.3	66.7	0.0	100.0	4.33
10년이상	(17)	47.1	47.1	5.9	94.1	4.41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8.1	57.1	4.8	95.2	4.33
미도입	(79)	36.7	51.9	11.4	88.6	4.25
소속						
의회	(66)	36.4	54.5	9.1	90.9	4.27
집행부	(34)	38.2	50.0	11.8	88.2	4.26

※ 평균값이 높을수록 중요하다는 편에 가까운 것임. 이하 동일함

2-1)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 필요성의 세부항목 10개에 대해서는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은 그 의도대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가’의 항목에 대한 중요도가 평균 4.2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조례의 목적이 현 시점에도 적절한가’ 항목이 4.22점으로 높았다.

▣ 조례가 제정시의 ‘의도대로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도는 근무경력이 ‘3~5년’차 전문가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조례의 목적이 현 시점에도 적절한가’에 대한 중요도는 ‘5~10년’차 전문가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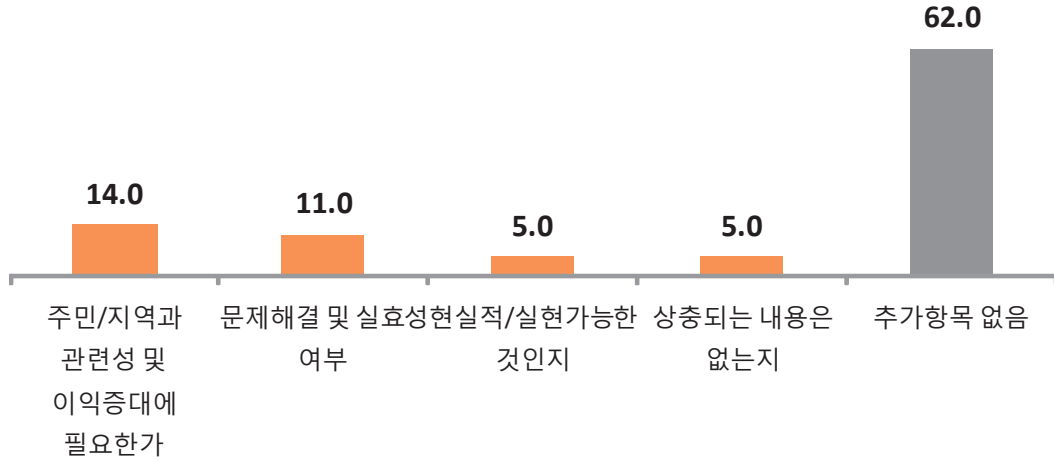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단위 : 5점 평균)

	사례수 (명)	법령의 제정과 개정 에 따른 것인가	자치 사무로 인정 될수 있는가	현시점 에서도 적절 한가	해결 하고자 하는 문제는 현시점 에서도 존재 하는가	같은 법률 이나 제도가 만들어 지지 않았 는가	대응의 가능성이 제기 되지 않았 는가	의도 대로 수행 되고 있는가	새로운 사정 이나 위험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중복 되거나 저속 되는 경우는 없는가
■ 전 체 ■	(100)	3.99	3.88	4.22	4.13	3.72	3.64	4.27	4.03	4.15	4.15
연령											
20대	(1)	5.00	5.00	3.00	4.00	3.00	3.00	4.00	4.00	4.00	4.00
30대	(21)	4.14	3.90	4.10	4.10	3.67	3.48	4.24	3.67	4.00	4.10
40대	(41)	3.98	3.95	4.20	4.07	3.76	3.61	4.34	4.17	4.27	4.24
50대 이상	(37)	3.89	3.76	4.35	4.22	3.73	3.78	4.22	4.08	4.11	4.08
근무경력											
3년 미만	(65)	4.02	3.77	4.14	4.05	3.65	3.66	4.15	3.91	4.12	4.06
3~5년	(12)	4.00	4.08	4.33	4.42	4.00	3.75	4.58	4.25	4.08	4.50
5~10년	(6)	3.50	4.33	4.50	4.00	3.50	3.50	4.50	4.33	4.33	4.17
10년이상	(17)	4.06	4.00	4.35	4.29	3.88	3.53	4.41	4.24	4.24	4.24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76	3.86	4.19	4.14	3.33	3.33	4.24	4.14	4.10	3.90
미도입	(79)	4.05	3.89	4.23	4.13	3.82	3.72	4.28	4.00	4.16	4.22
소속											
의회	(66)	3.85	3.83	4.15	4.14	3.70	3.68	4.32	4.11	4.21	4.21
집행부	(34)	4.26	3.97	4.35	4.12	3.76	3.56	4.18	3.88	4.03	4.03

2-2) 필요성 항목의 추가 사항

(단위: %, 복수응답)



○ 필요성 항목에 추가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서는 62.0%가 ‘추가항목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14.0%는 ‘주민/지역과 관련성 및 이익증대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응답자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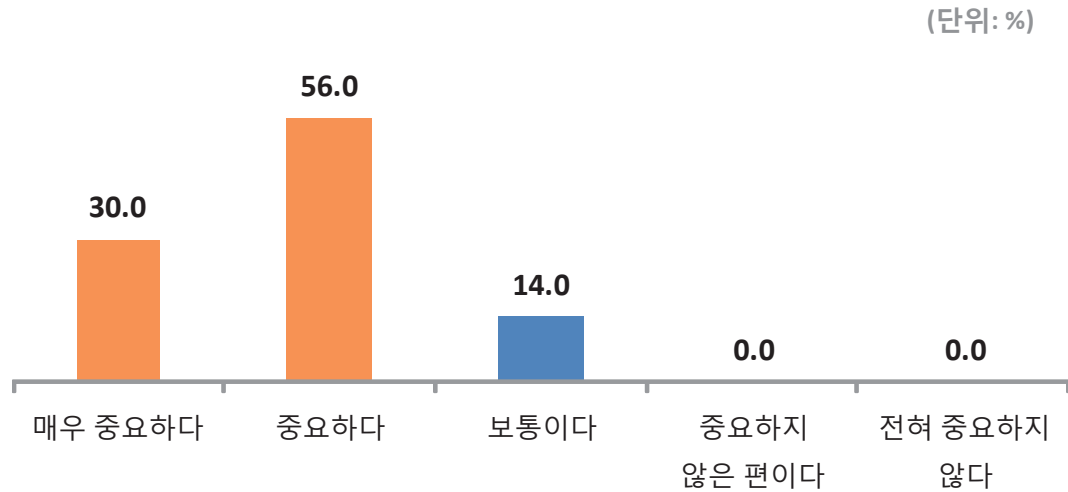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주민/지역과 관련성 및 이익증대에 필요한가	문제해결/ 실효성	현실적/ 실현가능한 것인지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추가항목 없음
▣ 전 체 ▣	(100)	14.0	11.0	8.0	5.0	62.0
연령						
20대	(1)	0.0	0.0	0.0	0.0	100.0
30대	(21)	9.5	9.5	14.3	0.0	66.7
40대	(41)	12.2	14.6	7.3	7.3	58.5
50대 이상	(37)	18.9	8.1	5.4	5.4	62.2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사례수 (명)	주민/지역과 관련성 및 이익증대에 필요한가	문제해결/ 실효성	현실적/ 실현가능한 것인지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추가항목 없음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5.4	13.8	4.6	3.1	63.1
3~5년	(12)	8.3	0.0	16.7	0.0	75.0
5~10년	(6)	16.7	16.7	16.7	0.0	50.0
10년이상	(17)	11.8	5.9	11.8	17.6	52.9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9.0	4.8	4.8	4.8	66.7
미도입	(79)	12.7	12.7	8.9	5.1	60.8
소속						
의회	(66)	13.6	13.6	7.6	3.0	62.1
집행부	(34)	14.7	5.9	8.8	8.8	61.8

3) 유효성 항목의 중요도



○ 입법평가시 대항목인 ‘유효성’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86.0%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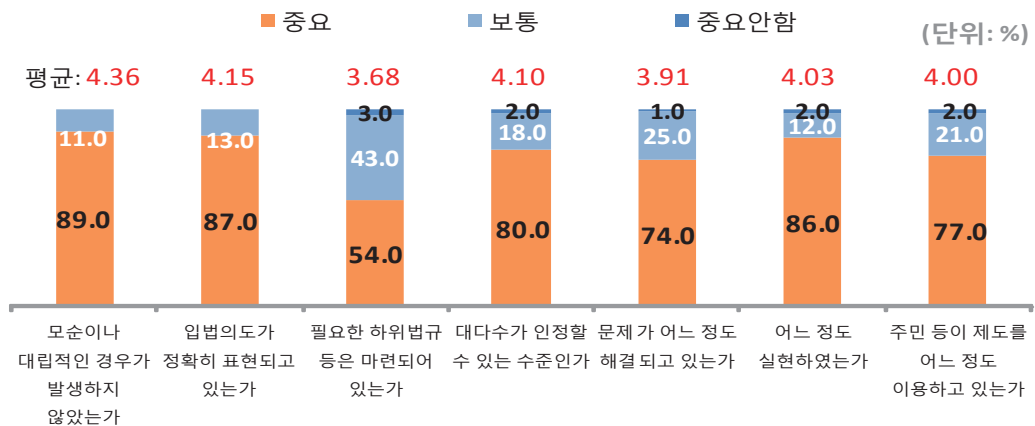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 상대적으로 근무경력이 ‘3~5년’차 전문가에게서 ‘유효성’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속별로 및 입법평가 도입여부에 대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Top2	평 균
▣ 전 체 ▣	(100)	30.0	56.0	14.0	86.0	4.16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3.00
30대	(21)	14.3	76.2	9.5	90.5	4.05
40대	(41)	31.7	58.5	9.8	90.2	4.22
50대 이상	(37)	37.8	43.2	18.9	81.1	4.19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3.1	58.5	18.5	81.5	4.05
3~5년	(12)	50.0	41.7	8.3	91.7	4.42
5~10년	(6)	33.3	66.7	0.0	100.0	4.33
10년이상	(17)	41.2	52.9	5.9	94.1	4.35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8.1	52.4	9.5	90.5	4.29
미도입	(79)	27.8	57.0	15.2	84.8	4.13
소속						
의회	(66)	31.8	53.0	15.2	84.8	4.17
집행부	(34)	26.5	61.8	11.8	88.2	4.15

3-1) 유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 유효성의 세부항목 7개에 대해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는가’의 항목에 대한 중요도가 평균 4.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조례 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항목이 4.15점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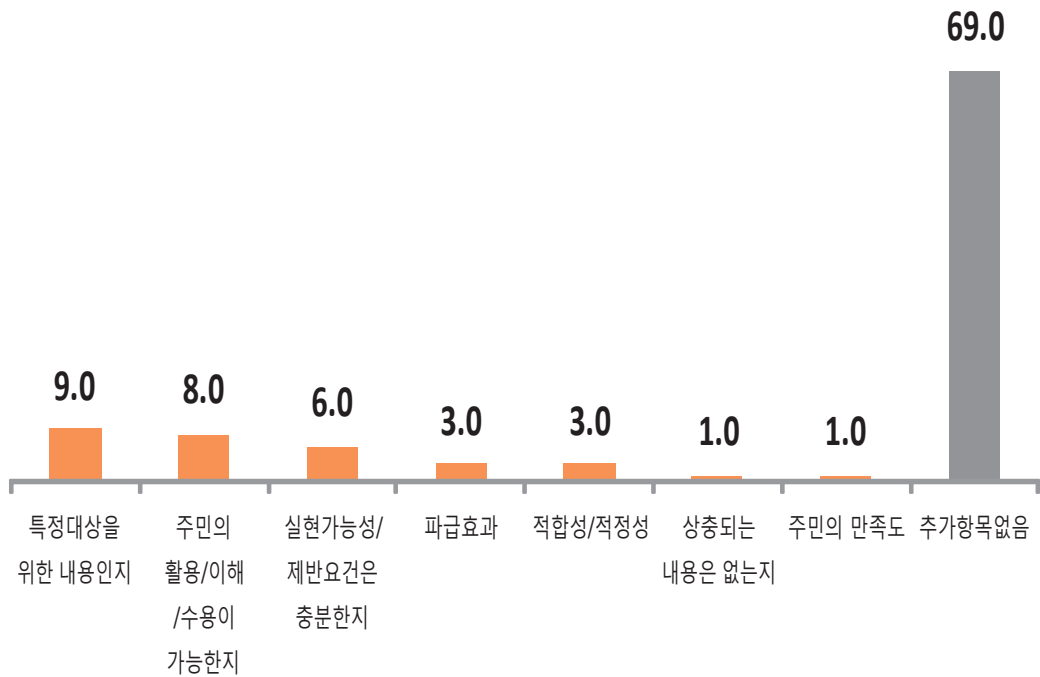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중요도는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5점 평균)

	사례수 (명)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필요한 하위법규 등은 마련되어 있는가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실현 하였는가	주민 등이 제도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가
▣ 전 체 ▣	(100)	4.36	4.15	3.68	4.10	3.91	4.03	4.00
연령								
20대	(1)	5.00	3.00	3.00	3.00	3.00	3.00	3.00
30대	(21)	4.14	4.05	3.52	3.95	3.76	4.19	3.76
40대	(41)	4.41	4.24	3.83	4.05	4.05	3.95	4.02
50대 이상	(37)	4.41	4.14	3.62	4.27	3.86	4.05	4.14
근무경력								
3년 미만	(65)	4.29	4.20	3.68	4.12	3.92	4.02	3.98
3~5년	(12)	4.42	4.17	3.67	4.08	4.08	4.33	3.83
5~10년	(6)	4.50	3.67	3.00	3.00	3.33	3.50	3.83
10년이상	(17)	4.53	4.12	3.94	4.41	3.94	4.06	4.24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33	4.10	3.43	4.33	3.86	4.10	4.00
미도입	(79)	4.37	4.16	3.75	4.04	3.92	4.01	4.00
소속								
의회	(66)	4.38	4.15	3.64	4.17	3.94	4.06	4.03
집행부	(34)	4.32	4.15	3.76	3.97	3.85	3.97	3.94

3-2) 유효성 항목의 추가 사항

(단위: %, 복수응답)



○ 유효성 항목에 추가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69.0%가 ‘추가항목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특정대상을 위한 내용인지’(9.0%), ‘주민의 활용/이해/수용이 가능한지’(8.0%) 등의 항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실현가능성/제반요건 충분성’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도입지역에서 1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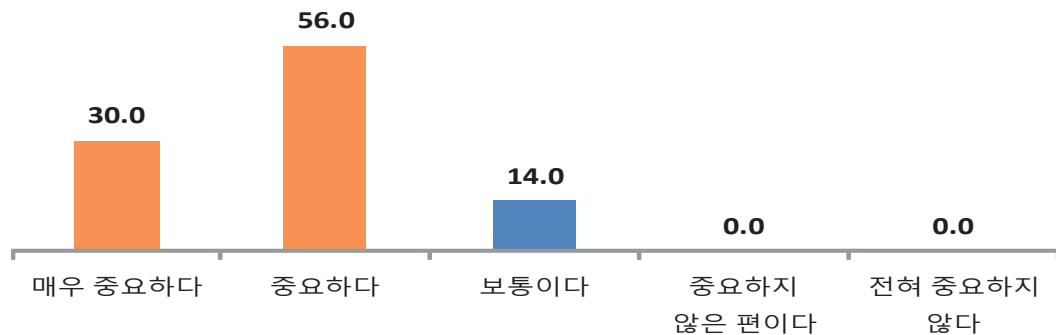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단위 : %, 복수응답)

	사례수 (명)	다수의 편의 인지, 특정 대상을 위한 내용 인지	주민의 활용/ 이해/ 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실행 가능성/ 제반 요건 충분성	파급 효과	적합성/ 적정성	상충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만족도	추가 항목 없음
▣ 전 체 ▣	(100)	9.0	8.0	6.0	3.0	3.0	1.0	1.0	69.0
연령									
20대	(1)	0.0	0.0	0.0	0.0	0.0	0.0	0.0	100.0
30대	(21)	9.5	4.8	9.5	4.8	4.8	0.0	0.0	66.7
40대	(41)	12.2	4.9	7.3	2.4	0.0	2.4	2.4	68.3
50대 이상	(37)	5.4	13.5	2.7	2.7	5.4	0.0	0.0	70.3
근무경력									
3년 미만	(65)	6.2	6.2	4.6	3.1	4.6	1.5	1.5	72.3
3~5년	(12)	16.7	8.3	8.3	0.0	0.0	0.0	0.0	66.7
5~10년	(6)	33.3	0.0	0.0	0.0	0.0	0.0	0.0	66.7
10년 이상	(17)	5.9	17.6	11.8	5.9	0.0	0.0	0.0	58.8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9.5	4.8	14.3	4.8	0.0	0.0	0.0	66.7
미도입	(79)	8.9	8.9	3.8	2.5	3.8	1.3	1.3	69.6
소속									
의회	(66)	10.6	6.1	4.5	4.5	1.5	1.5	1.5	69.7
집행부	(34)	5.9	11.8	8.8	0.0	5.9	0.0	0.0	67.6

4) 효율성 항목의 중요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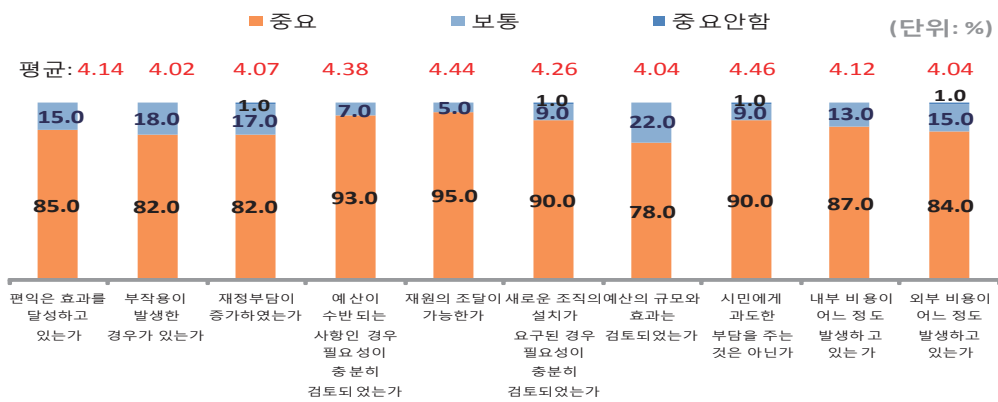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 입법평가시 대항목인 ‘효율성’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86.0%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 상대적으로 근무경력이 ‘5~10년’차 전문가에게서 ‘효율성’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Top2	평 균
▣ 전 체 ▣	(100)	34.0	57.0	9.0	91.0	4.25
연령						
20대	(1)	0.0	100.0	0.0	100.0	4.00
30대	(21)	23.8	66.7	9.5	90.5	4.14
40대	(41)	36.6	53.7	9.8	90.2	4.27
50대 이상	(37)	37.8	54.1	8.1	91.9	4.30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4.6	64.6	10.8	89.2	4.14
3~5년	(12)	50.0	41.7	8.3	91.7	4.42
5~10년	(6)	50.0	50.0	0.0	100.0	4.50
10년이상	(17)	52.9	41.2	5.9	94.1	4.47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2.9	47.6	9.5	90.5	4.33
미도입	(79)	31.6	59.5	8.9	91.1	4.23
소속						
의회	(66)	33.3	59.1	7.6	92.4	4.26
집행부	(34)	35.3	52.9	11.8	88.2	4.24

4-1) 효율성 세부 항목의 중요도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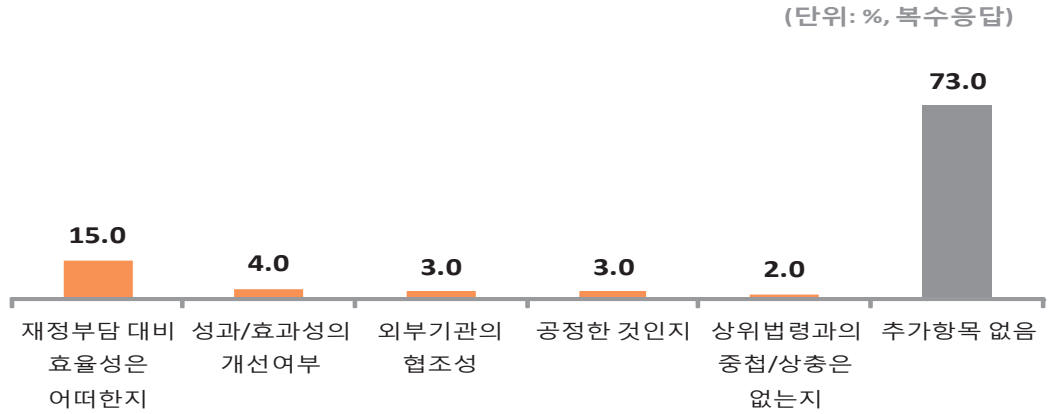
○ 효율성의 세부항목 10개에 대해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의 항목에 대한 중요도가 평균 4.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의 확보 등 재원의 조달이 가능한가’ 항목이 4.44점으로 높았다.

▣ 응답자 특성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단위 : 5점 평균)

	사례수 (명)	편익은 효과를 달성 하고 있는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재정 부담이 증가 하였 는가	예산이 수반 되는 사항인 경우 충분히 검토되 었는가	재원의 조달이 가능 한가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된 경우 충분히 검토 되었 는가	예산의 규모와 효과는 검토 되었 는가	시민 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내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 하고 있는가	외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 하고 있는가
▣ 전 체 ▣	(100)	4.14	4.02	4.07	4.38	4.44	4.26	4.04	4.46	4.12	4.04
연령											
20대	(1)	4.00	4.00	4.00	4.00	5.00	5.00	4.00	5.00	5.00	4.00
30대	(21)	3.95	3.86	3.95	4.24	4.33	4.10	3.95	4.10	4.00	3.81
40대	(41)	4.12	4.10	4.17	4.41	4.44	4.34	4.10	4.51	4.17	4.12
50대 이상	(37)	4.27	4.03	4.03	4.43	4.49	4.24	4.03	4.59	4.11	4.08
근무경력											
3년 미만	(65)	4.03	4.02	4.05	4.35	4.46	4.29	4.06	4.48	4.11	4.08
3~5년	(12)	4.42	4.17	4.25	4.42	4.25	4.25	4.00	4.58	4.42	4.08
5~10년	(6)	4.50	3.83	4.17	4.17	4.33	4.33	4.00	4.17	3.67	3.67
10년이상	(17)	4.24	4.00	4.00	4.53	4.53	4.12	4.00	4.41	4.12	4.00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19	3.86	4.19	4.38	4.29	4.29	3.95	4.48	3.95	3.95
미도입	(79)	4.13	4.06	4.04	4.38	4.48	4.25	4.06	4.46	4.16	4.06
소속											
의회	(66)	4.15	4.00	4.11	4.42	4.48	4.32	4.06	4.44	4.12	4.05
집행부	(34)	4.12	4.06	4.00	4.29	4.35	4.15	4.00	4.50	4.12	4.03

4-2) 효율성 항목의 추가 사항



○ 효율성 항목에 추가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73.0%가 ‘추가항목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재정부담 대비 효율성은 어떠한지’ (15.0%), ‘성과/효과성의 개선여부’(4.0%) 등의 항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상위 법령과의 중첩/상충은 없는지’ 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도입지역에서 9.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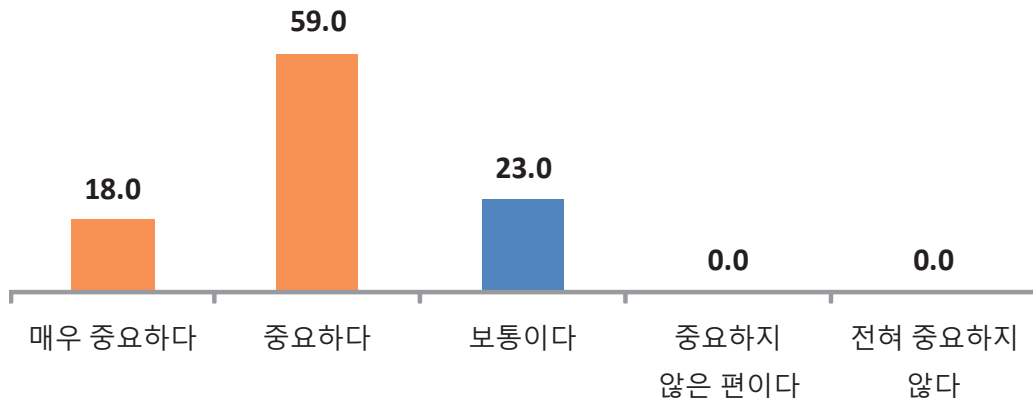
	사례수 (명)	재정부담 대비 효율성은 어떠한지	성과/효과성의 개선 여부	외부 기관의 협조성	공정한 것인지	상위 법령과의 중첩/상충은 없는지	추가항목 없음
▣ 전 체 ▣	(100)	15.0	4.0	3.0	3.0	2.0	73.0
연령							
20대	(1)	0.0	0.0	0.0	0.0	0.0	100.0
30대	(21)	9.5	14.3	0.0	4.8	0.0	71.4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사례수 (명)	재정부담 대비 효율성은 어떠한지	성과/ 효과성의 개선 여부	외부 기관의 협조성	공정한 것인지	상위 법령과의 중첩/ 상충은 없는지	추가항목 없음
40대	(41)	14.6	2.4	4.9	2.4	4.9	70.7
50대 이상	(37)	18.9	0.0	2.7	2.7	0.0	75.7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6.9	6.2	3.1	1.5	0.0	72.3
3~5년	(12)	0.0	0.0	0.0	16.7	0.0	83.3
5~10년	(6)	0.0	0.0	0.0	0.0	16.7	83.3
10년이상	(17)	23.5	0.0	5.9	0.0	5.9	64.7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9.5	4.8	0.0	4.8	9.5	71.4
미도입	(79)	16.5	3.8	3.8	2.5	0.0	73.4
소속							
의회	(66)	15.2	4.5	1.5	1.5	3.0	74.2
집행부	(34)	14.7	2.9	5.9	5.9	0.0	70.6

5) **공평성 항목의 중요도**

(단위: %)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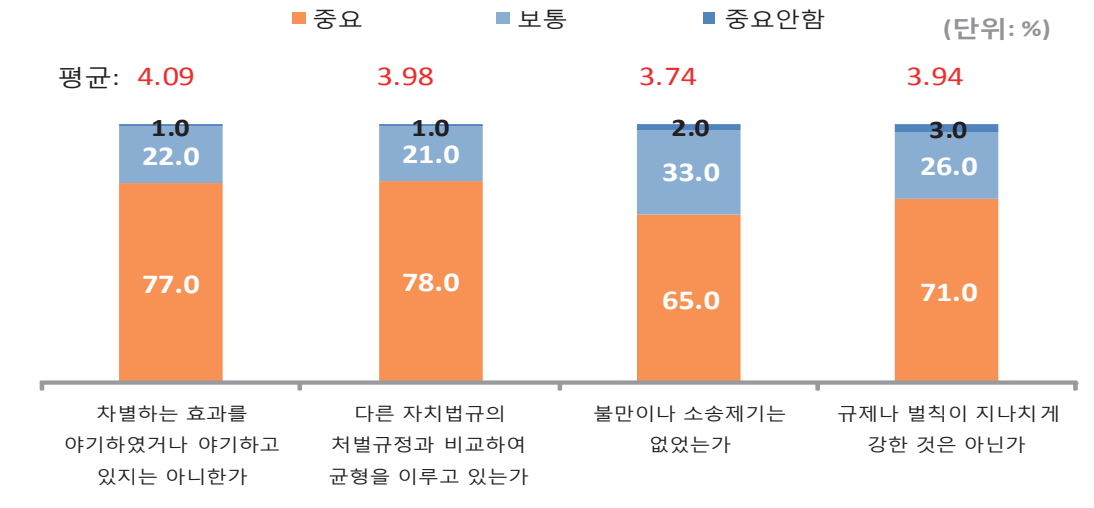
○ 입법평가시 대항목인 ‘공평성’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77.0%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Top2	평 균
▣ 전 체 ▣	(100)	18.0	59.0	23.0	77.0	3.95
연령						
20대	(1)	0.0	100.0	0.0	100.0	4.00
30대	(21)	14.3	47.6	38.1	61.9	3.76
40대	(41)	19.5	61.0	19.5	80.5	4.00
50대 이상	(37)	18.9	62.2	18.9	81.1	4.00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5.4	66.2	18.5	81.5	3.97
3~5년	(12)	25.0	33.3	41.7	58.3	3.83
5~10년	(6)	0.0	50.0	50.0	50.0	3.50
10년이상	(17)	29.4	52.9	17.6	82.4	4.12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4.3	61.9	23.8	76.2	3.90
미도입	(79)	19.0	58.2	22.8	77.2	3.96
소속						
의회	(66)	18.2	59.1	22.7	77.3	3.95
집행부	(34)	17.6	58.8	23.5	76.5	3.94

5-1) **공평성 세부 항목의 중요도**



○ 공평성의 세부항목 4개에 대해 ‘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녀/장애인 등을 차별하는 효과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의 항목에 대한 중요도가 평균 4.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 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항목이 3.98점으로 높았다.

▣ 응답자 특성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단위 : 5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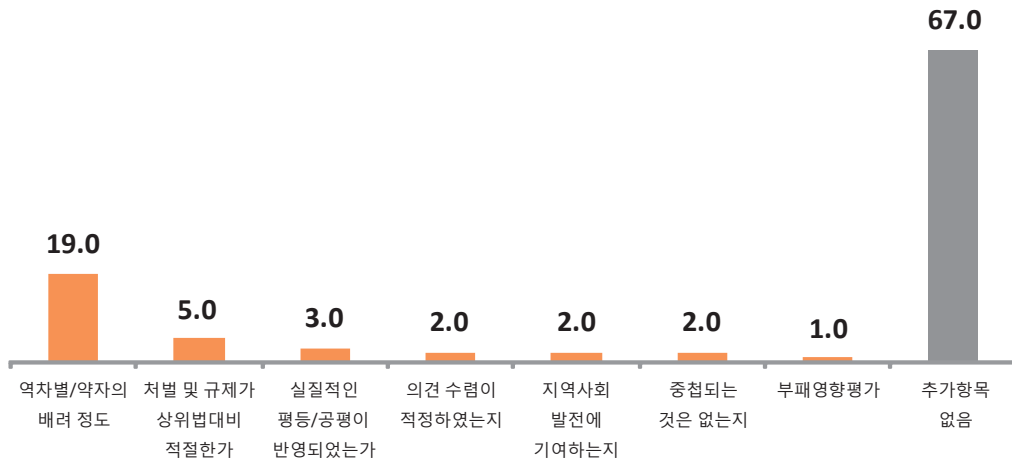
	사례수 (명)	차별하는 효과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불만이나 소송제기는 없었는가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한 것은 아닌가
▣ 전 체 ▣	(100)	4.09	3.98	3.74	3.94
연령					
20대	(1)	4.00	4.00	3.00	4.00
30대	(21)	3.86	3.81	3.67	3.76
40대	(41)	4.17	3.95	3.71	3.88
50대 이상	(37)	4.14	4.11	3.84	4.11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사례수 (명)	차별하는 효과를 얘기하였거나 얘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불만이나 소송제기는 없었는가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한 것은 아닌가
근무경력					
3년 미만	(65)	4.09	4.08	3.78	3.97
3~5년	(12)	4.08	3.75	3.83	4.17
5~10년	(6)	3.83	3.33	3.17	3.33
10년이상	(17)	4.18	4.00	3.71	3.88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19	3.95	3.62	4.10
미도입	(79)	4.06	3.99	3.77	3.90
소속					
의회	(66)	4.09	4.02	3.71	3.94
집행부	(34)	4.09	3.91	3.79	3.94

5-2) **공평성 항목의 추가 사항**

(단위: %, 복수응답)



○ 공평성 항목에 추가되어야 할 세부항목으로는 67.0%가 ‘추가항목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역차별/약자의 배려정도’(19.0%),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처벌 및 규제가 상위법 대비 적절한가’(5.0%) 등의 항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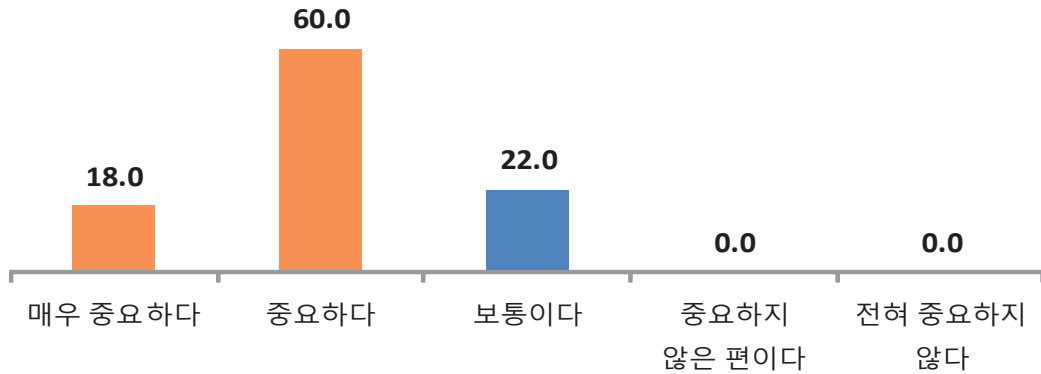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로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위 : %, 복수응답)

	사례수 (명)	역차별/ 약자의 배려 정도	처벌및 규제가 상위법 대비 적절 한가	실질 적인 평등/ 공평이 반영 되었 는가	의견 수렴이 적정 하였 는지	지역 사회 발전 에 기여 하는지	중첩 되는/ 중복 되는 것은 없는지	부패 영향 평가 항목 필요함	추가 항목 없음
▣ 전 체 ▣	(100)	19.0	5.0	3.0	2.0	2.0	1.0	1.0	67.0
연령									
20대	(1)	0.0	0.0	0.0	0.0	0.0	0.0	0.0	100.0
30대	(21)	23.8	9.5	4.8	0.0	0.0	0.0	0.0	61.9
40대	(41)	19.5	4.9	2.4	2.4	2.4	2.4	0.0	65.9
50대 이상	(37)	16.2	2.7	2.7	2.7	2.7	0.0	2.7	70.3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6.9	6.2	1.5	0.0	1.5	1.5	1.5	70.8
3~5년	(12)	16.7	8.3	8.3	8.3	0.0	0.0	0.0	58.3
5~10년	(6)	16.7	0.0	0.0	0.0	0.0	0.0	0.0	83.3
10년이상	(17)	29.4	0.0	5.9	5.9	5.9	0.0	0.0	52.9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4.3	9.5	9.5	4.8	0.0	0.0	0.0	61.9
미도입	(79)	20.3	3.8	1.3	1.3	2.5	1.3	1.3	68.4
소속									
의회	(66)	18.2	4.5	1.5	3.0	1.5	1.5	0.0	69.7
집행부	(34)	20.6	5.9	5.9	0.0	2.9	0.0	2.9	61.8

6) 협동성 항목의 중요도

(단위: %)



○ 입법평가시 대항목인 ‘협동성’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78.0%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 특성별로는 큰 차이 없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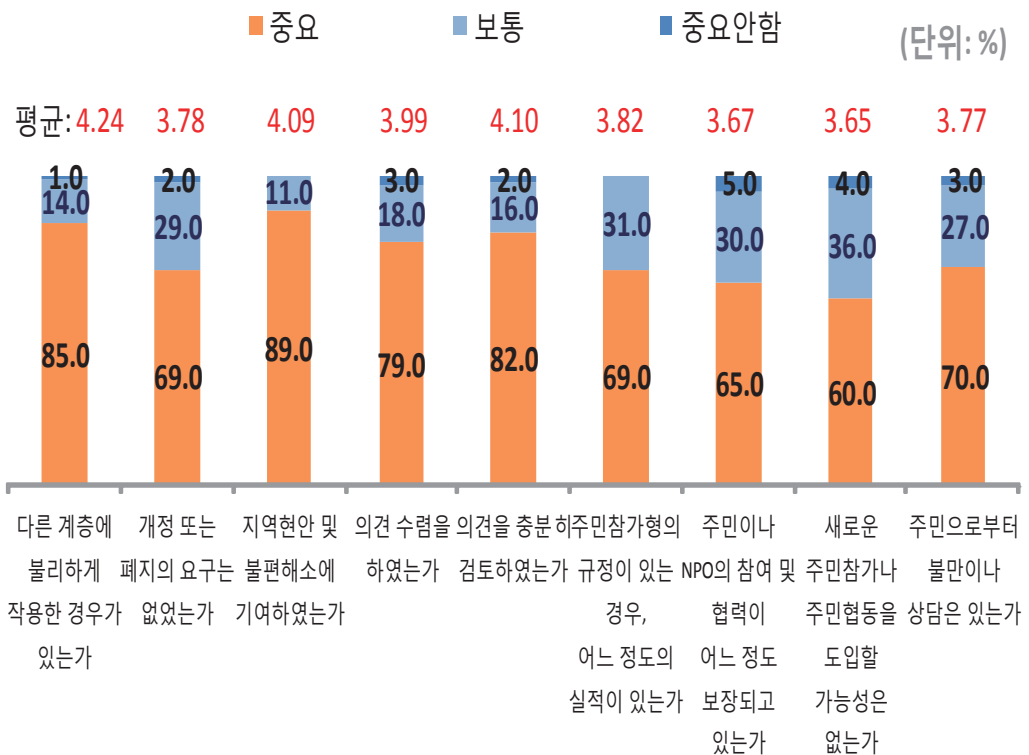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Top2	평 균
▣ 전 체 ▣	(100)	18.0	60.0	22.0	78.0	3.96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3.00
30대	(21)	9.5	66.7	23.8	76.2	3.86
40대	(41)	22.0	58.5	19.5	80.5	4.02
50대 이상	(37)	18.9	59.5	21.6	78.4	3.97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6.9	56.9	26.2	73.8	3.91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Top2	평균
3~5년	(12)	25.0	66.7	8.3	91.7	4.17
5~10년	(6)	0.0	83.3	16.7	83.3	3.83
10년이상	(17)	23.5	58.8	17.6	82.4	4.06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9.0	61.9	19.0	81.0	4.00
미도입	(79)	17.7	59.5	22.8	77.2	3.95
소속						
의회	(66)	15.2	63.6	21.2	78.8	3.94
집행부	(34)	23.5	52.9	23.5	76.5	4.00

6-1) 협동성 세부 항목의 중요도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 협동성의 세부항목 9개에 대해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의 항목에 대한 중요도가 평균 4.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항목이 4.1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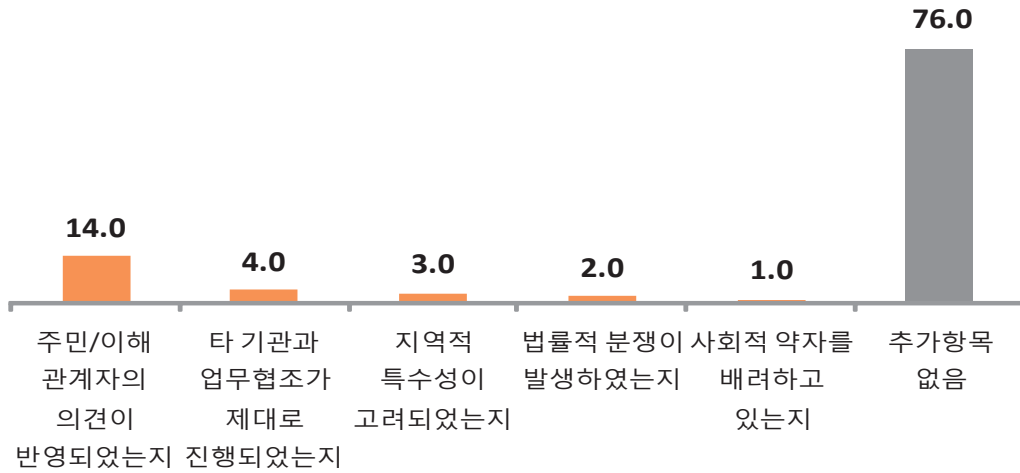
(단위 : 5점 평균)

	사례수 (명)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는가	지역 현안및 불편 해소에 기여하였는가	의견 수렴을 하였는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주민 참가 형의 규정이 있는 경우, 실적이 있는가	주민/ NPO의 참여가 어느 정도 보장 되는가	새로운 주민 참가나 주민 협동을 도입할 가능성은 있는가	주민으로부터 불만이나 상담은 있는가
■ 전 체 ■	(100)	4.24	3.78	4.09	3.99	4.10	3.82	3.67	3.65	3.77
연령										
20대	(1)	4.00	4.00	4.00	3.00	4.00	4.00	3.00	3.00	3.00
30대	(21)	4.00	3.67	4.00	3.71	3.90	3.67	3.57	3.52	3.67
40대	(41)	4.24	3.80	4.17	4.12	4.15	3.88	3.68	3.78	3.83
50대 이상	(37)	4.38	3.81	4.05	4.03	4.16	3.84	3.73	3.59	3.78
근무경력										
3년 미만	(65)	4.20	3.75	4.06	3.98	4.05	3.78	3.62	3.65	3.78
3~5년	(12)	4.33	3.75	4.17	4.00	4.25	4.00	3.92	3.83	3.92
5~10년	(6)	4.17	3.83	4.00	3.67	4.00	3.83	3.33	3.50	3.83
10년이상	(17)	4.35	3.88	4.18	4.12	4.24	3.82	3.82	3.59	3.59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24	3.76	4.05	3.90	4.10	3.76	3.52	3.81	3.86
미도입	(79)	4.24	3.78	4.10	4.01	4.10	3.84	3.71	3.61	3.75

	사례수 (명)	다른 계층에 불리 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 는가	지역 현안및 불편 해소에 기여 하였 는가	의견 수렴을 하였 는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 하였 는가	주민 참가 형의 규정이 있는 경우, 실적이 있는가	주민/ NPO의 참여가 어느 정도 보장 되는가	새로운 주민 참가나 주민 협동을 도입할 가능성은 있는가	주민으 로부터 불만 이나 상담은 있는가
소속										
의회	(66)	4.24	3.83	4.11	3.95	4.12	3.83	3.68	3.67	3.80
집행부	(34)	4.24	3.68	4.06	4.06	4.06	3.79	3.65	3.62	3.71

6-2] 협동성 항목의 추가 사항

(단위: %, 복수응답)



- 협동성 항목에 추가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76.0%가 ‘추가항목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주민/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14.0%), ‘타 기관과 업무협조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4.0%) 등의 항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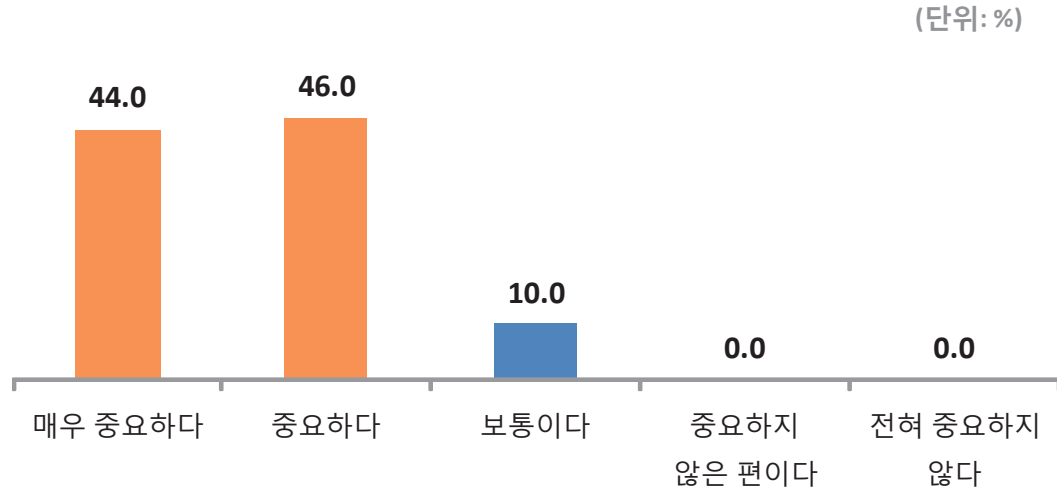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 30대 및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민의 의견 반영’ 항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복수응답)

	사례수 (명)	주민/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반영 되었는지	타 기관과 업무 협조가 제대로 진행 되었는지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 되었는지	법률적 분쟁이 발생 하였는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는지	추가항목 없음
▣ 전 체 ▣	(100)	14.0	4.0	3.0	2.0	1.0	76.0
연령							
20대	(1)	0.0	0.0	0.0	0.0	0.0	100.0
30대	(21)	23.8	4.8	4.8	4.8	0.0	61.9
40대	(41)	9.8	2.4	2.4	0.0	2.4	82.9
50대 이상	(37)	13.5	5.4	2.7	2.7	0.0	75.7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3.8	3.1	4.6	1.5	1.5	75.4
3~5년	(12)	0.0	0.0	0.0	8.3	0.0	91.7
5~10년	(6)	16.7	16.7	0.0	0.0	0.0	66.7
10년이상	(17)	23.5	5.9	0.0	0.0	0.0	70.6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9.0	0.0	0.0	0.0	4.8	76.2
미도입	(79)	12.7	5.1	3.8	2.5	0.0	75.9
소속							
의회	(66)	12.1	4.5	3.0	0.0	1.5	78.8
집행부	(34)	17.6	2.9	2.9	5.9	0.0	70.6

7) 적법성 항목의 중요도



○ 입법평가시 대항목인 ‘적법성’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90.0%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 특성별로는 큰 차이 없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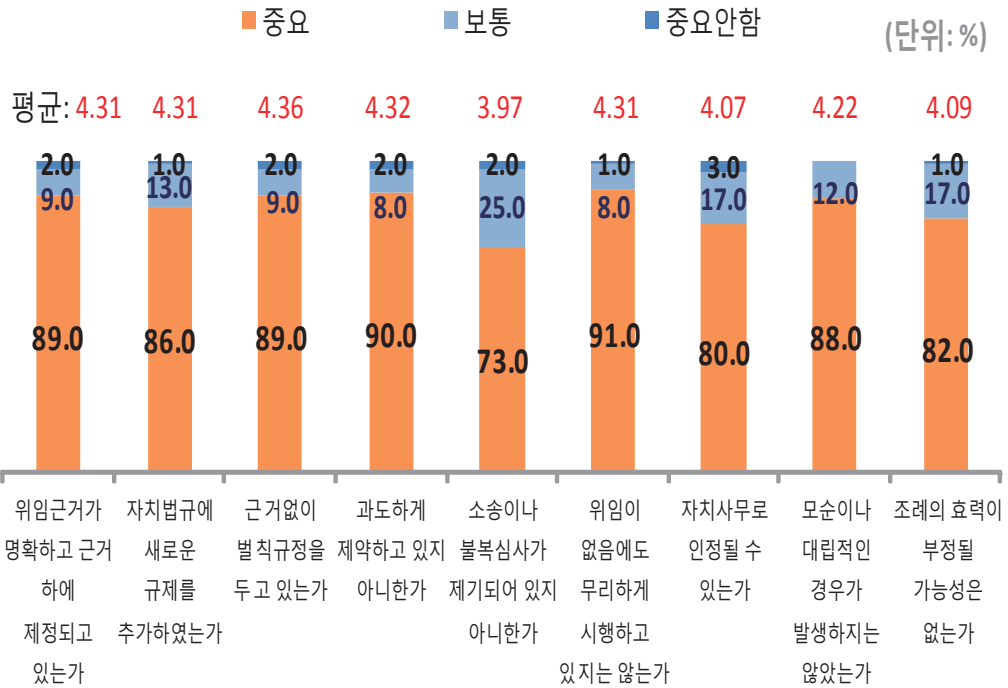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Top2	평 균
▣ 전 체 ▣	(100)	44.0	46.0	10.0	90.0	4.34
연령						
20대	(1)	100.0	0.0	0.0	100.0	5.00
30대	(21)	38.1	52.4	9.5	90.5	4.29
40대	(41)	51.2	36.6	12.2	87.8	4.39
50대 이상	(37)	37.8	54.1	8.1	91.9	4.30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Top2	평 균
근무경력						
3년 미만	(65)	43.1	47.7	9.2	90.8	4.34
3~5년	(12)	50.0	41.7	8.3	91.7	4.42
5~10년	(6)	16.7	50.0	33.3	66.7	3.83
10년이상	(17)	52.9	41.2	5.9	94.1	4.47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8.1	52.4	9.5	90.5	4.29
미도입	(79)	45.6	44.3	10.1	89.9	4.35
소속						
의회	(66)	42.4	45.5	12.1	87.9	4.30
집행부	(34)	47.1	47.1	5.9	94.1	4.41

7-1)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 적법성의 세부항목 9개에 대해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별칙규정을 두고 있는가’의 항목 중요도가 4.36점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주민/사업자의 권리/이익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아니한가’ 항목이 4.3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단위 : 5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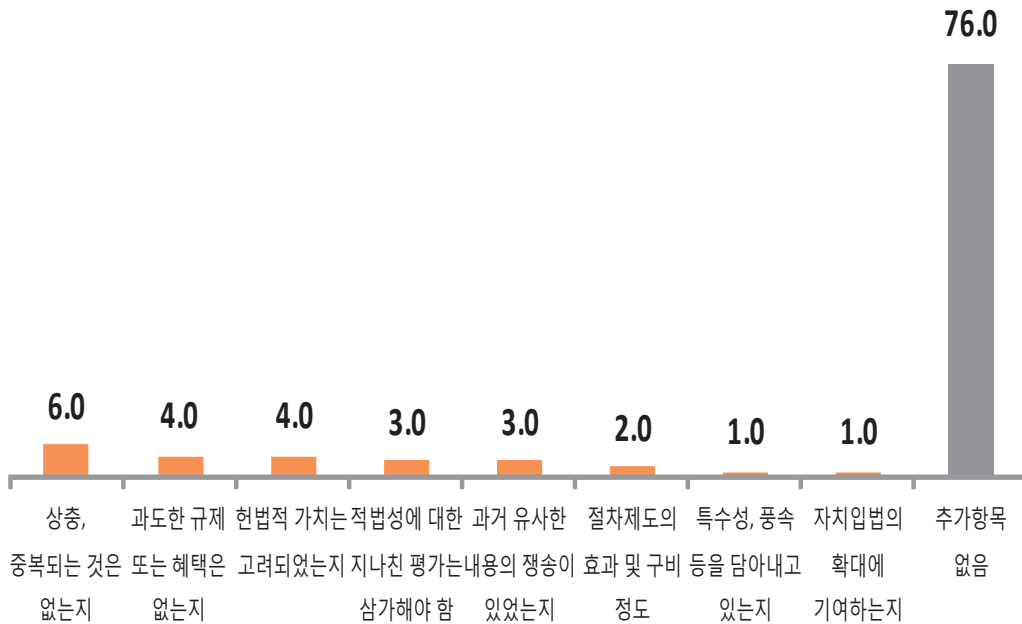
	사례수 (명)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근거하에 제정되고 있는가	자치 법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 하였 는가	근거 없이 별칙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과도 하게 제약 하고 있지 아니 한가	소송 이나 불복 심사가 제기 되어 있지 아니 한가	위임이 없음 에도 무리 하게 시행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치 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모순 이나 대립 적인 경우가 발생 하지는 않았 는가	조례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없는가
■ 전 체 ■	(100)	4.31	4.31	4.36	4.32	3.97	4.31	4.07	4.22	4.09
연령										
20대	(1)	5.00	5.00	5.00	4.00	3.00	4.00	5.00	4.00	4.00
30대	(21)	4.29	4.19	4.29	4.10	3.90	4.29	4.10	4.05	4.00
40대	(41)	4.32	4.37	4.39	4.41	4.00	4.34	4.27	4.37	4.17
50대 이상	(37)	4.30	4.30	4.35	4.35	4.00	4.30	3.81	4.16	4.05
근무경력										
3년 미만	(65)	4.40	4.32	4.35	4.35	4.03	4.32	4.06	4.17	4.06
3~5년	(12)	4.25	4.33	4.42	4.25	3.92	4.08	4.17	4.42	4.08
5~10년	(6)	3.17	3.83	4.17	4.17	3.67	4.17	3.67	3.83	3.83
10년이상	(17)	4.41	4.41	4.41	4.29	3.88	4.47	4.18	4.41	4.29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05	4.14	4.29	4.38	3.76	4.19	4.05	4.29	4.00
미도입	(79)	4.38	4.35	4.38	4.30	4.03	4.34	4.08	4.20	4.11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사례수 (명)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근거하에 제정되고 있는가	자치 법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 하였 는가	근거 없이 별칭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과도 하게 제약 하고 있지 아니 한가	소송 이나 불복 심사가 제기 되어 있지 아니 한가	위임이 없음 에도 무리 하게 시행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치 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모순 이나 대립 적인 경우가 발생 하지는 않았 는가	조례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없는가
소속										
의회	(66)	4.21	4.29	4.33	4.33	3.95	4.27	4.05	4.29	3.80
집행부	(34)	4.50	4.35	4.41	4.29	4.00	4.38	4.12	4.09	3.71

7-2) 적법성 항목의 추가 사항

(단위: %, 복수응답)



II.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 적법성 항목에 추가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76.0%가 ‘추가항목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상충,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6.0%), ‘과도한 규제나 혜택은 없는지’(4.0%), ‘헌법적 가치는 고려되었는지’(4.0%) 등의 항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상충,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항목의 추가 의견은 집행부 소속 전문가에게서 11.8%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복수응답)

	사례수 (명)	상충, 중복 되는 것은 없는지	과도한 규제 또는 혜택은 없는지	헌법적 가치 고려	적법성 에 대한 지나친 평가는 삼가 해야 함	과거 유사한 내용의 쟁송이 있었 는지	절차 제도의 효과/ 구비 정도	자치 입법의 확대 기여도	특수성, 풍속 등을 담아 내고 있는지	추가 항목 없음
▣ 전체 ▣	(100)	6.0	4.0	4.0	3.0	3.0	2.0	1.0	1.0	76.0
연령										
20대	(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0대	(21)	9.5	4.8	9.5	0.0	4.8	0.0	0.0	0.0	71.4
40대	(41)	4.9	2.4	0.0	4.9	2.4	2.4	0.0	0.0	82.9
50대 이상	(37)	5.4	5.4	5.4	2.7	2.7	2.7	2.7	2.7	70.3
근무경력										
3년 미만	(65)	7.7	6.2	1.5	1.5	1.5	3.1	0.0	0.0	78.5
3~5년	(12)	0.0	0.0	8.3	16.7	0.0	0.0	0.0	0.0	75.0
5~10년	(6)	0.0	0.0	0.0	0.0	33.3	0.0	0.0	0.0	66.7
10년이상	(17)	5.9	0.0	11.8	0.0	0.0	0.0	5.9	5.9	70.6

제 3 장 전문가 설문조사

	사례수 (명)	상충, 중복 되는 것은 없는지	과도한 규제 또는 혜택은 없는지	헌법적 가치 고려	적법성 에 대한 지나친 평가는 삼가 해야 함	과거 유사한 내용의 쟁송이 있었 는지	절차 제도의 효과/ 구비 정도	자치 입법의 확대 기여도	특수성, 풍속 등을 담아 내고 있는지	추가 항목 없음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8	0.0	4.8	4.8	9.5	0.0	0.0	0.0	76.2
미도입	(79)	6.3	5.1	3.8	2.5	1.3	2.5	1.3	1.3	75.9
소속										
의회	(66)	3.0	4.5	4.5	4.5	3.0	1.5	1.5	1.5	75.8
집행부	(34)	11.8	2.9	2.9	0.0	2.9	2.9	0.0	0.0	76.5

Ⅲ.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요약

1. 주요 결과 요약

1) 조례 입법평가 인지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인지도는 77.0%(잘 알고 있다: 32.0%+들어본 적은 있다: 45.0%)로 10명중 7명 이상은 “조례 입법평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시행중인 조례 중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조례에 대해, 29.0%는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28.0%는 ‘적다’고 응답하였다.

조례 입법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7.0%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미 입법평가를 도입하고 있는 지역의 전문가의 경우, 10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이미 시행중인 지역에서 필요성의 공감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시 고려사항

조례 입법평가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과반인 57.0%가 ‘논의가 없다’고 응답하여, 아직까지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응답자의 18.0%는 ‘이미 도입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25.0%는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해 향후 조례 입법평가의 제도화 시행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입법평가의 주체로는 ‘입법평가위원회 등 별도의 독립된 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47.0%, ‘조례 입법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40.0%로 응답자 10명중 9명 가량이 내부가 아닌 독립된 기구 또는 외부기관에서의 수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은 81.0%, 사후적인 입법평가의 필요성은 74.0%가 응답하여, 사후보다는 사전적인 입법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후적 입법평가 시기로는 과반인 52.0%가 ‘2년 이후’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일부 겹치는 기준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구분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85.0%로 나타나, 사전적 입법평가와 사후적 입법평가의 평가기준 구분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위임조례의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38.0%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평가기준에 있어 자치조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5.0%로 ‘바람직하다’는 의견 21.0%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즉, 전문가들은 위임조례의 입법평가는 적절하지만, 평가기준은 자치조례와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임조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적합한 평가기준으로는 ‘위임의 범위 등 위임한계 일탈여부’가 83.0%로

가장 높았으며, ‘상위법의 근거 규정 변동’ 및 ‘조례의 효율성’이 각각 62.0%로 조사되었다.

외부기관에서 수행된 입법평가의 구속력 인정에 대해, 35.0%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8.0%는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기관의 평가에 대한 구속력 인정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조금 높았다.

입법평가의 제도화 관련 문제점으로는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15.0%,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및 ‘입법평가는 외부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각각 13.0%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입법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평가

구 분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	공평성	협동성	적법성
5점 평균	4.27	4.16	4.25	3.95	3.96	4.34

입법평가 항목의 6개 대항목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적법성’ 항목의 중요도가 4.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필요성’(4.27점), ‘효율성’(4.2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례 입안 전문가들은 입법평가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조례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의 도출

제 1 절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의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조례 입법평가는 좋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성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며, 더 나은 조례를 지향하는 출발점이다. 특히 경기도 등 일부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평가 도입은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조례 품질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조례 입법평가의 도입을 통하여 향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입법의 품질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²⁷⁾

광주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를 살펴보았으며, 조례 입법평가에 관하여 전문가설문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및 2013년의 표준조례안 관련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을 제시한다. 즉,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목적(입법평가의 목적), 평가 시행주기, 평가대상조례의 선정, 평가기준, 사전적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입법평가서 작성 주체, 기초자료의 주요내용, 결과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주제별로 모범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더하고자 한다.

27) 수원일보,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2013.9.26. 기사,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62> (2015년 9월 2일 검색).

I.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제명

조례의 제명은 조례가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조례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지어야 한다.²⁸⁾

따라서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제명은 「0000도(시) 입법평가 기본조례」 또는 「0000도(시) 입법평가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후적 입법평가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된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을 조례 제명에서 반영하려면 「0000도(시) 사후적 입법평가 조례」와 같은 형식으로 제명을 정할 수 있다.

II. 조례 입법평가의 목적

조례의 목적에 관한 규정은 조례의 입법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의미²⁹⁾하므로 조례 입법평가의 목적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 목적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조례 입법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시행효과 및 목적달성 등을 평가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담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조례 입법평가의 목적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목 적 >

- 사전/사후 입법평가를 모두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00조(목적) 이 조례는 0000의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적달

28)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2013, 241쪽.

29) 법제처, 앞의 책, 2013, 64쪽.

< 목 적 >

성 등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후 입법평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00조(목적) 이 조례는 0000의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적달성 등을 사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조례 입법평가의 정의

정의 규정은 해당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이다. 조례 입법평가와 관련해서 정의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

< 정 의 >

- 사전/사후 입법평가를 모두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00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조례를 대상으로 분석지표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평가하여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사후 입법평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00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후에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IV. 입법평가의 원칙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평가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 조례 입법평가 수행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을 담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 입법평가의 원칙 >

- 사전/사후 입법평가를 모두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00조(입법평가의 원칙)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는 조례의 실현가능성 및 목적 실현정도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사후 입법평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00조(입법평가의 원칙)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는 조례의 목적 실현 정도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V. 조례 입법평가의 대상 또는 적용범위

조례 입법평가의 대상 또는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시기 및 사전 평가여부, 평가제외 조례 여부를 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 평가시기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제3장에서 살펴본 전문가조사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범조례(안)에서는 통상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평가의 연구결과에서 최소기준으로 제시되어왔던 3년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조례의 경우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평가시기를 포함하는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

< 적용범위 >

- 사전/사후 입법평가를 모두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00조(적용범위 등) ① 0000의회에 발의, 제출 또는 전부개정되는 조례의 경우에는 사전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사후 입법평가는 0000의회에서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 중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전·사후 입법평가 대상 조례 중 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서 제외한다.

- 사후 입법평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00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에 의한 사후 입법평가는 0000의회에서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 중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후 입법평가 대상 조례 중 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서 제외한다.

VI. 조례 입법평가의 기준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입법평가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통일된 기준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13년에 수행된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분석하여 최소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체크해야 하는 항목으로 ① 필요성, ② 유효성, ③ 효율성, ④ 공평성, ⑤ 협동성(참가성), ⑥ 적법성을 대항목으로 두고 각각의 항목에 세부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³⁰⁾ 금번 연구에서는 2013년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30) 차현숙·최혜선, 앞의 책, 2013, 114쪽.

입법평가의 기준과 관련된 조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입법평가의 기준 >

- 사전/사후 입법평가를 모두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00조(입법평가의 기준) ① 사전 입법평가는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후 입법평가는 별표2를 기준으로 한다.
- 사후 입법평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00조(입법평가의 기준) 입법평가는 별표를 기준으로 한다.

입법평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지표는 별표에서 규정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사후적 입법평가 지표로 별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2013년 연구와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6가지의 대항목 ① 필요성, ② 유효성, ③ 효율성, ④ 공평성, ⑤ 협동성(참가성), ⑥ 적법성 이외에 전문가들은 “가치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시의성”, “합목적성”, “지역 특수성” 등을 대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향후 지표 설정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대항목에 따른 세부항목 별로 추가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부항목의 구성은 2013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전문가조사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세부항목의 내용은 항목별로 전문가조사 시에 중요도를 물어본 결과를 반영하여 중요도를 1순위와 2순위로 표시하였다. 또한 전문가가 각각의 대항목별로 추가의견을 준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 추가 의견”으로 표시하여 세부항목 지표에 포함시켰다. 평가지표를 구성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취사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필요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이 가능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1) 자치법규의 개정이 위임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것인가
- 2)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 3) 조례의 목적이 현시점에서도 적절한가(2순위)
- 4) 조례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현시점에서도 존재하는가
- 5) 조례의 제정이후 같은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 6) 사인 간의 자율노력이나 민사절차에 의한 대응의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았는가
- 7)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은 그 의도대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가?(1순위)
- 8)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사정이나 위험이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가?
- 9)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10)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가
- 11)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이 있는가
- 12) 주민/지역과 관련성 및 이익증대에 필요한 것인가(전문가 추가 의견)

유효성의 내용으로 구성 가능한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1순위)
- 2) 조례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2순위)
- 3)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위법규 등은 마련되어 있는가
- 4) 규제하려는 내용은 시민의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가
- 5) 과제의 상황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는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예방, 시정, 개선)되고 있는가
- 6) (목표가 명확한 경우)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실현하였는가
- 7) [급부조례의 경우] 주민 등이 제도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가
- 8) 주민의 활용/이해/수용이 가능한가(전문가 추가 의견)

효율성의 내용으로 구성 가능한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조례의 집행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은 편익은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 2)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 3) 재정부담이 제정 초기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하였는가
- 4)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5)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의 확보등 재원의 조달이 가능한가(2순위)
- 6)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된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7) 새로운 규정이 신설된 경우 절약되거나 추가되는 예산의 규모와 효과는 검토되었는가
- 8)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의무, 세금,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닌가(1순위)
- 9) 내부 비용(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 10) 외부비용(사회적 불경제)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 11) 재정부담 대비 효율성은 어느 정도인가(전문가 추가 의견)

공평성의 내용으로 구성 가능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녀(성별영향)/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등을 차별하는 효과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1순위)
- 2) 자치법규의 내용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2순위)
- 3) 대상자·관계자로부터 불만이나 소송제기는 없었는가
- 4) 자치법규의 내용이 과거의 유사한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한 것은 아닌가
- 5)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가
- 6) 역차별/약자에 대하여 배려하고 있는가(전문가 추가 의견)
- 7) 처벌 및 규제가 상위법에 근거할 때 적절한가(전문가 추가 의견)

협동성의 내용으로 구성 가능한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1순위)
- 2)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는가
- 3)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
- 4)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하였는가
- 5)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2순위)
- 6) [주민참가형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것이 기능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가
- 7) 조례의 집행에 주민이나 NPO의 참여·협력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있는가
- 8) 새로운 주민참가나 주민협동을 도입할 가능성은 없는가
- 9) 주민으로부터 불만이나 상담은 있는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10)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잘 진행되었는가(전문가 추가 의견)

적법성의 내용으로 구성 가능한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적법성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조사시에 중요 정도를 물었는데,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별칙규정을 두고 있는가’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조사된 바 있다.

- 1)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위임근거 하에 제정되고 있는가
- 2)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였는가
- 3)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별칙규정을 두고 있는가(1순위)
- 4) 주민·사업자의 권리·이익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아니한가(2순위)
- 5) 행정소송이나 불복심사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한가
- 6) 조례내용이 헌정질서 및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 7)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 8)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 9) 사법절차로 인해 조례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없는가
- 10) 조례 제·개정 이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었는가

VII. 조례 입법평가의 주체: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개별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를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자기시정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기평가에 있어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³¹⁾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소개한 전문가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위한 제3의 독립된 기관을 두도록 규정하는 방안과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객관성을 담보하고 평가결과를 의회에서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객관성과 전문성의 확보는 평가결과 신뢰도 제고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며,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조례 입법평가의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평가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위원회의 소속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따라 조문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총괄적인 입법평가의 관리 책임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가 그 문제이다. 시장(도시자)에게 둘 것인지 의회에 둘 것인지에 따라 위원회의 소속도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법평가위원회를 독립된 위원회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비율이 일정 정도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입법평가의 목적이 더 나은 조례를 만들기 위하여 객관적·합리적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도 민간(외부) 전문가의 비율을 2/3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모범조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 차현숙·최혜선, 앞의 책, 2013, 114쪽.

<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 독립된 입법평가위원회를 두어 입법평가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
- 제00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00조에 따른 사후입법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0000의회의장(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0000의회 의원
 2. 법률 및 조례전문가
 3. 관련 시민단체 구성원
 4. 그밖에 조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의 2/3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0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 제출한 집행부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사후 입법평가를 위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④ 위원회는 입법평가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입법평가 용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000의회의장(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입법 목적 달성도, 비용과 편익 분석, 상위법령 관련 적합성 등 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립하여 수행한다.

1. 사후 입법평가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2. 사후 입법평가 실시시기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평가지표의 수정에 관한 사항
4. 외부 용역으로 수행한 경우 용역결과에 관한 사항
5. 조례 입법평가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마친 경우 지체없이 0000의회 의장(시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의회나 시장이 주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성의 주체를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대상 조례와 유관한 의원이 위원인 경우 당해 평가에서 제척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VIII.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 평가의 시기

조례 제정 전에 입법평가를 실시할 것인지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고 일정기간(최소 2년)이 지난 후에 입법평가를 실시할 것인지에 따라서 입법평가의 기준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사전적 평가의 경우에는 입안 준비과정에서의 영향을 예측한다는 면에서 다양한 한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체크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사후 입법평가의 경우에는 조례의 유효성, 실효성, 체계성, 효과성 등 조례의 영향을 다양한 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평가를 수행하여야 조례의 계속 여부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²⁾ 또한 사

32) 차현숙·최혜선, 앞의 책, 29~30쪽.

후적인 입법평가의 경우에는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들의 첨부도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통한 체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평가의 기준과 사후평가의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전적 입법평가와 사후적 입법평가를 규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 사전적/사후적 입법평가 >

- 사전/사후 입법평가를 모두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00조(사전 입법평가) 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자는 별표1을 기준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사전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조례안과 함께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입법평가의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의 조례심의 전에 공표할 수 있다.

제00조(사후 입법평가) 사후 입법평가는 제0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별표 2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 사후 입법평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00조(사후 입법평가) 사후 입법평가는 제0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별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IX.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구속력 부여 여부

조례 입법평가가 “좋은 조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구속력의 인정은 의회 입법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 또는 집행부가 스스로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자기시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는 입법평가 결과의 구속력을 일정 정

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의회가 자체적으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속력의 인정에 대한 필요성도 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구속력의 범위나 한계 등에 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 간의 사전적인 합의가 필수적인 전제가 될 것이다.³³⁾ 입법평가의 기준과 관련된 조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결과의 공표 및 활용 >

- 제00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제00조에 따른 위원회는 입법평가의 결과를 0000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후 입법평가 후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하여 0000의회의장(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시행규칙의 제정

필요한 경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입법평가의 주관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시행규칙과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 시행규칙 >

제0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33) 차현숙·최혜선, 앞의 책, 2013, 30쪽

제 2 절 ‘조례 입법평가’ 정착을 위한 제언

I. 사전 입법평가와 사후 입법평가의 환류를 통한 결과 축적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평가가 어떤 개별 조례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고 가정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조례가 제정되는 단계에서 사전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제정 조례(안)이 가지는 영향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지고, 그 후 조례가 제정되고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이 경과된 후에 사후적 입법평가가 수행되어 그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으로서 그 조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다시 사전적 입법평가로 환류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류의 과정을 통해서 조례는 생명력을 유지하고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전적 입법평가의 대상이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과정에서 사전적 입법평가의 결과 예측이 적절하였는지 검증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검증과정을 통하여 평가 결과가 축적되고 더 ‘좋은 조례’에 한걸음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의 축적은 새로운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평가를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평가의 근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례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입법평가가 실제 평가시에 공정성·합리성·객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결과를 축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가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평가지표에 대한 수정도 계속되어야 한다.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 입법평가가 계속 될 수 있고, 조례 입법평가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

기 때문이다.³⁴⁾ 이를 위하여 평가수행 자체 및 그 과정을 개량하고 평가결과를 축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Ⅱ. 입법평가서 작성자 등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인력 확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에 수반하는 예산 및 인력에 관련된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³⁵⁾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이 반영된 조례에 대한 이해를 갖춘 법제 및 정책의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는 교육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조례가 가지는 특징과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조례 입법평가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방법론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접 학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입법평가는 단일 학문적 경험으로 온전하게 수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양한 경험의 교류와 공유가 이루어질 때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법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사전적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작성자인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전적 입법평가에서 입법지원 관련 업무담당자의 숙의는 입법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입법의 불비를 최소화하며 더 나은 조례입법이 가능하게 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34) 차현숙·최혜선, 앞의 책, 2013, 126쪽.

35) 최준규 외, 경기도 자치법규 사례의 입법영향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013, 112쪽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 법제처, 201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2013)
- 배건이, 광주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2015)
- 백옥선,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2015)
- 윤계형, 경기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2015)
- 안전행정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가이드(2014)
- 차현숙, “조례 입법평가 제도의 현황과 전망”, 『입법&정책』 제11호, 서울특별시의회(2015)
- 차현숙·최혜선,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모범조례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3)
- 최 유,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2015)
- 최준규 외, 경기도 자치법규 사례의 입법영향분석, 경기개발연구원(2013)
-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2015)

- 인터넷 자료 -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www.ggc.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www.smc.seoul.kr

참 고 문 헌

수원일보 홈페이지 www.suwon.com

제주신보 홈페이지 www.jejunews.com

CNBNEWS 홈페이지 www.cnbnews.com

부 록 1 조사설문지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 전문가조사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한국리서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관련 전문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법평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를 통해서 자치입법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더 좋은 입법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오직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9월

주관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책임 연구자: 차현숙 박사

수행기관 :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김기주 이사

배문1.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배문2. 귀하의 연령은?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이상

배문 3. 담당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 3년 미만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배문 4. 현재 근무지역은?

()

※ 아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설문 전 아래 사항을 꼭 읽어주세요.

일부 광역 지방의회는 경우 연간 의원 조례 발의 건수가 약 400여건에 이르는 등 조례의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 달성 여부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재검토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제·개정시 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 달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과학적·합리적인 평가를 통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조례 제·개정 등 조례 입안을 지원하는 제도임. “조례 입법평가”, 또는 “자치조례 입법영향분석” 등으로 통칭되고 있음
- 조례 입법평가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례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있으며,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는 2015년 5월 6일 시행됨.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한국법제연구원의 2015년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의 분야별 대표조례에 대한 조례 입법평가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의 적합성 확보·실효성 확보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상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각 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기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조례 입법평가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인식/인지

문1. 위에서 설명한 「조례 입법평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잘 알고 있다
2. 들어본 적은 있다
3. 들어본 적 없다/ 잘 모른다

문2. 현재 시행중인 조례 중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조례가 있는지요?

1. 매우 많은 편이다
2. 많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적은 편이다
5. 매우 적은 편이다

문3. 조례 입법평가가 어느 정도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배 경]

□ 조례 입법평가가 도입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조문 구성 비교

부산광역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입법영향분석 기준)	제4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제5조(사전 입법영향분석)	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
제6조(평가지기 등)	제6조(사후 입법영향분석)	제6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7조(입법영향분석기준 수정의 심의)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제8조(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제8조(기능)
제9조(구성·운영)	제9조(시행규칙)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부칙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별표 1 사전 입법영향분석 지표	제11조(수당 등)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제출)	별표 2 사후 입법영향분석 지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부칙		제13조(규칙)
		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2015.7.1.시행, 부산광역시조례 제5078호, 2015. 1.1. 개정)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2014.7.1.시행, 경기도조례 제4677호, 2014. 1.10. 제정)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2013.7.1.시행, 광주광역시 조례 제4251 호, 2013.7.1. 제정)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시 고려사항

문4.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는지요?

1. 이미 도입하였다
2.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3. 논의가 없다

문5. 조례 입법평가(또는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와 관련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5-1. (조례 입법평가의 주체) 누가 조례 입법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지방의회 의원(및 입법지원 담당자)
2. 지방자치단체 조례 담당자
3. 입법평가위원회 등 별도의 독립된 기구
4. 조례 입법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5. 기타 ()

문5-2. (조례 입법평가의 시기 1) 조례 제정 전에 사전적인 입법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필요없다
5. 전혀 필요없다

문5-3. (조례 입법평가의 시기 2) 조례 제정 이후에 사후적인 입법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필요없다
5. 전혀 필요없다

문5-4. (조례 입법평가의 시기 3) 조례 제정 이후에 사후적인 입법 평가가 필요하다면 조례 시행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2년 이후
2. 3년
3. 4년
4. 5년
5. 기타 ()

문5-5. (평가시기에 따른 평가기준) 사전적 조례 입법평가와 사후적 조례 입법평가가 모두 필요하다면 양자의 평가기준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같아야 한다.
2. 완전히 달라야 한다.
3. 일부 겹치는 기준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구분해서 운영해야 한다.

문5-6. (조례의 종류에 따른 평가 기준1) 위임조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매우 바람직하다

2. 문제가 없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문제가 있는 편이다
5.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문5-10. 위의 질문 이외에 조례 입법평가의 제도화와 관련된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배 경]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한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별표, 규칙 또는 내부적인 기준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된 2013년 과제인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모범조례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조례 입법평가의 체크리스트를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 공평성, 협동성, 적법성”의 여섯 가지 대항목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대항목 별로 세부항목을 두어 평가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사후적 조례 입법평가에 적용되는 아래의 체크리스트 예시(안)을 보시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대항목	세부항목	평가척도
필요성(*현재의 시점에서 여전히 조례가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	- 자치법규의 개정이 위임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것인가	① 예 ② 아니오
	-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조례의 목적이 현시점에서도 적절한가	① 예 ② 아니오
	- 조례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현시점에서도 존재하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조례의 제정 이후 같은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유효성(*조례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① 예 ② 아니오

부 록 1 조사설문지

대항목	세부항목	평가척도
	- 조례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효율성(*조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판단)	- 조례의 집행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은 편익은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재정부담이 제정 초기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공평성(*조례가 다양한 측면에서 공평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관한 판단)	- 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녀(성별영향)/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등을 차별하는 효과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① 예 ② 아니오
	- 자치법규의 내용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대상자·관계자로부터 불만이나 소송제기는 없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협동성(*조례에 대한 주민의 참여, 의견 수렴에 관련된 판단)	-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적법성	-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위임근거 하에 제정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사업자의 권리·이익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아니한가	① 예 ② 아니오
	- 행정소송이나 불복심사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한가	① 예 ② 아니오

문6. 아래의 입법평가의 6가지 대항목 이외에 입법평가 시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대항목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6가지 대항목					
1) 필요성	2) 유효성	3) 효율성	4) 공정성	5) 협동성	6) 적법성

문7. 입법평가의 「필요성」 항목의 세부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항목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문7-1. 필요성

필요성 내용

- 1) 자치법규의 개정이 위임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것인가
- 2)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 3) 조례의 목적이 현시점에서도 적절한가
- 4) 조례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현시점에서도 존재하는가
- 5) 조례의 제정이후 같은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 6) 사인간의 자율노력이나 민사절차에 의한 대응의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았는가
- 7)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은 그 의도대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가?
- 8)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사정이나 위험이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가?
- 9)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10)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가

부 록 1 조사설문지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하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7-2. 다음 필요성의 10가지 세부항목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한 편
- ③ 보통
- ④ 중요하지 않은 편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항 목	중요도
1) 자치법규의 개정이 위임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 에 따른 것인가	
2)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3) 조례의 목적이 현시점에서도 적절한가	
4) 조례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현시점에서도 존재하는가	
5) 조례의 제정이후 같은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는가	
6) 사인간의 자율노력이나 민사절차에 의한 대응의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았는가	
7)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은 그 의도대로 수행되 었거나 수행되고 있는가	
8)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사정이나 위험이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가	
9)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10)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가	

문7-3. 아래 필요성의 10가지 세부 항목 이외에 신규로 포함되어야 할 세부 항목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문8. 다음 입법평가의 유효성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문8-1. 유효성

유효성 내용

-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 2) 조례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 3)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위법규 등은 마련되어 있는가
- 4) 규제하려는 내용은 시민의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가
- 5) 과제의 상황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는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예방, 시정, 개선)되고 있는가
- 6) (목표가 명확한 경우)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실현하였는가
- 7) [급부조례의 경우] 주민 등이 제도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가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하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8-2. 다음 유효성의 7가지 세부항목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한 편
- ③ 보통
- ④ 중요하지 않은 편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항 목	중요도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2) 조례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3)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위법규 등은 마련되어 있는가	
4) 규제하려는 내용은 시민의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가	
5) 과제의 상황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는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예방, 시정, 개선)되고 있는가	
6) (목표가 명확한 경우)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실현하였는가	
7) [급부조례의 경우] 주민 등이 제도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가	

문8-3. 아래 유효성의 7가지 세부 항목 이외에 신규로 포함되어야 할 세부 항목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문9. 다음 입법평가의 효율성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문9-1. 효율성

효율성 내용

- 1) 조례의 집행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은 편익은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 2)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 3) 재정부담이 제정 초기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하였는가
- 4)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5)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의 확보등 재원의 조달이 가능한가
- 6)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된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7) 새로운 규정이 신설된 경우 절약되거나 추가되는 예산의 규모와 효과는 검토되었는가
- 8)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의무, 세금,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닌가
- 9) 내부 비용(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 10) 외부비용(사회적 불경제)이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하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9-2. 다음 효율성의 10가지 세부항목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한 편

부 록 1 조사설문지

- ③ 보통
- ④ 중요하지 않은 편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항 목	중요도
1) 조례의 집행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은 편익은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2)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3) 재정부담이 제정 초기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하였는가	
4)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5)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의 확보등 재원의 조달이 가능한가	
6)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된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7) 새로운 규정이 신설된 경우 절약되거나 추가되는 예산의 규모와 효과는 검토되었는가	
8)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의무, 세금,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닌가	
9) 내부 비용(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10) 외부비용(사회적 불경제)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문9-3. 아래 효율성의 10가지 세부 항목 이외에 신규로 포함되어야 할 세부 항목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문10. 다음 입법평가의 공평성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문10-1. 공평성

공평성 내용

- 1) 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녀(성별영향)/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등을 차별하는 효과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 2) 자치법규의 내용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 3) 대상자·관계자로부터 불만이나 소송제기는 없었는가
- 4) 자치법규의 내용이 과거의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한 것은 아닌가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하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10-2. 다음 공평성의 4가지 세부항목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한 편
- ③ 보통
- ④ 중요하지 않은 편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항 목	중요도
1) 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녀(성별영향)/장애인(장애인차별 금지) 등을 차별하는 효과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2) 자치법규의 내용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3) 대상자·관계자로부터 불만이나 소송제기는 없었는가	
4) 자치법규의 내용이 과거의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한 것은 아닌가	

문10-3. 아래 공평성의 4가지 세부 항목 이외에 신규로 포함되어야 할 세부 항목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문11. 다음 입법평가의 협동성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문11-1. 협동성

<p>협동성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2)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는가 3)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 4)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하였는가 5)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6) [주민참가형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것이 기능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가 7) 조례의 집행에 주민이나 NPO의 참여·협력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있는가 8) 새로운 주민참가나 주민협동을 도입할 가능성은 없는가 9) 주민으로부터 불만이나 상담은 있는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하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11-2. 다음 협동성의 9가지 세부항목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한 편
- ③ 보통
- ④ 중요하지 않은 편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항 목	중요도
1)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2)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는가	
3)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	
4)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하였는가	
5)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6) [주민참가형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것이 기능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가	
7) 조례의 집행에 주민이나 NPO의 참여·협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가	
8) 새로운 주민참가나 주민협동을 도입할 가능성은 없는가	
9) 주민으로부터 불만이나 상담은 있는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문11-3. 아래 협동성의 9가지 세부 항목 이외에 신규로 포함되어야 할 세부 항목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문12. 다음 입법평가의 적법성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문12-1. 적법성

적법성 내용

- 1)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위임근거 하에 제정되고 있는가
- 2)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였는가
- 3)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별칙규정을 두고 있는가
- 4) 주민·사업자의 권리·이익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아니한가
- 5) 행정소송이나 불복심사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한가
- 6) 조례내용이 헌정질서 및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 7)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 8)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 9) 사법절차로 인해 조례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없는가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하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12-2. 다음 적법성의 9가지 세부항목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한 편
- ③ 보통
- ④ 중요하지 않은 편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항 목	중요도
1)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위임근거 하에 제정되고 있는가	
2)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였는가	
3)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별칙규정을 두고 있는가	
4) 주민·사업자의 권리·이익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아니한가	
5) 행정소송이나 불복심사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 한가	
6) 조례내용이 헌정질서 및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7)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8)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9) 사법절차로 인해 조례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없는가	

문12-3. 아래 적법성의 9가지 세부 항목 이외에 신규로 포함되어야 할 세부 항목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록 2 조사 통계표

[목 차]

- [표 1] 응답자 분포표
- [표 1] 응답자 분포표
- [표 2] 조례입법평가 인지도
- [표 3] 실효성 없는 조례 정도
- [표 4] 조례 입법평가 필요성
- [표 5] 조례 입법평가 도입 논의
- [표 6] 조례 입법평가의 주체
- [표 7] 사전 입법평가 필요 정도
- [표 8] 사후 입법평가 필요 정도
- [표 9] 사후 입법평가 적정시기
- [표 10] 사전/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
- [표 11] 위임조례의 입법평가에 대한 적정성
- [표 12] 위임/자치조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
- [표 13] 위임조례 평가의 적합한 기준[복수응답]
- [표 14] 조례 입법평가의 구속력에 대한 의견
- [표 15] 조례 입법평가의 제도화와 관련된 다른 문제점
- [표 16] 입법평가지 포함되어야 하는 대항목
- [표 17] 입법평가 필요성 - 중요도

부 록 2

- [표 18]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1 - 자치법규의 개정이 위임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것인가
- [표 19]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2 -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 [표 20]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3 - 조례의 목적이 현시점에서도 적절한가
- [표 21]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4 - 조례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현시점에서도 존재하는가
- [표 22]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5 - 조례의 제정 이후 같은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 [표 23]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6 - 사인간의 자율노력이나 민사절차에 의한 대응의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았는가
- [표 24]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7 -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은 그 의도대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가
- [표 25]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8 -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 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사정이나 위험이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가
- [표 26]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9 -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표 27]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10 -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가
- [표 28] 필요성 항목의 신규 포함 항목
- [표 29] 입법평가 유효성 - 중요도

- [표 30] 유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1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 [표 31] 유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2 - 조례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 [표 32] 유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3 -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위법규 등은 마련되어 있는가
- [표 33] 유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4 - 규제하려는 내용은 시민의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가
- [표 34] 유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5 - 과제의 상황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는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가
- [표 35] 유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6 - (목표가 명확한 경우)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실현하였는가
- [표 36] 유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7 - [급부조례의 경우] 주민 등이 제도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가
- [표 37] 유효성 항목의 신규 포함 항목
- [표 38] 입법평가 효율성 중요도
- [표 39]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1 - 조례의 집행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은 편익은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 [표 40]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2 -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 [표 41]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3 - 재정부담이 제정 초기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하였는가

부 록 2

- [표 42]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4 -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표 43]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5 -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의 확보등 재원의 조달이 가능한가
- [표 44]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6 -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된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표 45]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7 - 새로운 규정이 신설된 경우 절약되거나 추가되는 예산의 규모와 효과는 검토되었는가
- [표 46]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8 -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 [표 47]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9 - 내부 비용(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 [표 48]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10 - 외부비용(사회적 불경제)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 [표 49] 효율성 항목의 신규 포함 항목
- [표 50] 입법평가 공평성 중요도
- [표 51] 공평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1 - 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녀/장애인 등을 차별하는 효과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 [표 52] 공평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2 - 자치법규의 내용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 [표 53] 공평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3 - 대상자·관계자로부터 불만이나 소송제기는 없었는가

- [표 54] 공평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4 - 자치법규의 내용이 과거의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한 것은 아닌가
- [표 55] 공평성 항목의 신규 포함 항목
- [표 56] 입법평가 협동성 중요도
- [표 57] 협동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1 -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 [표 58] 협동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2 -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는가
- [표 59] 협동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3 -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
- [표 60] 협동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4 -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하였는가
- [표 61] 협동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5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표 62] 협동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6 - [주민참가형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것이 기능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가
- [표 63] 협동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7 - 조례의 집행에 주민이나 NPO의 참여·협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가
- [표 64] 협동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8 - 새로운 주민참가나 주민협동을 도입할 가능성은 없는가
- [표 65] 협동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9 - 주민으로부터 불만이나 상담은 있는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표 66] 협동성 항목의 신규 포함 항목

- [표 67] 입법평가 적법성 중요도
- [표 68]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1 -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위임근거 하에 제정되고 있는가
- [표 69]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2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였는가
- [표 70]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3 -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별칙규정을 두고 있는가
- [표 71]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4 - 주민/사업자의 권리/이익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아니한가
- [표 72]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5 - 행정소송이나 불복심사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한가
- [표 73]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6 - 조례내용이 헌정질서 및 상위 법령에 배치되거나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 [표 74]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7 -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 [표 75]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8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 [표 76]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9 - 사법절차로 인해 조례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없는가
- [표 77] 적법성 항목의 신규 포함 항목

[표 1] 응답자 분포표

(단위 : %)

		사례수 (명)	계
▣ 전 체 ▣		(100)	100.0
연령	20대	(1)	1.0
	30대	(21)	21.0
	40대	(41)	41.0
	50대 이상	(37)	37.0
근무경력	3년 미만	(65)	65.0
	3~5년	(12)	12.0
	5~10년	(6)	6.0
	10년이상	(17)	17.0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21.0
	미도입	(79)	79.0
소속	의회	(66)	66.0
	집행부	(34)	34.0
성별	남자	(63)	63.0
	여자	(37)	37.0
근무지역	서울	(9)	9.0
	인천/경기	(16)	16.0
	경북/대구	(21)	21.0
	부산/울산/경남	(3)	3.0
	광주/전라	(23)	23.0
	대전/충청	(13)	13.0
	강원/제주	(15)	15.0

[표 2] 조례입법평가 인지도

(단위 : %)

	사례수 (명)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들어본 적 없다/ 잘 모른다
▣ 전 체 ▣	(100)	32.0	45.0	23.0
연령				
20대	(1)	0.0	100.0	0.0
30대	(21)	28.6	52.4	19.0
40대	(41)	31.7	36.6	31.7
50대 이상	(37)	35.1	48.6	16.2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6.9	55.4	27.7
3~5년	(12)	58.3	25.0	16.7
5~10년	(6)	66.7	16.7	16.7
10년이상	(17)	58.8	29.4	11.8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66.7	28.6	4.8
미도입	(79)	22.8	49.4	27.8
소속				
의회	(66)	42.4	39.4	18.2
집행부	(34)	11.8	55.9	32.4
성별				
남자	(63)	38.1	46.0	15.9
여자	(37)	21.6	43.2	35.1
근무지역				
서울	(9)	77.8	11.1	11.1
인천/경기	(16)	37.5	43.8	18.8
경북/대구	(21)	19.0	42.9	38.1
부산/울산/경남	(3)	100.0	0.0	0.0
광주/전라	(23)	30.4	43.5	26.1
대전/충청	(13)	15.4	61.5	23.1
강원/제주	(15)	20.0	66.7	13.3

[표 3] 실효성 없는 조례 정도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많은 편이다	많은 편이다	보통 이다	적은 편이다	매우 적은 편이다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3.0	26.0	43.0	25.0	3.0	29.0	28.0	3.01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30대	(21)	4.8	33.3	57.1	4.8	0.0	38.1	4.8	3.38
40대	(41)	2.4	29.3	39.0	22.0	7.3	31.7	29.3	2.98
50대 이상	(37)	2.7	18.9	37.8	40.5	0.0	21.6	40.5	2.84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5	20.0	47.7	29.2	1.5	21.5	30.8	2.91
3~5년	(12)	8.3	33.3	25.0	25.0	8.3	41.7	33.3	3.08
5~10년	(6)	16.7	50.0	33.3	0.0	0.0	66.7	0.0	3.83
10년이상	(17)	0.0	35.3	41.2	17.6	5.9	35.3	23.5	3.06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0.0	28.6	47.6	23.8	0.0	28.6	23.8	3.05
미도입	(79)	3.8	25.3	41.8	25.3	3.8	29.1	29.1	3.00
소속									
의회	(66)	4.5	28.8	42.4	22.7	1.5	33.3	24.2	3.12
집행부	(34)	0.0	20.6	44.1	29.4	5.9	20.6	35.3	2.79
성별									
남자	(63)	1.6	27.0	39.7	27.0	4.8	28.6	31.7	2.94
여자	(37)	5.4	24.3	48.6	21.6	0.0	29.7	21.6	3.14
근무지역									
서울	(9)	0.0	22.2	33.3	33.3	11.1	22.2	44.4	2.67
인천/경기	(16)	0.0	43.8	50.0	6.3	0.0	43.8	6.3	3.38
경북/대구	(21)	0.0	28.6	33.3	33.3	4.8	28.6	38.1	2.86
부산/울산/경남	(3)	0.0	33.3	66.7	0.0	0.0	33.3	0.0	3.33
광주/전라	(23)	8.7	13.0	47.8	30.4	0.0	21.7	30.4	3.00
대전/충청	(13)	7.7	30.8	30.8	23.1	7.7	38.5	30.8	3.08
강원/제주	(15)	0.0	20.0	53.3	26.7	0.0	20.0	26.7	2.93

[표 4] 조례 입법평가 필요성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25.0	62.0	12.0	1.0	87.0	1.0	4.11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4.00
30대	(21)	23.8	61.9	14.3	0.0	85.7	0.0	4.10
40대	(41)	26.8	56.1	17.1	0.0	82.9	0.0	4.10
50대 이상	(37)	24.3	67.6	5.4	2.7	91.9	2.7	4.14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1.5	66.2	10.8	1.5	87.7	1.5	4.08
3~5년	(12)	16.7	66.7	16.7	0.0	83.3	0.0	4.00
5~10년	(6)	50.0	33.3	16.7	0.0	83.3	0.0	4.33
10년이상	(17)	35.3	52.9	11.8	0.0	88.2	0.0	4.24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8.1	61.9	0.0	0.0	100.0	0.0	4.38
미도입	(79)	21.5	62.0	15.2	1.3	83.5	1.3	4.04
소속								
의회	(66)	28.8	59.1	12.1	0.0	87.9	0.0	4.17
집행부	(34)	17.6	67.6	11.8	2.9	85.3	2.9	4.00
성별								
남자	(63)	30.2	63.5	6.3	0.0	93.7	0.0	4.24
여자	(37)	16.2	59.5	21.6	2.7	75.7	2.7	3.89
근무지역								
서울	(9)	11.1	66.7	22.2	0.0	77.8	0.0	3.89
인천/경기	(16)	12.5	75.0	6.3	6.3	87.5	6.3	3.94
경북/대구	(21)	28.6	66.7	4.8	0.0	95.2	0.0	4.24
부산/울산/경남	(3)	0.0	66.7	33.3	0.0	66.7	0.0	3.67
광주/전라	(23)	26.1	56.5	17.4	0.0	82.6	0.0	4.09
대전/충청	(13)	30.8	53.8	15.4	0.0	84.6	0.0	4.15
강원/제주	(15)	40.0	53.3	6.7	0.0	93.3	0.0	4.33

[표 5] 조례 입법평가 도입 논의

(단위 : %)

	사례수 (명)	이미 도입하였다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논의가 없다
▣ 전 체 ▣	(100)	18.0	25.0	57.0
연령				
20대	(1)	0.0	0.0	100.0
30대	(21)	28.6	14.3	57.1
40대	(41)	17.1	24.4	58.5
50대 이상	(37)	13.5	32.4	54.1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3.8	27.7	58.5
3~5년	(12)	33.3	25.0	41.7
5~10년	(6)	33.3	0.0	66.7
10년이상	(17)	17.6	23.5	58.8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81.0	19.0	0.0
미도입	(79)	1.3	26.6	72.2
소속				
의회	(66)	19.7	33.3	47.0
집행부	(34)	14.7	8.8	76.5
성별				
남자	(63)	20.6	25.4	54.0
여자	(37)	13.5	24.3	62.2
근무지역				
서울	(9)	0.0	100.0	0.0
인천/경기	(16)	37.5	6.3	56.3
경북/대구	(21)	4.8	14.3	81.0
부산/울산/경남	(3)	66.7	33.3	0.0
광주/전라	(23)	30.4	21.7	47.8
대전/충청	(13)	0.0	0.0	100.0
강원/제주	(15)	13.3	40.0	46.7

[표 6] 조례 입법평가의 주체

(단위 : %)

	사례수 (명)	지방의회 의원 (및 입법지원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담당자	입법평가위원회 등 별도의 독립된 기구	조례 입법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 전 체 ▣	(100)	7.0	6.0	47.0	40.0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30대	(21)	4.8	9.5	42.9	42.9
40대	(41)	7.3	4.9	56.1	31.7
50대 이상	(37)	8.1	5.4	37.8	48.6
근무경력					
3년 미만	(65)	7.7	6.2	47.7	38.5
3~5년	(12)	0.0	8.3	33.3	58.3
5~10년	(6)	16.7	16.7	50.0	16.7
10년이상	(17)	5.9	0.0	52.9	41.2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9.5	9.5	57.1	23.8
미도입	(79)	6.3	5.1	44.3	44.3
소속					
의회	(66)	9.1	4.5	50.0	36.4
집행부	(34)	2.9	8.8	41.2	47.1
성별					
남자	(63)	7.9	4.8	46.0	41.3
여자	(37)	5.4	8.1	48.6	37.8
근무지역					
서울	(9)	11.1	0.0	55.6	33.3
인천/경기	(16)	0.0	6.3	37.5	56.3
경북/대구	(21)	14.3	4.8	57.1	23.8
부산/울산/경남	(3)	0.0	0.0	33.3	66.7
광주/전라	(23)	4.3	17.4	43.5	34.8
대전/충청	(13)	0.0	0.0	38.5	61.5
강원/제주	(15)	13.3	0.0	53.3	33.3

[표 7] 사전 입법평가 필요 정도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없다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16.0	65.0	12.0	7.0	81.0	7.0	3.90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3.00
30대	(21)	19.0	57.1	14.3	9.5	76.2	9.5	3.86
40대	(41)	17.1	63.4	9.8	9.8	80.5	9.8	3.88
50대 이상	(37)	13.5	73.0	10.8	2.7	86.5	2.7	3.97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2.3	70.8	13.8	3.1	83.1	3.1	3.92
3~5년	(12)	16.7	41.7	16.7	25.0	58.3	25.0	3.50
5~10년	(6)	33.3	50.0	0.0	16.7	83.3	16.7	4.00
10년이상	(17)	23.5	64.7	5.9	5.9	88.2	5.9	4.06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23.8	71.4	4.8	0.0	95.2	0.0	4.19
미도입	(79)	13.9	63.3	13.9	8.9	77.2	8.9	3.82
소속								
의회	(66)	16.7	68.2	7.6	7.6	84.8	7.6	3.94
집행부	(34)	14.7	58.8	20.6	5.9	73.5	5.9	3.82
성별								
남자	(63)	20.6	58.7	12.7	7.9	79.4	7.9	3.92
여자	(37)	8.1	75.7	10.8	5.4	83.8	5.4	3.86
근무지역								
서울	(9)	11.1	44.4	22.2	22.2	55.6	22.2	3.44
인천/경기	(16)	18.8	68.8	12.5	0.0	87.5	0.0	4.06
경북/대구	(21)	14.3	71.4	14.3	0.0	85.7	0.0	4.00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0.0	100.0	0.0	4.00
광주/전라	(23)	13.0	65.2	13.0	8.7	78.3	8.7	3.83
대전/충청	(13)	23.1	53.8	7.7	15.4	76.9	15.4	3.85
강원/제주	(15)	20.0	66.7	6.7	6.7	86.7	6.7	4.00

[표 8] 사후 입법평가 필요 정도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없다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16.0	58.0	23.0	3.0	74.0	3.0	3.87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4.00
30대	(21)	14.3	57.1	19.0	9.5	71.4	9.5	3.76
40대	(41)	17.1	53.7	26.8	2.4	70.7	2.4	3.85
50대 이상	(37)	16.2	62.2	21.6	0.0	78.4	0.0	3.95
근무경력								
3년 미만	(65)	7.7	63.1	24.6	4.6	70.8	4.6	3.74
3~5년	(12)	25.0	50.0	25.0	0.0	75.0	0.0	4.00
5~10년	(6)	33.3	50.0	16.7	0.0	83.3	0.0	4.17
10년이상	(17)	35.3	47.1	17.6	0.0	82.4	0.0	4.18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9.0	66.7	14.3	0.0	85.7	0.0	4.05
미도입	(79)	15.2	55.7	25.3	3.8	70.9	3.8	3.82
소속								
의회	(66)	18.2	63.6	15.2	3.0	81.8	3.0	3.97
집행부	(34)	11.8	47.1	38.2	2.9	58.8	2.9	3.68
성별								
남자	(63)	19.0	55.6	20.6	4.8	74.6	4.8	3.89
여자	(37)	10.8	62.2	27.0	0.0	73.0	0.0	3.84
근무지역								
서울	(9)	22.2	44.4	33.3	0.0	66.7	0.0	3.89
인천/경기	(16)	25.0	50.0	25.0	0.0	75.0	0.0	4.00
경북/대구	(21)	9.5	52.4	33.3	4.8	61.9	4.8	3.67
부산/울산/경남	(3)	0.0	66.7	33.3	0.0	66.7	0.0	3.67
광주/전라	(23)	13.0	65.2	17.4	4.3	78.3	4.3	3.87
대전/충청	(13)	15.4	61.5	23.1	0.0	76.9	0.0	3.92
강원/제주	(15)	20.0	66.7	6.7	6.7	86.7	6.7	4.00

[표 9] 사후 입법평가 적정시기

(단위 : %)

	사례수 (명)	2년 이후	3년	4년	5년	6개월 이후	정책내용에 따라 결정
▣ 전 체 ▣	(100)	52.0	33.0	4.0	9.0	1.0	1.0
연령							
20대	(1)	100.0	0.0	0.0	0.0	0.0	0.0
30대	(21)	38.1	38.1	9.5	14.3	0.0	0.0
40대	(41)	46.3	31.7	4.9	12.2	2.4	2.4
50대 이상	(37)	64.9	32.4	0.0	2.7	0.0	0.0
근무경력							
3년 미만	(65)	52.3	35.4	3.1	9.2	0.0	0.0
3~5년	(12)	50.0	16.7	8.3	16.7	8.3	0.0
5~10년	(6)	33.3	50.0	16.7	0.0	0.0	0.0
10년이상	(17)	58.8	29.4	0.0	5.9	0.0	5.9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7.6	42.9	9.5	0.0	0.0	0.0
미도입	(79)	53.2	30.4	2.5	11.4	1.3	1.3
소속							
의회	(66)	48.5	33.3	6.1	10.6	0.0	1.5
집행부	(34)	58.8	32.4	0.0	5.9	2.9	0.0
성별							
남자	(63)	63.5	23.8	4.8	6.3	0.0	1.6
여자	(37)	32.4	48.6	2.7	13.5	2.7	0.0
근무지역							
서울	(9)	44.4	44.4	0.0	11.1	0.0	0.0
인천/경기	(16)	62.5	18.8	12.5	6.3	0.0	0.0
경북/대구	(21)	52.4	38.1	0.0	4.8	0.0	4.8
부산/울산/경남	(3)	0.0	66.7	0.0	33.3	0.0	0.0
광주/전라	(23)	47.8	39.1	4.3	4.3	4.3	0.0
대전/충청	(13)	46.2	30.8	0.0	23.1	0.0	0.0
강원/제주	(15)	66.7	20.0	6.7	6.7	0.0	0.0

[표 10] 사전/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

(단위 : %)

	사례수 (명)	같아야 한다.	완전히 달라야 한다.	일부 겹치는 기준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구분해서 운영해야 한다
▣ 전 체 ▣	(100)	11.0	4.0	85.0
연령				
20대	(1)	0.0	0.0	100.0
30대	(21)	9.5	4.8	85.7
40대	(41)	7.3	2.4	90.2
50대 이상	(37)	16.2	5.4	78.4
근무경력				
3년 미만	(65)	9.2	3.1	87.7
3~5년	(12)	0.0	16.7	83.3
5~10년	(6)	16.7	0.0	83.3
10년이상	(17)	23.5	0.0	76.5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8	14.3	81.0
미도입	(79)	12.7	1.3	86.1
소속				
의회	(66)	12.1	1.5	86.4
집행부	(34)	8.8	8.8	82.4
성별				
남자	(63)	11.1	6.3	82.5
여자	(37)	10.8	0.0	89.2
근무지역				
서울	(9)	0.0	0.0	100.0
인천/경기	(16)	0.0	6.3	93.8
경북/대구	(21)	19.0	0.0	81.0
부산/울산/경남	(3)	0.0	33.3	66.7
광주/전라	(23)	17.4	4.3	78.3
대전/충청	(13)	15.4	0.0	84.6
강원/제주	(15)	6.7	6.7	86.7

[표 11] 위임조례의 입법평가에 대한 적정성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바람직 하다	바람직한 편이다	보통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5.0	35.0	37.0	23.0	40.0	23.0	3.22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3.00
30대	(21)	0.0	23.8	47.6	28.6	23.8	28.6	2.95
40대	(41)	7.3	29.3	39.0	24.4	36.6	24.4	3.20
50대 이상	(37)	5.4	48.6	27.0	18.9	54.1	18.9	3.41
근무경력								
3년 미만	(65)	3.1	32.3	41.5	23.1	35.4	23.1	3.15
3~5년	(12)	16.7	16.7	41.7	25.0	33.3	25.0	3.25
5~10년	(6)	16.7	50.0	0.0	33.3	66.7	33.3	3.50
10년이상	(17)	0.0	52.9	29.4	17.6	52.9	17.6	3.35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9.5	47.6	28.6	14.3	57.1	14.3	3.52
미도입	(79)	3.8	31.6	39.2	25.3	35.4	25.3	3.14
소속								
의회	(66)	4.5	33.3	36.4	25.8	37.9	25.8	3.17
집행부	(34)	5.9	38.2	38.2	17.6	44.1	17.6	3.32
성별								
남자	(63)	6.3	36.5	34.9	22.2	42.9	22.2	3.27
여자	(37)	2.7	32.4	40.5	24.3	35.1	24.3	3.14
근무지역								
서울	(9)	0.0	33.3	44.4	22.2	33.3	22.2	3.11
인천/경기	(16)	6.3	37.5	25.0	31.3	43.8	31.3	3.19
경북/대구	(21)	0.0	47.6	42.9	9.5	47.6	9.5	3.38
부산/울산/경남	(3)	0.0	0.0	100.0	0.0	0.0	0.0	3.00
광주/전라	(23)	8.7	30.4	34.8	26.1	39.1	26.1	3.22
대전/충청	(13)	0.0	30.8	23.1	46.2	30.8	46.2	2.85
강원/제주	(15)	13.3	33.3	40.0	13.3	46.7	13.3	3.47

[표 12] 위임/자치조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바람직 하다	바람직한 편이다	보통 이다	바람직 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바람직 하지 않다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2.0	19.0	24.0	54.0	1.0	21.0	55.0	2.67
연령									
20대	(1)	0.0	0.0	0.0	100.0	0.0	0.0	100.0	2.00
30대	(21)	0.0	23.8	14.3	57.1	4.8	23.8	61.9	2.57
40대	(41)	0.0	14.6	22.0	63.4	0.0	14.6	63.4	2.51
50대 이상	(37)	5.4	21.6	32.4	40.5	0.0	27.0	40.5	2.92
근무경력									
3년 미만	(65)	3.1	16.9	23.1	56.9	0.0	20.0	56.9	2.66
3~5년	(12)	0.0	8.3	25.0	58.3	8.3	8.3	66.7	2.33
5~10년	(6)	0.0	16.7	50.0	33.3	0.0	16.7	33.3	2.83
10년이상	(17)	0.0	35.3	17.6	47.1	0.0	35.3	47.1	2.88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0.0	28.6	19.0	52.4	0.0	28.6	52.4	2.76
미도입	(79)	2.5	16.5	25.3	54.4	1.3	19.0	55.7	2.65
소속									
의회	(66)	1.5	19.7	22.7	56.1	0.0	21.2	56.1	2.67
집행부	(34)	2.9	17.6	26.5	50.0	2.9	20.6	52.9	2.68
성별									
남자	(63)	3.2	20.6	23.8	50.8	1.6	23.8	52.4	2.73
여자	(37)	0.0	16.2	24.3	59.5	0.0	16.2	59.5	2.57
근무지역									
서울	(9)	0.0	22.2	0.0	77.8	0.0	22.2	77.8	2.44
인천/경기	(16)	0.0	37.5	18.8	37.5	6.3	37.5	43.8	2.88
경북/대구	(21)	4.8	4.8	38.1	52.4	0.0	9.5	52.4	2.62
부산/울산/경남	(3)	0.0	0.0	0.0	100.0	0.0	0.0	100.0	2.00
광주/전라	(23)	0.0	17.4	39.1	43.5	0.0	17.4	43.5	2.74
대전/충청	(13)	0.0	30.8	7.7	61.5	0.0	30.8	61.5	2.69
강원/제주	(15)	6.7	13.3	20.0	60.0	0.0	20.0	60.0	2.67

[표 13] 위임조례 평가의 적합한 기준[복수응답]

(단위 : %)

	사례수 (명)	위임의 범위 등 위임한계 일탈 여부	상위법의 근거 규정 변동 여부	조례의 효율성	조례의 적법성	지자체의 개별적 환경
■ 전 체 ■	(100)	83.0	62.0	62.0	45.0	1.0
연령						
20대	(1)	100.0	0.0	0.0	100.0	0.0
30대	(21)	90.5	66.7	47.6	42.9	0.0
40대	(41)	80.5	65.9	63.4	41.5	2.4
50대 이상	(37)	81.1	56.8	70.3	48.6	0.0
근무경력						
3년 미만	(65)	81.5	64.6	63.1	44.6	1.5
3~5년	(12)	91.7	50.0	41.7	58.3	0.0
5~10년	(6)	66.7	66.7	50.0	0.0	0.0
10년이상	(17)	88.2	58.8	76.5	52.9	0.0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85.7	52.4	61.9	38.1	0.0
미도입	(79)	82.3	64.6	62.0	46.8	1.3
소속						
의회	(66)	81.8	62.1	57.6	42.4	1.5
집행부	(34)	85.3	61.8	70.6	50.0	0.0
성별						
남자	(63)	88.9	66.7	57.1	49.2	0.0
여자	(37)	73.0	54.1	70.3	37.8	2.7
근무지역						
서울	(9)	100.0	66.7	44.4	44.4	0.0
인천/경기	(16)	87.5	50.0	56.3	43.8	0.0
경북/대구	(21)	81.0	71.4	71.4	52.4	0.0
부산/울산/경남	(3)	100.0	66.7	33.3	66.7	0.0
광주/전라	(23)	73.9	65.2	60.9	47.8	0.0
대전/충청	(13)	84.6	69.2	69.2	38.5	7.7
강원/제주	(15)	80.0	46.7	66.7	33.3	0.0

[표 14] 조례 입법평가의 구속력에 대한 의견

(단위 : %)

	사례수 (명)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문제가 있는 편이다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2.0	26.0	38.0	32.0	2.0	28.0	34.0	2.94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30대	(21)	0.0	14.3	42.9	42.9	0.0	14.3	42.9	2.71
40대	(41)	0.0	26.8	34.1	36.6	2.4	26.8	39.0	2.85
50대 이상	(37)	5.4	32.4	37.8	21.6	2.7	37.8	24.3	3.16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5	21.5	41.5	35.4	0.0	23.1	35.4	2.89
3~5년	(12)	0.0	25.0	33.3	41.7	0.0	25.0	41.7	2.83
5~10년	(6)	0.0	0.0	16.7	66.7	16.7	0.0	83.3	2.00
10년이상	(17)	5.9	52.9	35.3	0.0	5.9	58.8	5.9	3.53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0.0	33.3	28.6	33.3	4.8	33.3	38.1	2.90
미도입	(79)	2.5	24.1	40.5	31.6	1.3	26.6	32.9	2.95
소속									
의회	(66)	1.5	28.8	33.3	33.3	3.0	30.3	36.4	2.92
집행부	(34)	2.9	20.6	47.1	29.4	0.0	23.5	29.4	2.97
성별									
남자	(63)	3.2	28.6	36.5	28.6	3.2	31.7	31.7	3.00
여자	(37)	0.0	21.6	40.5	37.8	0.0	21.6	37.8	2.84
근무지역									
서울	(9)	11.1	22.2	44.4	22.2	0.0	33.3	22.2	3.22
인천/경기	(16)	0.0	18.8	43.8	37.5	0.0	18.8	37.5	2.81
경북/대구	(21)	0.0	38.1	33.3	23.8	4.8	38.1	28.6	3.05
부산/울산/경남	(3)	0.0	0.0	66.7	33.3	0.0	0.0	33.3	2.67
광주/전라	(23)	0.0	34.8	30.4	30.4	4.3	34.8	34.8	2.96
대전/충청	(13)	0.0	23.1	30.8	46.2	0.0	23.1	46.2	2.77
강원/제주	(15)	6.7	13.3	46.7	33.3	0.0	20.0	33.3	2.93

[표 15] 조례 입법평가의 제도화와 관련된 다른 문제점

(단위 : %)

	사례수 (명)	객관적 이고 정확한 기준 마련/ 절차의 정비 등이 필요	조례 입법 평가가 조례 제정 활동을 위축할 수 있음	입법 평가는 반드시 필요함	입법 평가는 외부 기관 (전문 가)에서 수행/ 독립 성이 중요	입법 평가 결과의 반영 및 구속 력이 있어야 함	의원의 압력 으로 부터 자유 로운 독립적 운영이 필요	입법권 제한이 라는 부정적 의견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이 필요함	입법 평가가 법률의 지연, 비효율 성을 초래할 수 있음	준거 기준에 입각한 평가가 필요 (지역 특수성, 차별적 평가 필요)	없음	모름/ 무응답
□ 전 체 □	(100)	13.0	7.0	7.0	13.0	15.0	10.0	10.0	7.0	3.0	16.0	8.0
연령												
20대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0대	(21)	14.3	4.8	4.8	23.8	9.5	14.3	9.5	14.3	0.0	19.0	4.8
40대	(41)	2.4	7.3	0.0	17.1	22.0	7.3	12.2	7.3	4.9	12.2	12.2
50대 이상	(37)	24.3	8.1	16.2	2.7	10.8	10.8	8.1	2.7	2.7	18.9	2.7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2.3	6.2	4.6	13.8	13.8	7.7	12.3	7.7	3.1	21.5	7.7
3~5년	(12)	25.0	16.7	8.3	8.3	0.0	25.0	8.3	8.3	0.0	0.0	8.3
5~10년	(6)	0.0	0.0	0.0	16.7	33.3	0.0	16.7	16.7	16.7	0.0	16.7
10년이상	(17)	11.8	5.9	17.6	11.8	23.5	11.8	0.0	0.0	0.0	11.8	5.9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9.0	0.0	0.0	19.0	28.6	14.3	9.5	0.0	0.0	14.3	9.5
미도입	(79)	11.4	8.9	8.9	11.4	11.4	8.9	10.1	8.9	3.8	16.5	7.6
소속												
의회	(66)	10.6	9.1	4.5	9.1	15.2	9.1	13.6	7.6	4.5	16.7	7.6
집행부	(34)	17.6	2.9	11.8	20.6	14.7	11.8	2.9	5.9	0.0	14.7	8.8
성별												
남자	(63)	14.3	11.1	9.5	11.1	15.9	12.7	9.5	1.6	4.8	15.9	4.8
여자	(37)	10.8	0.0	2.7	16.2	13.5	5.4	10.8	16.2	0.0	16.2	13.5
근무지역												
서울	(9)	11.1	0.0	22.2	22.2	11.1	33.3	0.0	11.1	0.0	0.0	0.0
인천/경기	(16)	25.0	6.3	0.0	18.8	12.5	18.8	0.0	6.3	6.3	6.3	6.3
경북/대구	(21)	14.3	9.5	9.5	19.0	4.8	4.8	4.8	4.8	4.8	28.6	0.0
부산/울산/경남	(3)	33.3	0.0	0.0	33.3	33.3	0.0	0.0	0.0	0.0	0.0	0.0
광주/전라	(23)	4.3	13.0	4.3	8.7	21.7	4.3	13.0	13.0	4.3	8.7	13.0
대전/충청	(13)	15.4	0.0	7.7	0.0	23.1	7.7	7.7	7.7	0.0	23.1	7.7
강원/제주	(15)	6.7	6.7	6.7	6.7	13.3	6.7	33.3	0.0	0.0	26.7	20.0

[표 16] 입법평가시 포함되어야 하는 대항목

(단위 : %)

	사례수 (명)	가치성/ 효과성	경제성	공익성	시의성	합목 적성	실현 가능성	중복 여부	만족도	적정/ 적합성	지역/ 특수/ 차별성	추가항 목없음
■ 전 체 ■	(100)	9.0	3.0	5.0	7.0	7.0	9.0	6.0	2.0	9.0	4.0	48.0
연령												
20대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0대	(21)	0.0	0.0	9.5	9.5	4.8	4.8	9.5	0.0	4.8	0.0	66.7
40대	(41)	12.2	4.9	2.4	9.8	2.4	7.3	7.3	2.4	9.8	4.9	43.9
50대 이상	(37)	10.8	2.7	5.4	2.7	13.5	13.5	2.7	2.7	10.8	5.4	40.5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2.3	1.5	3.1	9.2	7.7	6.2	6.2	0.0	6.2	4.6	49.2
3~5년	(12)	0.0	0.0	8.3	8.3	8.3	8.3	16.7	8.3	0.0	0.0	58.3
5~10년	(6)	0.0	16.7	16.7	0.0	0.0	16.7	0.0	0.0	0.0	0.0	50.0
10년이상	(17)	5.9	5.9	5.9	0.0	5.9	17.6	0.0	5.9	29.4	5.9	35.3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4.3	4.8	9.5	0.0	9.5	14.3	0.0	0.0	0.0	9.5	47.6
미도입	(79)	7.6	2.5	3.8	8.9	6.3	7.6	7.6	2.5	11.4	2.5	48.1
소속												
의회	(66)	7.6	4.5	6.1	6.1	6.1	10.6	7.6	3.0	6.1	3.0	50.0
집행부	(34)	11.8	0.0	2.9	8.8	8.8	5.9	2.9	0.0	14.7	5.9	44.1
성별												
남자	(63)	6.3	1.6	3.2	9.5	6.3	11.1	4.8	3.2	9.5	4.8	49.2
여자	(37)	13.5	5.4	8.1	2.7	8.1	5.4	8.1	0.0	8.1	2.7	45.9
근무지역												
서울	(9)	0.0	0.0	11.1	11.1	11.1	22.2	0.0	0.0	0.0	0.0	66.7
인천/경기	(16)	18.8	6.3	6.3	0.0	12.5	6.3	12.5	0.0	6.3	0.0	50.0
경북/대구	(21)	0.0	9.5	4.8	9.5	4.8	9.5	0.0	4.8	19.0	0.0	42.9
부산/울산/경남	(3)	0.0	0.0	0.0	0.0	0.0	0.0	0.0	0.0	33.3	33.3	33.3
광주/전라	(23)	8.7	0.0	4.3	8.7	4.3	8.7	8.7	4.3	0.0	8.7	47.8
대전/충청	(13)	7.7	0.0	0.0	7.7	7.7	0.0	7.7	0.0	23.1	0.0	53.8
강원/제주	(15)	20.0	0.0	6.7	6.7	6.7	13.3	6.7	0.0	0.0	6.7	40.0

[표 17] 입법평가 필요성 - 중요도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Top2	평 균
▣ 전 체 ▣	(100)	37.0	53.0	10.0	90.0	4.27
연령						
20대	(1)	0.0	100.0	0.0	100.0	4.00
30대	(21)	23.8	71.4	4.8	95.2	4.19
40대	(41)	39.0	48.8	12.2	87.8	4.27
50대 이상	(37)	43.2	45.9	10.8	89.2	4.32
근무경력						
3년 미만	(65)	33.8	52.3	13.8	86.2	4.20
3~5년	(12)	41.7	58.3	0.0	100.0	4.42
5~10년	(6)	33.3	66.7	0.0	100.0	4.33
10년이상	(17)	47.1	47.1	5.9	94.1	4.41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8.1	57.1	4.8	95.2	4.33
미도입	(79)	36.7	51.9	11.4	88.6	4.25
소속						
의회	(66)	36.4	54.5	9.1	90.9	4.27
집행부	(34)	38.2	50.0	11.8	88.2	4.26
성별						
남자	(63)	44.4	49.2	6.3	93.7	4.38
여자	(37)	24.3	59.5	16.2	83.8	4.08
근무지역						
서울	(9)	11.1	66.7	22.2	77.8	3.89
인천/경기	(16)	37.5	50.0	12.5	87.5	4.25
경북/대구	(21)	42.9	42.9	14.3	85.7	4.29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100.0	4.33
광주/전라	(23)	34.8	60.9	4.3	95.7	4.30
대전/충청	(13)	30.8	61.5	7.7	92.3	4.23
강원/제주	(15)	53.3	40.0	6.7	93.3	4.47

[표 18]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1 - 자치법규의 개정이 위임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것인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27.0	49.0	20.0	4.0	76.0	4.0	3.99
연령								
20대	(1)	100.0	0.0	0.0	0.0	100.0	0.0	5.00
30대	(21)	23.8	66.7	9.5	0.0	90.5	0.0	4.14
40대	(41)	29.3	43.9	22.0	4.9	73.2	4.9	3.98
50대 이상	(37)	24.3	45.9	24.3	5.4	70.3	5.4	3.89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4.6	55.4	16.9	3.1	80.0	3.1	4.02
3~5년	(12)	50.0	8.3	33.3	8.3	58.3	8.3	4.00
5~10년	(6)	16.7	33.3	33.3	16.7	50.0	16.7	3.50
10년이상	(17)	23.5	58.8	17.6	0.0	82.4	0.0	4.06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23.8	38.1	28.6	9.5	61.9	9.5	3.76
미도입	(79)	27.8	51.9	17.7	2.5	79.7	2.5	4.05
소속								
의회	(66)	21.2	48.5	24.2	6.1	69.7	6.1	3.85
집행부	(34)	38.2	50.0	11.8	0.0	88.2	0.0	4.26
성별								
남자	(63)	34.9	44.4	19.0	1.6	79.4	1.6	4.13
여자	(37)	13.5	56.8	21.6	8.1	70.3	8.1	3.76
근무지역								
서울	(9)	22.2	44.4	22.2	11.1	66.7	11.1	3.78
인천/경기	(16)	37.5	50.0	12.5	0.0	87.5	0.0	4.25
경북/대구	(21)	19.0	66.7	14.3	0.0	85.7	0.0	4.05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0.0	100.0	0.0	4.00
광주/전라	(23)	30.4	34.8	26.1	8.7	65.2	8.7	3.87
대전/충청	(13)	23.1	53.8	15.4	7.7	76.9	7.7	3.92
강원/제주	(15)	33.3	33.3	33.3	0.0	66.7	0.0	4.00

[표 19]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2 -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29.0	38.0	25.0	8.0	67.0	8.0	3.88
연령								
20대	(1)	100.0	0.0	0.0	0.0	100.0	0.0	5.00
30대	(21)	9.5	71.4	19.0	0.0	81.0	0.0	3.90
40대	(41)	41.5	22.0	26.8	9.8	63.4	9.8	3.95
50대 이상	(37)	24.3	37.8	27.0	10.8	62.2	10.8	3.76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1.5	44.6	23.1	10.8	66.2	10.8	3.77
3~5년	(12)	41.7	25.0	33.3	0.0	66.7	0.0	4.08
5~10년	(6)	50.0	33.3	16.7	0.0	83.3	0.0	4.33
10년이상	(17)	41.2	23.5	29.4	5.9	64.7	5.9	4.00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23.8	42.9	28.6	4.8	66.7	4.8	3.86
미도입	(79)	30.4	36.7	24.1	8.9	67.1	8.9	3.89
소속								
의회	(66)	30.3	33.3	25.8	10.6	63.6	10.6	3.83
집행부	(34)	26.5	47.1	23.5	2.9	73.5	2.9	3.97
성별								
남자	(63)	38.1	39.7	17.5	4.8	77.8	4.8	4.11
여자	(37)	13.5	35.1	37.8	13.5	48.6	13.5	3.49
근무지역								
서울	(9)	44.4	33.3	22.2	0.0	77.8	0.0	4.22
인천/경기	(16)	37.5	37.5	25.0	0.0	75.0	0.0	4.13
경북/대구	(21)	28.6	33.3	33.3	4.8	61.9	4.8	3.86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0.0	100.0	0.0	4.33
광주/전라	(23)	17.4	47.8	26.1	8.7	65.2	8.7	3.74
대전/충청	(13)	23.1	30.8	15.4	30.8	53.8	30.8	3.46
강원/제주	(15)	33.3	33.3	26.7	6.7	66.7	6.7	3.93

[표 20]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3 - 조례의 목적이 현시점에서도 적절한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Top2	평 균
■ 전 체 ■	(100)	34.0	54.0	12.0	88.0	4.22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3.00
30대	(21)	23.8	61.9	14.3	85.7	4.10
40대	(41)	29.3	61.0	9.8	90.2	4.20
50대 이상	(37)	45.9	43.2	10.8	89.2	4.35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9.2	55.4	15.4	84.6	4.14
3~5년	(12)	41.7	50.0	8.3	91.7	4.33
5~10년	(6)	50.0	50.0	0.0	100.0	4.50
10년이상	(17)	41.2	52.9	5.9	94.1	4.35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28.6	61.9	9.5	90.5	4.19
미도입	(79)	35.4	51.9	12.7	87.3	4.23
소속						
의회	(66)	30.3	54.5	15.2	84.8	4.15
집행부	(34)	41.2	52.9	5.9	94.1	4.35
성별						
남자	(63)	44.4	46.0	9.5	90.5	4.35
여자	(37)	16.2	67.6	16.2	83.8	4.00
근무지역						
서울	(9)	33.3	44.4	22.2	77.8	4.11
인천/경기	(16)	31.3	62.5	6.3	93.8	4.25
경북/대구	(21)	57.1	38.1	4.8	95.2	4.52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100.0	4.33
광주/전라	(23)	26.1	56.5	17.4	82.6	4.09
대전/충청	(13)	15.4	76.9	7.7	92.3	4.08
강원/제주	(15)	33.3	46.7	20.0	80.0	4.13

[표 21]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4 - 조레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현시점에서도 존재하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Top2	평 균
■ 전 체 ■	(100)	31.0	51.0	18.0	82.0	4.13
연령						
20대	(1)	0.0	100.0	0.0	100.0	4.00
30대	(21)	28.6	52.4	19.0	81.0	4.10
40대	(41)	19.5	68.3	12.2	87.8	4.07
50대 이상	(37)	45.9	29.7	24.3	75.7	4.22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9.2	46.2	24.6	75.4	4.05
3~5년	(12)	50.0	41.7	8.3	91.7	4.42
5~10년	(6)	0.0	100.0	0.0	100.0	4.00
10년이상	(17)	35.3	58.8	5.9	94.1	4.29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23.8	66.7	9.5	90.5	4.14
미도입	(79)	32.9	46.8	20.3	79.7	4.13
소속						
의회	(66)	28.8	56.1	15.2	84.8	4.14
집행부	(34)	35.3	41.2	23.5	76.5	4.12
성별						
남자	(63)	36.5	50.8	12.7	87.3	4.24
여자	(37)	21.6	51.4	27.0	73.0	3.95
근무지역						
서울	(9)	11.1	88.9	0.0	100.0	4.11
인천/경기	(16)	37.5	37.5	25.0	75.0	4.13
경북/대구	(21)	52.4	42.9	4.8	95.2	4.48
부산/울산/경남	(3)	33.3	33.3	33.3	66.7	4.00
광주/전라	(23)	17.4	56.5	26.1	73.9	3.91
대전/충청	(13)	38.5	38.5	23.1	76.9	4.15
강원/제주	(15)	20.0	60.0	20.0	80.0	4.00

[표 22]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5 - 조례의 제정이후 같은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16.0	47.0	30.0	7.0	63.0	7.0	3.72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3.00
30대	(21)	9.5	52.4	33.3	4.8	61.9	4.8	3.67
40대	(41)	14.6	48.8	34.1	2.4	63.4	2.4	3.76
50대 이상	(37)	21.6	43.2	21.6	13.5	64.9	13.5	3.73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2.3	47.7	32.3	7.7	60.0	7.7	3.65
3~5년	(12)	16.7	66.7	16.7	0.0	83.3	0.0	4.00
5~10년	(6)	16.7	33.3	33.3	16.7	50.0	16.7	3.50
10년이상	(17)	29.4	35.3	29.4	5.9	64.7	5.9	3.88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8	47.6	23.8	23.8	52.4	23.8	3.33
미도입	(79)	19.0	46.8	31.6	2.5	65.8	2.5	3.82
소속								
의회	(66)	19.7	40.9	28.8	10.6	60.6	10.6	3.70
집행부	(34)	8.8	58.8	32.4	0.0	67.6	0.0	3.76
성별								
남자	(63)	20.6	41.3	28.6	9.5	61.9	9.5	3.73
여자	(37)	8.1	56.8	32.4	2.7	64.9	2.7	3.70
근무지역								
서울	(9)	0.0	66.7	33.3	0.0	66.7	0.0	3.67
인천/경기	(16)	18.8	50.0	25.0	6.3	68.8	6.3	3.81
경북/대구	(21)	23.8	42.9	28.6	4.8	66.7	4.8	3.86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0.0	100.0	0.0	4.00
광주/전라	(23)	21.7	39.1	26.1	13.0	60.9	13.0	3.70
대전/충청	(13)	23.1	38.5	38.5	0.0	61.5	0.0	3.85
강원/제주	(15)	0.0	46.7	40.0	13.3	46.7	13.3	3.33

[표 23]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6 - 사인간의 자율노력이나 민사절차에 의한 대응의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았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11.0	44.0	43.0	2.0	55.0	2.0	3.64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3.00
30대	(21)	0.0	52.4	42.9	4.8	52.4	4.8	3.48
40대	(41)	9.8	43.9	43.9	2.4	53.7	2.4	3.61
50대 이상	(37)	18.9	40.5	40.5	0.0	59.5	0.0	3.78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0.8	46.2	41.5	1.5	56.9	1.5	3.66
3~5년	(12)	16.7	41.7	41.7	0.0	58.3	0.0	3.75
5~10년	(6)	0.0	50.0	50.0	0.0	50.0	0.0	3.50
10년이상	(17)	11.8	35.3	47.1	5.9	47.1	5.9	3.53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8	28.6	61.9	4.8	33.3	4.8	3.33
미도입	(79)	12.7	48.1	38.0	1.3	60.8	1.3	3.72
소속								
의회	(66)	13.6	42.4	42.4	1.5	56.1	1.5	3.68
집행부	(34)	5.9	47.1	44.1	2.9	52.9	2.9	3.56
성별								
남자	(63)	14.3	41.3	41.3	3.2	55.6	3.2	3.67
여자	(37)	5.4	48.6	45.9	0.0	54.1	0.0	3.59
근무지역								
서울	(9)	11.1	44.4	44.4	0.0	55.6	0.0	3.67
인천/경기	(16)	18.8	50.0	18.8	12.5	68.8	12.5	3.75
경북/대구	(21)	4.8	52.4	42.9	0.0	57.1	0.0	3.62
부산/울산/경남	(3)	0.0	66.7	33.3	0.0	66.7	0.0	3.67
광주/전라	(23)	13.0	39.1	47.8	0.0	52.2	0.0	3.65
대전/충청	(13)	15.4	46.2	38.5	0.0	61.5	0.0	3.77
강원/제주	(15)	6.7	26.7	66.7	0.0	33.3	0.0	3.40

[표 24]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7 -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 목적은 그 의도대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37.0	54.0	8.0	1.0	91.0	1.0	4.27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4.00
30대	(21)	33.3	57.1	9.5	0.0	90.5	0.0	4.24
40대	(41)	41.5	51.2	7.3	0.0	92.7	0.0	4.34
50대 이상	(37)	35.1	54.1	8.1	2.7	89.2	2.7	4.22
근무경력								
3년 미만	(65)	30.8	55.4	12.3	1.5	86.2	1.5	4.15
3~5년	(12)	58.3	41.7	0.0	0.0	100.0	0.0	4.58
5~10년	(6)	50.0	50.0	0.0	0.0	100.0	0.0	4.50
10년이상	(17)	41.2	58.8	0.0	0.0	100.0	0.0	4.41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2.9	42.9	9.5	4.8	85.7	4.8	4.24
미도입	(79)	35.4	57.0	7.6	0.0	92.4	0.0	4.28
소속								
의회	(66)	40.9	51.5	6.1	1.5	92.4	1.5	4.32
집행부	(34)	29.4	58.8	11.8	0.0	88.2	0.0	4.18
성별								
남자	(63)	39.7	55.6	3.2	1.6	95.2	1.6	4.33
여자	(37)	32.4	51.4	16.2	0.0	83.8	0.0	4.16
근무지역								
서울	(9)	44.4	33.3	22.2	0.0	77.8	0.0	4.22
인천/경기	(16)	37.5	56.3	6.3	0.0	93.8	0.0	4.31
경북/대구	(21)	52.4	42.9	4.8	0.0	95.2	0.0	4.48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0.0	100.0	0.0	4.33
광주/전라	(23)	30.4	60.9	8.7	0.0	91.3	0.0	4.22
대전/충청	(13)	23.1	69.2	7.7	0.0	92.3	0.0	4.15
강원/제주	(15)	33.3	53.3	6.7	6.7	86.7	6.7	4.13

[표 25]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8 -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사정이나
위험이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Top2	평 균
■ 전 체 ■	(100)	24.0	55.0	21.0	79.0	4.03
연령						
20대	(1)	0.0	100.0	0.0	100.0	4.00
30대	(21)	9.5	47.6	42.9	57.1	3.67
40대	(41)	26.8	63.4	9.8	90.2	4.17
50대 이상	(37)	29.7	48.6	21.6	78.4	4.08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0.0	50.8	29.2	70.8	3.91
3~5년	(12)	25.0	75.0	0.0	100.0	4.25
5~10년	(6)	50.0	33.3	16.7	83.3	4.33
10년이상	(17)	29.4	64.7	5.9	94.1	4.24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28.6	57.1	14.3	85.7	4.14
미도입	(79)	22.8	54.4	22.8	77.2	4.00
소속						
의회	(66)	30.3	50.0	19.7	80.3	4.11
집행부	(34)	11.8	64.7	23.5	76.5	3.88
성별						
남자	(63)	25.4	57.1	17.5	82.5	4.08
여자	(37)	21.6	51.4	27.0	73.0	3.95
근무지역						
서울	(9)	22.2	44.4	33.3	66.7	3.89
인천/경기	(16)	31.3	43.8	25.0	75.0	4.06
경북/대구	(21)	23.8	57.1	19.0	81.0	4.05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100.0	4.00
광주/전라	(23)	30.4	52.2	17.4	82.6	4.13
대전/충청	(13)	23.1	61.5	15.4	84.6	4.08
강원/제주	(15)	13.3	60.0	26.7	73.3	3.87

[표 26]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9 -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30.0	56.0	13.0	1.0	86.0	1.0	4.15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4.00
30대	(21)	9.5	81.0	9.5	0.0	90.5	0.0	4.00
40대	(41)	36.6	53.7	9.8	0.0	90.2	0.0	4.27
50대 이상	(37)	35.1	43.2	18.9	2.7	78.4	2.7	4.11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6.2	60.0	13.8	0.0	86.2	0.0	4.12
3~5년	(12)	41.7	25.0	33.3	0.0	66.7	0.0	4.08
5~10년	(6)	33.3	66.7	0.0	0.0	100.0	0.0	4.33
10년이상	(17)	35.3	58.8	0.0	5.9	94.1	5.9	4.24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28.6	52.4	19.0	0.0	81.0	0.0	4.10
미도입	(79)	30.4	57.0	11.4	1.3	87.3	1.3	4.16
소속								
의회	(66)	34.8	53.0	10.6	1.5	87.9	1.5	4.21
집행부	(34)	20.6	61.8	17.6	0.0	82.4	0.0	4.03
성별								
남자	(63)	31.7	55.6	11.1	1.6	87.3	1.6	4.17
여자	(37)	27.0	56.8	16.2	0.0	83.8	0.0	4.11
근무지역								
서울	(9)	11.1	66.7	22.2	0.0	77.8	0.0	3.89
인천/경기	(16)	37.5	50.0	12.5	0.0	87.5	0.0	4.25
경북/대구	(21)	28.6	71.4	0.0	0.0	100.0	0.0	4.29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0.0	100.0	0.0	4.33
광주/전라	(23)	34.8	47.8	17.4	0.0	82.6	0.0	4.17
대전/충청	(13)	30.8	61.5	0.0	7.7	92.3	7.7	4.15
강원/제주	(15)	26.7	40.0	33.3	0.0	66.7	0.0	3.93

[표 27] 필요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10 -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Top2	평 균
■ 전 체 ■	(100)	32.0	51.0	17.0	83.0	4.15
연령						
20대	(1)	0.0	100.0	0.0	100.0	4.00
30대	(21)	23.8	61.9	14.3	85.7	4.10
40대	(41)	34.1	56.1	9.8	90.2	4.24
50대 이상	(37)	35.1	37.8	27.0	73.0	4.08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7.7	50.8	21.5	78.5	4.06
3~5년	(12)	50.0	50.0	0.0	100.0	4.50
5~10년	(6)	33.3	50.0	16.7	83.3	4.17
10년이상	(17)	35.3	52.9	11.8	88.2	4.24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23.8	42.9	33.3	66.7	3.90
미도입	(79)	34.2	53.2	12.7	87.3	4.22
소속						
의회	(66)	37.9	45.5	16.7	83.3	4.21
집행부	(34)	20.6	61.8	17.6	82.4	4.03
성별						
남자	(63)	30.2	52.4	17.5	82.5	4.13
여자	(37)	35.1	48.6	16.2	83.8	4.19
근무지역						
서울	(9)	44.4	55.6	0.0	100.0	4.44
인천/경기	(16)	43.8	37.5	18.8	81.3	4.25
경북/대구	(21)	23.8	52.4	23.8	76.2	4.00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100.0	4.00
광주/전라	(23)	26.1	52.2	21.7	78.3	4.04
대전/충청	(13)	46.2	53.8	0.0	100.0	4.46
강원/제주	(15)	26.7	46.7	26.7	73.3	4.00

[표 28] 필요성 항목의 신규 포함 항목

(단위 : %)

	사례수 (명)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문제해결/ 실효성	현실적/실현 가능한 것인지	주민/지역과 관련성 및 이익증대에 필요한가	추가항목 없음
▣ 전 체 ▣	(100)	5.0	11.0	8.0	14.0	62.0
연령						
20대	(1)	0.0	0.0	0.0	0.0	100.0
30대	(21)	0.0	9.5	14.3	9.5	66.7
40대	(41)	7.3	14.6	7.3	12.2	58.5
50대 이상	(37)	5.4	8.1	5.4	18.9	62.2
근무경력						
3년 미만	(65)	3.1	13.8	4.6	15.4	63.1
3~5년	(12)	0.0	0.0	16.7	8.3	75.0
5~10년	(6)	0.0	16.7	16.7	16.7	50.0
10년이상	(17)	17.6	5.9	11.8	11.8	52.9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8	4.8	4.8	19.0	66.7
미도입	(79)	5.1	12.7	8.9	12.7	60.8
소속						
의회	(66)	3.0	13.6	7.6	13.6	62.1
집행부	(34)	8.8	5.9	8.8	14.7	61.8
성별						
남자	(63)	3.2	11.1	7.9	14.3	63.5
여자	(37)	8.1	10.8	8.1	13.5	59.5
근무지역						
서울	(9)	11.1	11.1	22.2	11.1	44.4
인천/경기	(16)	6.3	6.3	12.5	25.0	50.0
경북/대구	(21)	0.0	9.5	19.0	4.8	66.7
부산/울산/경남	(3)	33.3	33.3	0.0	0.0	33.3
광주/전라	(23)	0.0	13.0	0.0	21.7	65.2
대전/충청	(13)	15.4	0.0	0.0	15.4	69.2
강원/제주	(15)	0.0	20.0	0.0	6.7	73.3

[표 29] 입법평가 유효성 - 중요도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Top2	평 균
■ 전 체 ■	(100)	30.0	56.0	14.0	86.0	4.16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3.00
30대	(21)	14.3	76.2	9.5	90.5	4.05
40대	(41)	31.7	58.5	9.8	90.2	4.22
50대 이상	(37)	37.8	43.2	18.9	81.1	4.19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3.1	58.5	18.5	81.5	4.05
3~5년	(12)	50.0	41.7	8.3	91.7	4.42
5~10년	(6)	33.3	66.7	0.0	100.0	4.33
10년이상	(17)	41.2	52.9	5.9	94.1	4.35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8.1	52.4	9.5	90.5	4.29
미도입	(79)	27.8	57.0	15.2	84.8	4.13
소속						
의회	(66)	31.8	53.0	15.2	84.8	4.17
집행부	(34)	26.5	61.8	11.8	88.2	4.15
성별						
남자	(63)	33.3	57.1	9.5	90.5	4.24
여자	(37)	24.3	54.1	21.6	78.4	4.03
근무지역						
서울	(9)	0.0	66.7	33.3	66.7	3.67
인천/경기	(16)	31.3	56.3	12.5	87.5	4.19
경북/대구	(21)	19.0	71.4	9.5	90.5	4.10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100.0	4.33
광주/전라	(23)	39.1	52.2	8.7	91.3	4.30
대전/충청	(13)	46.2	38.5	15.4	84.6	4.31
강원/제주	(15)	33.3	46.7	20.0	80.0	4.13

[표 30] 유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1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Top2	평 균
▣ 전 체 ▣	(100)	47.0	42.0	11.0	89.0	4.36
연령						
20대	(1)	100.0	0.0	0.0	100.0	5.00
30대	(21)	23.8	66.7	9.5	90.5	4.14
40대	(41)	53.7	34.1	12.2	87.8	4.41
50대 이상	(37)	51.4	37.8	10.8	89.2	4.41
근무경력						
3년 미만	(65)	41.5	46.2	12.3	87.7	4.29
3~5년	(12)	41.7	58.3	0.0	100.0	4.42
5~10년	(6)	66.7	16.7	16.7	83.3	4.50
10년이상	(17)	64.7	23.5	11.8	88.2	4.53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2.9	47.6	9.5	90.5	4.33
미도입	(79)	48.1	40.5	11.4	88.6	4.37
소속						
의회	(66)	48.5	40.9	10.6	89.4	4.38
집행부	(34)	44.1	44.1	11.8	88.2	4.32
성별						
남자	(63)	52.4	39.7	7.9	92.1	4.44
여자	(37)	37.8	45.9	16.2	83.8	4.22
근무지역						
서울	(9)	44.4	55.6	0.0	100.0	4.44
인천/경기	(16)	50.0	37.5	12.5	87.5	4.38
경북/대구	(21)	52.4	33.3	14.3	85.7	4.38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100.0	4.33
광주/전라	(23)	39.1	47.8	13.0	87.0	4.26
대전/충청	(13)	38.5	46.2	15.4	84.6	4.23
강원/제주	(15)	60.0	33.3	6.7	93.3	4.53

[표 31] 유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2 - 조례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Top2	평 균
▣ 전 체 ▣	(100)	28.0	59.0	13.0	87.0	4.15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3.00
30대	(21)	19.0	66.7	14.3	85.7	4.05
40대	(41)	34.1	56.1	9.8	90.2	4.24
50대 이상	(37)	27.0	59.5	13.5	86.5	4.14
근무경력						
3년 미만	(65)	32.3	55.4	12.3	87.7	4.20
3~5년	(12)	16.7	83.3	0.0	100.0	4.17
5~10년	(6)	0.0	66.7	33.3	66.7	3.67
10년이상	(17)	29.4	52.9	17.6	82.4	4.12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28.6	52.4	19.0	81.0	4.10
미도입	(79)	27.8	60.8	11.4	88.6	4.16
소속						
의회	(66)	28.8	57.6	13.6	86.4	4.15
집행부	(34)	26.5	61.8	11.8	88.2	4.15
성별						
남자	(63)	31.7	54.0	14.3	85.7	4.17
여자	(37)	21.6	67.6	10.8	89.2	4.11
근무지역						
서울	(9)	11.1	88.9	0.0	100.0	4.11
인천/경기	(16)	31.3	56.3	12.5	87.5	4.19
경북/대구	(21)	19.0	71.4	9.5	90.5	4.10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100.0	4.00
광주/전라	(23)	21.7	60.9	17.4	82.6	4.04
대전/충청	(13)	61.5	15.4	23.1	76.9	4.38
강원/제주	(15)	33.3	53.3	13.3	86.7	4.20

[표 32] 유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3 -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위법규 등은 마련되어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17.0	37.0	43.0	3.0	54.0	3.0	3.68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3.00
30대	(21)	9.5	38.1	47.6	4.8	47.6	4.8	3.52
40대	(41)	24.4	34.1	41.5	0.0	58.5	0.0	3.83
50대 이상	(37)	13.5	40.5	40.5	5.4	54.1	5.4	3.62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5.4	38.5	44.6	1.5	53.8	1.5	3.68
3~5년	(12)	8.3	58.3	25.0	8.3	66.7	8.3	3.67
5~10년	(6)	0.0	16.7	66.7	16.7	16.7	16.7	3.00
10년이상	(17)	35.3	23.5	41.2	0.0	58.8	0.0	3.94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4.3	23.8	52.4	9.5	38.1	9.5	3.43
미도입	(79)	17.7	40.5	40.5	1.3	58.2	1.3	3.75
소속								
의회	(66)	16.7	33.3	47.0	3.0	50.0	3.0	3.64
집행부	(34)	17.6	44.1	35.3	2.9	61.8	2.9	3.76
성별								
남자	(63)	15.9	44.4	38.1	1.6	60.3	1.6	3.75
여자	(37)	18.9	24.3	51.4	5.4	43.2	5.4	3.57
근무지역								
서울	(9)	11.1	33.3	55.6	0.0	44.4	0.0	3.56
인천/경기	(16)	18.8	37.5	31.3	12.5	56.3	12.5	3.63
경북/대구	(21)	28.6	23.8	47.6	0.0	52.4	0.0	3.81
부산/울산/경남	(3)	0.0	0.0	100.0	0.0	0.0	0.0	3.00
광주/전라	(23)	13.0	43.5	39.1	4.3	56.5	4.3	3.65
대전/충청	(13)	23.1	46.2	30.8	0.0	69.2	0.0	3.92
강원/제주	(15)	6.7	46.7	46.7	0.0	53.3	0.0	3.60

[표 33] 유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4 - 규제하려는 내용은 시민의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 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 하지 않은 편	전혀 중요 하지 않다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33.0	47.0	18.0	1.0	1.0	80.0	2.0	4.10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0.0	3.00
30대	(21)	19.0	66.7	9.5	0.0	4.8	85.7	4.8	3.95
40대	(41)	31.7	43.9	22.0	2.4	0.0	75.6	2.4	4.05
50대 이상	(37)	43.2	40.5	16.2	0.0	0.0	83.8	0.0	4.27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7.7	56.9	15.4	0.0	0.0	84.6	0.0	4.12
3~5년	(12)	33.3	50.0	8.3	8.3	0.0	83.3	8.3	4.08
5~10년	(6)	16.7	0.0	66.7	0.0	16.7	16.7	16.7	3.00
10년이상	(17)	58.8	23.5	17.6	0.0	0.0	82.4	0.0	4.41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7.6	38.1	14.3	0.0	0.0	85.7	0.0	4.33
미도입	(79)	29.1	49.4	19.0	1.3	1.3	78.5	2.5	4.04
소속									
의회	(66)	40.9	39.4	16.7	1.5	1.5	80.3	3.0	4.17
집행부	(34)	17.6	61.8	20.6	0.0	0.0	79.4	0.0	3.97
성별									
남자	(63)	39.7	44.4	14.3	1.6	0.0	84.1	1.6	4.22
여자	(37)	21.6	51.4	24.3	0.0	2.7	73.0	2.7	3.89
근무지역									
서울	(9)	33.3	44.4	22.2	0.0	0.0	77.8	0.0	4.11
인천/경기	(16)	50.0	25.0	25.0	0.0	0.0	75.0	0.0	4.25
경북/대구	(21)	28.6	42.9	28.6	0.0	0.0	71.4	0.0	4.00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0.0	0.0	100.0	0.0	4.00
광주/전라	(23)	26.1	56.5	8.7	4.3	4.3	82.6	8.7	3.96
대전/충청	(13)	46.2	38.5	15.4	0.0	0.0	84.6	0.0	4.31
강원/제주	(15)	26.7	60.0	13.3	0.0	0.0	86.7	0.0	4.13

부 록 2

[표 34] 유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5 - 과제의 상황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는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 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18.0	56.0	25.0	1.0	74.0	1.0	3.91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3.00
30대	(21)	0.0	76.2	23.8	0.0	76.2	0.0	3.76
40대	(41)	24.4	58.5	14.6	2.4	82.9	2.4	4.05
50대 이상	(37)	21.6	43.2	35.1	0.0	64.9	0.0	3.86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8.5	55.4	26.2	0.0	73.8	0.0	3.92
3~5년	(12)	16.7	75.0	8.3	0.0	91.7	0.0	4.08
5~10년	(6)	0.0	50.0	33.3	16.7	50.0	16.7	3.33
10년이상	(17)	23.5	47.1	29.4	0.0	70.6	0.0	3.94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23.8	42.9	28.6	4.8	66.7	4.8	3.86
미도입	(79)	16.5	59.5	24.1	0.0	75.9	0.0	3.92
소속								
의회	(66)	21.2	53.0	24.2	1.5	74.2	1.5	3.94
집행부	(34)	11.8	61.8	26.5	0.0	73.5	0.0	3.85
성별								
남자	(63)	20.6	57.1	20.6	1.6	77.8	1.6	3.97
여자	(37)	13.5	54.1	32.4	0.0	67.6	0.0	3.81
근무지역								
서울	(9)	0.0	88.9	11.1	0.0	88.9	0.0	3.89
인천/경기	(16)	18.8	50.0	31.3	0.0	68.8	0.0	3.88
경북/대구	(21)	19.0	61.9	19.0	0.0	81.0	0.0	4.00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0.0	100.0	0.0	4.33
광주/전라	(23)	13.0	56.5	26.1	4.3	69.6	4.3	3.78
대전/충청	(13)	30.8	38.5	30.8	0.0	69.2	0.0	4.00
강원/제주	(15)	20.0	46.7	33.3	0.0	66.7	0.0	3.87

[표 35] 유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6 - (목표가 명확한 경우)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실현하였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 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19.0	67.0	12.0	2.0	86.0	2.0	4.03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3.00
30대	(21)	19.0	81.0	0.0	0.0	100.0	0.0	4.19
40대	(41)	17.1	65.9	12.2	4.9	82.9	4.9	3.95
50대 이상	(37)	21.6	62.2	16.2	0.0	83.8	0.0	4.05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6.9	67.7	15.4	0.0	84.6	0.0	4.02
3~5년	(12)	33.3	66.7	0.0	0.0	100.0	0.0	4.33
5~10년	(6)	0.0	66.7	16.7	16.7	66.7	16.7	3.50
10년이상	(17)	23.5	64.7	5.9	5.9	88.2	5.9	4.06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23.8	66.7	4.8	4.8	90.5	4.8	4.10
미도입	(79)	17.7	67.1	13.9	1.3	84.8	1.3	4.01
소속								
의회	(66)	21.2	66.7	9.1	3.0	87.9	3.0	4.06
집행부	(34)	14.7	67.6	17.6	0.0	82.4	0.0	3.97
성별								
남자	(63)	19.0	71.4	7.9	1.6	90.5	1.6	4.08
여자	(37)	18.9	59.5	18.9	2.7	78.4	2.7	3.95
근무지역								
서울	(9)	22.2	66.7	11.1	0.0	88.9	0.0	4.11
인천/경기	(16)	25.0	62.5	12.5	0.0	87.5	0.0	4.13
경북/대구	(21)	19.0	66.7	14.3	0.0	85.7	0.0	4.05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0.0	100.0	0.0	4.33
광주/전라	(23)	21.7	65.2	8.7	4.3	87.0	4.3	4.04
대전/충청	(13)	15.4	69.2	7.7	7.7	84.6	7.7	3.92
강원/제주	(15)	6.7	73.3	20.0	0.0	80.0	0.0	3.87

[표 36] 유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7 - [급부조례의 경우] 주민 등이 제도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25.0	52.0	21.0	2.0	77.0	2.0	4.00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3.00
30대	(21)	9.5	61.9	23.8	4.8	71.4	4.8	3.76
40대	(41)	29.3	46.3	22.0	2.4	75.6	2.4	4.02
50대 이상	(37)	29.7	54.1	16.2	0.0	83.8	0.0	4.14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6.2	47.7	24.6	1.5	73.8	1.5	3.98
3~5년	(12)	8.3	66.7	25.0	0.0	75.0	0.0	3.83
5~10년	(6)	33.3	33.3	16.7	16.7	66.7	16.7	3.83
10년이상	(17)	29.4	64.7	5.9	0.0	94.1	0.0	4.24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3.3	42.9	14.3	9.5	76.2	9.5	4.00
미도입	(79)	22.8	54.4	22.8	0.0	77.2	0.0	4.00
소속								
의회	(66)	27.3	51.5	18.2	3.0	78.8	3.0	4.03
집행부	(34)	20.6	52.9	26.5	0.0	73.5	0.0	3.94
성별								
남자	(63)	23.8	57.1	15.9	3.2	81.0	3.2	4.02
여자	(37)	27.0	43.2	29.7	0.0	70.3	0.0	3.97
근무지역								
서울	(9)	0.0	77.8	22.2	0.0	77.8	0.0	3.78
인천/경기	(16)	37.5	50.0	6.3	6.3	87.5	6.3	4.19
경북/대구	(21)	14.3	57.1	28.6	0.0	71.4	0.0	3.86
부산/울산/경남	(3)	66.7	33.3	0.0	0.0	100.0	0.0	4.67
광주/전라	(23)	26.1	47.8	21.7	4.3	73.9	4.3	3.96
대전/충청	(13)	30.8	53.8	15.4	0.0	84.6	0.0	4.15
강원/제주	(15)	26.7	40.0	33.3	0.0	66.7	0.0	3.93

[표 37] 유효성 항목의 신규 포함 항목

(단위 : %)

	사례수 (명)	주민의 활용/ 이해/ 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다수의 편익 인지, 특정 대상을 위한 내용 인지	실현 가능성/ 제반 요건 충분성	상충성	만족도	파급 효과	적합성 /적정	추가 항목 없음
■ 전 체 ■	(100)	8.0	9.0	6.0	1.0	1.0	3.0	3.0	69.0
연령									
20대	(1)	0.0	0.0	0.0	0.0	0.0	0.0	0.0	100.0
30대	(21)	4.8	9.5	9.5	0.0	0.0	4.8	4.8	66.7
40대	(41)	4.9	12.2	7.3	2.4	2.4	2.4	0.0	68.3
50대 이상	(37)	13.5	5.4	2.7	0.0	0.0	2.7	5.4	70.3
근무경력									
3년 미만	(65)	6.2	6.2	4.6	1.5	1.5	3.1	4.6	72.3
3~5년	(12)	8.3	16.7	8.3	0.0	0.0	0.0	0.0	66.7
5~10년	(6)	0.0	33.3	0.0	0.0	0.0	0.0	0.0	66.7
10년이상	(17)	17.6	5.9	11.8	0.0	0.0	5.9	0.0	58.8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8	9.5	14.3	0.0	0.0	4.8	0.0	66.7
미도입	(79)	8.9	8.9	3.8	1.3	1.3	2.5	3.8	69.6
소속									
의회	(66)	6.1	10.6	4.5	1.5	1.5	4.5	1.5	69.7
집행부	(34)	11.8	5.9	8.8	0.0	0.0	0.0	5.9	67.6
성별									
남자	(63)	9.5	9.5	3.2	0.0	1.6	1.6	3.2	71.4
여자	(37)	5.4	8.1	10.8	2.7	0.0	5.4	2.7	64.9
근무지역									
서울	(9)	22.2	22.2	0.0	0.0	0.0	0.0	11.1	44.4
인천/경기	(16)	6.3	6.3	18.8	0.0	0.0	6.3	0.0	62.5
경북/대구	(21)	9.5	0.0	4.8	4.8	0.0	0.0	4.8	76.2
부산/울산/경남	(3)	0.0	33.3	33.3	0.0	0.0	0.0	0.0	33.3
광주/전라	(23)	4.3	13.0	0.0	0.0	4.3	4.3	4.3	69.6
대전/충청	(13)	7.7	7.7	7.7	0.0	0.0	0.0	0.0	76.9
강원/제주	(15)	6.7	6.7	0.0	0.0	0.0	6.7	0.0	80.0

[표 38] 입법평가 효율성 중요도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Top2	평 균
□ 전 체 □	(100)	34.0	57.0	9.0	91.0	4.25
연령						
20대	(1)	0.0	100.0	0.0	100.0	4.00
30대	(21)	23.8	66.7	9.5	90.5	4.14
40대	(41)	36.6	53.7	9.8	90.2	4.27
50대 이상	(37)	37.8	54.1	8.1	91.9	4.30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4.6	64.6	10.8	89.2	4.14
3~5년	(12)	50.0	41.7	8.3	91.7	4.42
5~10년	(6)	50.0	50.0	0.0	100.0	4.50
10년이상	(17)	52.9	41.2	5.9	94.1	4.47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2.9	47.6	9.5	90.5	4.33
미도입	(79)	31.6	59.5	8.9	91.1	4.23
소속						
의회	(66)	33.3	59.1	7.6	92.4	4.26
집행부	(34)	35.3	52.9	11.8	88.2	4.24
성별						
남자	(63)	34.9	58.7	6.3	93.7	4.29
여자	(37)	32.4	54.1	13.5	86.5	4.19
근무지역						
서울	(9)	22.2	55.6	22.2	77.8	4.00
인천/경기	(16)	31.3	56.3	12.5	87.5	4.19
경북/대구	(21)	23.8	71.4	4.8	95.2	4.19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100.0	4.33
광주/전라	(23)	43.5	47.8	8.7	91.3	4.35
대전/충청	(13)	46.2	46.2	7.7	92.3	4.38
강원/제주	(15)	33.3	60.0	6.7	93.3	4.27

[표 39]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1 - 조례의 집행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은 편익은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Top2	평 균
▣ 전 체 ▣	(100)	29.0	56.0	15.0	85.0	4.14
연령						
20대	(1)	0.0	100.0	0.0	100.0	4.00
30대	(21)	9.5	76.2	14.3	85.7	3.95
40대	(41)	26.8	58.5	14.6	85.4	4.12
50대 이상	(37)	43.2	40.5	16.2	83.8	4.27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3.1	56.9	20.0	80.0	4.03
3~5년	(12)	41.7	58.3	0.0	100.0	4.42
5~10년	(6)	50.0	50.0	0.0	100.0	4.50
10년이상	(17)	35.3	52.9	11.8	88.2	4.24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3.3	52.4	14.3	85.7	4.19
미도입	(79)	27.8	57.0	15.2	84.8	4.13
소속						
의회	(66)	31.8	51.5	16.7	83.3	4.15
집행부	(34)	23.5	64.7	11.8	88.2	4.12
성별						
남자	(63)	34.9	49.2	15.9	84.1	4.19
여자	(37)	18.9	67.6	13.5	86.5	4.05
근무지역						
서울	(9)	22.2	66.7	11.1	88.9	4.11
인천/경기	(16)	18.8	68.8	12.5	87.5	4.06
경북/대구	(21)	23.8	66.7	9.5	90.5	4.14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100.0	4.33
광주/전라	(23)	39.1	39.1	21.7	78.3	4.17
대전/충청	(13)	30.8	53.8	15.4	84.6	4.15
강원/제주	(15)	33.3	46.7	20.0	80.0	4.13

[표 40]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2 -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Top2	평 균
■ 전 체 ■	(100)	20.0	62.0	18.0	82.0	4.02
연령						
20대	(1)	0.0	100.0	0.0	100.0	4.00
30대	(21)	9.5	66.7	23.8	76.2	3.86
40대	(41)	24.4	61.0	14.6	85.4	4.10
50대 이상	(37)	21.6	59.5	18.9	81.1	4.03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0.0	61.5	18.5	81.5	4.02
3~5년	(12)	25.0	66.7	8.3	91.7	4.17
5~10년	(6)	0.0	83.3	16.7	83.3	3.83
10년이상	(17)	23.5	52.9	23.5	76.5	4.00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9.0	47.6	33.3	66.7	3.86
미도입	(79)	20.3	65.8	13.9	86.1	4.06
소속						
의회	(66)	16.7	66.7	16.7	83.3	4.00
집행부	(34)	26.5	52.9	20.6	79.4	4.06
성별						
남자	(63)	20.6	61.9	17.5	82.5	4.03
여자	(37)	18.9	62.2	18.9	81.1	4.00
근무지역						
서울	(9)	11.1	88.9	0.0	100.0	4.11
인천/경기	(16)	31.3	43.8	25.0	75.0	4.06
경북/대구	(21)	14.3	76.2	9.5	90.5	4.05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100.0	4.00
광주/전라	(23)	21.7	52.2	26.1	73.9	3.96
대전/충청	(13)	23.1	46.2	30.8	69.2	3.92
강원/제주	(15)	20.0	66.7	13.3	86.7	4.07

[표 41]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3 - 재정부담이 제정 초기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하였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26.0	56.0	17.0	1.0	82.0	1.0	4.07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4.00
30대	(21)	14.3	66.7	19.0	0.0	81.0	0.0	3.95
40대	(41)	34.1	48.8	17.1	0.0	82.9	0.0	4.17
50대 이상	(37)	24.3	56.8	16.2	2.7	81.1	2.7	4.03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7.7	50.8	20.0	1.5	78.5	1.5	4.05
3~5년	(12)	33.3	58.3	8.3	0.0	91.7	0.0	4.25
5~10년	(6)	16.7	83.3	0.0	0.0	100.0	0.0	4.17
10년이상	(17)	17.6	64.7	17.6	0.0	82.4	0.0	4.00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2.9	33.3	23.8	0.0	76.2	0.0	4.19
미도입	(79)	21.5	62.0	15.2	1.3	83.5	1.3	4.04
소속								
의회	(66)	30.3	50.0	19.7	0.0	80.3	0.0	4.11
집행부	(34)	17.6	67.6	11.8	2.9	85.3	2.9	4.00
성별								
남자	(63)	28.6	50.8	19.0	1.6	79.4	1.6	4.06
여자	(37)	21.6	64.9	13.5	0.0	86.5	0.0	4.08
근무지역								
서울	(9)	0.0	88.9	11.1	0.0	88.9	0.0	3.89
인천/경기	(16)	37.5	50.0	12.5	0.0	87.5	0.0	4.25
경북/대구	(21)	9.5	57.1	28.6	4.8	66.7	4.8	3.71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0.0	100.0	0.0	4.00
광주/전라	(23)	39.1	34.8	26.1	0.0	73.9	0.0	4.13
대전/충청	(13)	38.5	53.8	7.7	0.0	92.3	0.0	4.31
강원/제주	(15)	26.7	66.7	6.7	0.0	93.3	0.0	4.20

[표 42]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4 -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Top2	평 균
▣ 전 체 ▣	(100)	45.0	48.0	7.0	93.0	4.38
연령						
20대	(1)	0.0	100.0	0.0	100.0	4.00
30대	(21)	28.6	66.7	4.8	95.2	4.24
40대	(41)	46.3	48.8	4.9	95.1	4.41
50대 이상	(37)	54.1	35.1	10.8	89.2	4.43
근무경력						
3년 미만	(65)	41.5	52.3	6.2	93.8	4.35
3~5년	(12)	58.3	25.0	16.7	83.3	4.42
5~10년	(6)	33.3	50.0	16.7	83.3	4.17
10년이상	(17)	52.9	47.1	0.0	100.0	4.53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2.9	52.4	4.8	95.2	4.38
미도입	(79)	45.6	46.8	7.6	92.4	4.38
소속						
의회	(66)	48.5	45.5	6.1	93.9	4.42
집행부	(34)	38.2	52.9	8.8	91.2	4.29
성별						
남자	(63)	52.4	39.7	7.9	92.1	4.44
여자	(37)	32.4	62.2	5.4	94.6	4.27
근무지역						
서울	(9)	33.3	55.6	11.1	88.9	4.22
인천/경기	(16)	43.8	56.3	0.0	100.0	4.44
경북/대구	(21)	52.4	38.1	9.5	90.5	4.43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100.0	4.33
광주/전라	(23)	43.5	39.1	17.4	82.6	4.26
대전/충청	(13)	53.8	46.2	0.0	100.0	4.54
강원/제주	(15)	40.0	60.0	0.0	100.0	4.40

[표 43]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5 -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의 확보등 재원의 조달이 가능한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Top2	평 균
■ 전 체 ■	(100)	49.0	46.0	5.0	95.0	4.44
연령						
20대	(1)	100.0	0.0	0.0	100.0	5.00
30대	(21)	33.3	66.7	0.0	100.0	4.33
40대	(41)	53.7	36.6	9.8	90.2	4.44
50대 이상	(37)	51.4	45.9	2.7	97.3	4.49
근무경력						
3년 미만	(65)	49.2	47.7	3.1	96.9	4.46
3~5년	(12)	41.7	41.7	16.7	83.3	4.25
5~10년	(6)	33.3	66.7	0.0	100.0	4.33
10년이상	(17)	58.8	35.3	5.9	94.1	4.53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3.3	61.9	4.8	95.2	4.29
미도입	(79)	53.2	41.8	5.1	94.9	4.48
소속						
의회	(66)	53.0	42.4	4.5	95.5	4.48
집행부	(34)	41.2	52.9	5.9	94.1	4.35
성별						
남자	(63)	55.6	41.3	3.2	96.8	4.52
여자	(37)	37.8	54.1	8.1	91.9	4.30
근무지역						
서울	(9)	44.4	55.6	0.0	100.0	4.44
인천/경기	(16)	62.5	31.3	6.3	93.8	4.56
경북/대구	(21)	42.9	57.1	0.0	100.0	4.43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100.0	4.00
광주/전라	(23)	30.4	60.9	8.7	91.3	4.22
대전/충청	(13)	69.2	23.1	7.7	92.3	4.62
강원/제주	(15)	66.7	26.7	6.7	93.3	4.60

[표 44]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6 -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된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37.0	53.0	9.0	1.0	90.0	1.0	4.26
연령								
20대	(1)	100.0	0.0	0.0	0.0	100.0	0.0	5.00
30대	(21)	19.0	71.4	9.5	0.0	90.5	0.0	4.10
40대	(41)	43.9	48.8	4.9	2.4	92.7	2.4	4.34
50대 이상	(37)	37.8	48.6	13.5	0.0	86.5	0.0	4.24
근무경력								
3년 미만	(65)	36.9	55.4	7.7	0.0	92.3	0.0	4.29
3~5년	(12)	33.3	58.3	8.3	0.0	91.7	0.0	4.25
5~10년	(6)	66.7	0.0	33.3	0.0	66.7	0.0	4.33
10년이상	(17)	29.4	58.8	5.9	5.9	88.2	5.9	4.12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8.1	52.4	9.5	0.0	90.5	0.0	4.29
미도입	(79)	36.7	53.2	8.9	1.3	89.9	1.3	4.25
소속								
의회	(66)	43.9	45.5	9.1	1.5	89.4	1.5	4.32
집행부	(34)	23.5	67.6	8.8	0.0	91.2	0.0	4.15
성별								
남자	(63)	34.9	54.0	11.1	0.0	88.9	0.0	4.24
여자	(37)	40.5	51.4	5.4	2.7	91.9	2.7	4.30
근무지역								
서울	(9)	11.1	77.8	11.1	0.0	88.9	0.0	4.00
인천/경기	(16)	31.3	50.0	18.8	0.0	81.3	0.0	4.13
경북/대구	(21)	28.6	61.9	9.5	0.0	90.5	0.0	4.19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0.0	100.0	0.0	4.33
광주/전라	(23)	43.5	47.8	8.7	0.0	91.3	0.0	4.35
대전/충청	(13)	53.8	30.8	7.7	7.7	84.6	7.7	4.31
강원/제주	(15)	46.7	53.3	0.0	0.0	100.0	0.0	4.47

[표 45]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7 - 새로운 규정이 신설된 경우
 절약되거나 추가되는 예산의 규모와 효과는 검토되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Top2	평 균
▣ 전 체 ▣	(100)	26.0	52.0	22.0	78.0	4.04
연령						
20대	(1)	0.0	100.0	0.0	100.0	4.00
30대	(21)	9.5	76.2	14.3	85.7	3.95
40대	(41)	31.7	46.3	22.0	78.0	4.10
50대 이상	(37)	29.7	43.2	27.0	73.0	4.03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9.2	47.7	23.1	76.9	4.06
3~5년	(12)	8.3	83.3	8.3	91.7	4.00
5~10년	(6)	33.3	33.3	33.3	66.7	4.00
10년 이상	(17)	23.5	52.9	23.5	76.5	4.00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9.0	57.1	23.8	76.2	3.95
미도입	(79)	27.8	50.6	21.5	78.5	4.06
소속						
의회	(66)	30.3	45.5	24.2	75.8	4.06
집행부	(34)	17.6	64.7	17.6	82.4	4.00
성별						
남자	(63)	25.4	49.2	25.4	74.6	4.00
여자	(37)	27.0	56.8	16.2	83.8	4.11
근무지역						
서울	(9)	11.1	77.8	11.1	88.9	4.00
인천/경기	(16)	31.3	50.0	18.8	81.3	4.13
경북/대구	(21)	19.0	52.4	28.6	71.4	3.90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100.0	4.00
광주/전라	(23)	26.1	43.5	30.4	69.6	3.96
대전/충청	(13)	46.2	30.8	23.1	76.9	4.23
강원/제주	(15)	26.7	60.0	13.3	86.7	4.13

부 록 2

[표 46]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8 -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57.0	33.0	9.0	1.0	90.0	1.0	4.46
연령								
20대	(1)	100.0	0.0	0.0	0.0	100.0	0.0	5.00
30대	(21)	33.3	47.6	14.3	4.8	81.0	4.8	4.10
40대	(41)	61.0	29.3	9.8	0.0	90.2	0.0	4.51
50대 이상	(37)	64.9	29.7	5.4	0.0	94.6	0.0	4.59
근무경력								
3년 미만	(65)	56.9	33.8	9.2	0.0	90.8	0.0	4.48
3~5년	(12)	58.3	41.7	0.0	0.0	100.0	0.0	4.58
5~10년	(6)	66.7	0.0	16.7	16.7	66.7	16.7	4.17
10년이상	(17)	52.9	35.3	11.8	0.0	88.2	0.0	4.41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57.1	33.3	9.5	0.0	90.5	0.0	4.48
미도입	(79)	57.0	32.9	8.9	1.3	89.9	1.3	4.46
소속								
의회	(66)	57.6	30.3	10.6	1.5	87.9	1.5	4.44
집행부	(34)	55.9	38.2	5.9	0.0	94.1	0.0	4.50
성별								
남자	(63)	61.9	31.7	6.3	0.0	93.7	0.0	4.56
여자	(37)	48.6	35.1	13.5	2.7	83.8	2.7	4.30
근무지역								
서울	(9)	22.2	77.8	0.0	0.0	100.0	0.0	4.22
인천/경기	(16)	68.8	18.8	12.5	0.0	87.5	0.0	4.56
경북/대구	(21)	71.4	23.8	4.8	0.0	95.2	0.0	4.67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0.0	100.0	0.0	4.33
광주/전라	(23)	52.2	34.8	8.7	4.3	87.0	4.3	4.35
대전/충청	(13)	53.8	30.8	15.4	0.0	84.6	0.0	4.38
강원/제주	(15)	60.0	26.7	13.3	0.0	86.7	0.0	4.47

[표 47]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9 - 내부 비용(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Top2	평 균
▣ 전 체 ▣	(100)	25.0	62.0	13.0	87.0	4.12
연령						
20대	(1)	100.0	0.0	0.0	100.0	5.00
30대	(21)	14.3	71.4	14.3	85.7	4.00
40대	(41)	29.3	58.5	12.2	87.8	4.17
50대 이상	(37)	24.3	62.2	13.5	86.5	4.11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4.6	61.5	13.8	86.2	4.11
3~5년	(12)	41.7	58.3	0.0	100.0	4.42
5~10년	(6)	0.0	66.7	33.3	66.7	3.67
10년이상	(17)	23.5	64.7	11.8	88.2	4.12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23.8	47.6	28.6	71.4	3.95
미도입	(79)	25.3	65.8	8.9	91.1	4.16
소속						
의회	(66)	27.3	57.6	15.2	84.8	4.12
집행부	(34)	20.6	70.6	8.8	91.2	4.12
성별						
남자	(63)	28.6	54.0	17.5	82.5	4.11
여자	(37)	18.9	75.7	5.4	94.6	4.14
근무지역						
서울	(9)	22.2	77.8	0.0	100.0	4.22
인천/경기	(16)	37.5	43.8	18.8	81.3	4.19
경북/대구	(21)	19.0	71.4	9.5	90.5	4.10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100.0	4.00
광주/전라	(23)	26.1	47.8	26.1	73.9	4.00
대전/충청	(13)	15.4	76.9	7.7	92.3	4.08
강원/제주	(15)	33.3	60.0	6.7	93.3	4.27

부 록 2

[표 48] 효율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10 - 외부비용(사회적 불경제)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 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21.0	63.0	15.0	1.0	84.0	1.0	4.04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4.00
30대	(21)	9.5	66.7	19.0	4.8	76.2	4.8	3.81
40대	(41)	24.4	63.4	12.2	0.0	87.8	0.0	4.12
50대 이상	(37)	24.3	59.5	16.2	0.0	83.8	0.0	4.08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6.2	56.9	15.4	1.5	83.1	1.5	4.08
3~5년	(12)	16.7	75.0	8.3	0.0	91.7	0.0	4.08
5~10년	(6)	0.0	66.7	33.3	0.0	66.7	0.0	3.67
10년이상	(17)	11.8	76.5	11.8	0.0	88.2	0.0	4.00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9.0	61.9	14.3	4.8	81.0	4.8	3.95
미도입	(79)	21.5	63.3	15.2	0.0	84.8	0.0	4.06
소속								
의회	(66)	24.2	57.6	16.7	1.5	81.8	1.5	4.05
집행부	(34)	14.7	73.5	11.8	0.0	88.2	0.0	4.03
성별								
남자	(63)	17.5	65.1	15.9	1.6	82.5	1.6	3.98
여자	(37)	27.0	59.5	13.5	0.0	86.5	0.0	4.14
근무지역								
서울	(9)	22.2	66.7	11.1	0.0	88.9	0.0	4.11
인천/경기	(16)	25.0	56.3	12.5	6.3	81.3	6.3	4.00
경북/대구	(21)	23.8	52.4	23.8	0.0	76.2	0.0	4.00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0.0	100.0	0.0	4.00
광주/전라	(23)	21.7	60.9	17.4	0.0	82.6	0.0	4.04
대전/충청	(13)	30.8	53.8	15.4	0.0	84.6	0.0	4.15
강원/제주	(15)	6.7	86.7	6.7	0.0	93.3	0.0	4.00

[표 49] 효율성 항목의 신규 포함 항목

(단위 : %)

	사례수 (명)	재정부담 대비 효율성은 어떠한지	상위법령 과의 중첩/ 상충은 없는지	외부 기관의 협조성	성과/ 효과성의 개선 여부	공정한 것인지	추가항목 없음
■ 전 체 ■	(100)	15.0	2.0	3.0	4.0	3.0	73.0
연령							
20대	(1)	0.0	0.0	0.0	0.0	0.0	100.0
30대	(21)	9.5	0.0	0.0	14.3	4.8	71.4
40대	(41)	14.6	4.9	4.9	2.4	2.4	70.7
50대 이상	(37)	18.9	0.0	2.7	0.0	2.7	75.7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6.9	0.0	3.1	6.2	1.5	72.3
3~5년	(12)	0.0	0.0	0.0	0.0	16.7	83.3
5~10년	(6)	0.0	16.7	0.0	0.0	0.0	83.3
10년이상	(17)	23.5	5.9	5.9	0.0	0.0	64.7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9.5	9.5	0.0	4.8	4.8	71.4
미도입	(79)	16.5	0.0	3.8	3.8	2.5	73.4
소속							
의회	(66)	15.2	3.0	1.5	4.5	1.5	74.2
집행부	(34)	14.7	0.0	5.9	2.9	5.9	70.6
성별							
남자	(63)	11.1	3.2	4.8	3.2	4.8	73.0
여자	(37)	21.6	0.0	0.0	5.4	0.0	73.0
근무지역							
서울	(9)	11.1	0.0	11.1	11.1	0.0	66.7
인천/경기	(16)	25.0	0.0	0.0	6.3	6.3	62.5
경북/대구	(21)	14.3	0.0	0.0	4.8	0.0	81.0
부산/울산/경남	(3)	66.7	0.0	0.0	0.0	0.0	33.3
광주/전라	(23)	13.0	8.7	0.0	0.0	4.3	73.9
대전/충청	(13)	15.4	0.0	7.7	0.0	0.0	76.9
강원/제주	(15)	0.0	0.0	6.7	6.7	6.7	80.0

[표 50] 입법평가 공평성 중요도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Top2	평 균
■ 전 체 ■	(100)	18.0	59.0	23.0	77.0	3.95
연령						
20대	(1)	0.0	100.0	0.0	100.0	4.00
30대	(21)	14.3	47.6	38.1	61.9	3.76
40대	(41)	19.5	61.0	19.5	80.5	4.00
50대 이상	(37)	18.9	62.2	18.9	81.1	4.00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5.4	66.2	18.5	81.5	3.97
3~5년	(12)	25.0	33.3	41.7	58.3	3.83
5~10년	(6)	0.0	50.0	50.0	50.0	3.50
10년이상	(17)	29.4	52.9	17.6	82.4	4.12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4.3	61.9	23.8	76.2	3.90
미도입	(79)	19.0	58.2	22.8	77.2	3.96
소속						
의회	(66)	18.2	59.1	22.7	77.3	3.95
집행부	(34)	17.6	58.8	23.5	76.5	3.94
성별						
남자	(63)	20.6	60.3	19.0	81.0	4.02
여자	(37)	13.5	56.8	29.7	70.3	3.84
근무지역						
서울	(9)	11.1	66.7	22.2	77.8	3.89
인천/경기	(16)	18.8	37.5	43.8	56.3	3.75
경북/대구	(21)	23.8	66.7	9.5	90.5	4.14
부산/울산/경남	(3)	0.0	66.7	33.3	66.7	3.67
광주/전라	(23)	13.0	56.5	30.4	69.6	3.83
대전/충청	(13)	23.1	53.8	23.1	76.9	4.00
강원/제주	(15)	20.0	73.3	6.7	93.3	4.13

[표 51] 공평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1 - 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녀/장애인 등을 차별하는 효과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33.0	44.0	22.0	1.0	77.0	1.0	4.09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4.00
30대	(21)	19.0	47.6	33.3	0.0	66.7	0.0	3.86
40대	(41)	36.6	46.3	14.6	2.4	82.9	2.4	4.17
50대 이상	(37)	37.8	37.8	24.3	0.0	75.7	0.0	4.14
근무경력								
3년 미만	(65)	32.3	44.6	23.1	0.0	76.9	0.0	4.09
3~5년	(12)	33.3	41.7	25.0	0.0	75.0	0.0	4.08
5~10년	(6)	16.7	50.0	33.3	0.0	66.7	0.0	3.83
10년이상	(17)	41.2	41.2	11.8	5.9	82.4	5.9	4.18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2.9	33.3	23.8	0.0	76.2	0.0	4.19
미도입	(79)	30.4	46.8	21.5	1.3	77.2	1.3	4.06
소속								
의회	(66)	37.9	34.8	25.8	1.5	72.7	1.5	4.09
집행부	(34)	23.5	61.8	14.7	0.0	85.3	0.0	4.09
성별								
남자	(63)	38.1	41.3	19.0	1.6	79.4	1.6	4.16
여자	(37)	24.3	48.6	27.0	0.0	73.0	0.0	3.97
근무지역								
서울	(9)	44.4	33.3	22.2	0.0	77.8	0.0	4.22
인천/경기	(16)	31.3	31.3	37.5	0.0	62.5	0.0	3.94
경북/대구	(21)	38.1	47.6	14.3	0.0	85.7	0.0	4.24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0.0	100.0	0.0	4.00
광주/전라	(23)	30.4	39.1	30.4	0.0	69.6	0.0	4.00
대전/충청	(13)	23.1	61.5	7.7	7.7	84.6	7.7	4.00
강원/제주	(15)	40.0	40.0	20.0	0.0	80.0	0.0	4.20

[표 52] 공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2 - 자치법규의 내용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21.0	57.0	21.0	1.0	78.0	1.0	3.98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4.00
30대	(21)	9.5	61.9	28.6	0.0	71.4	0.0	3.81
40대	(41)	19.5	58.5	19.5	2.4	78.0	2.4	3.95
50대 이상	(37)	29.7	51.4	18.9	0.0	81.1	0.0	4.11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3.1	61.5	15.4	0.0	84.6	0.0	4.08
3~5년	(12)	8.3	58.3	33.3	0.0	66.7	0.0	3.75
5~10년	(6)	0.0	33.3	66.7	0.0	33.3	0.0	3.33
10년이상	(17)	29.4	47.1	17.6	5.9	76.5	5.9	4.00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9.0	57.1	23.8	0.0	76.2	0.0	3.95
미도입	(79)	21.5	57.0	20.3	1.3	78.5	1.3	3.99
소속								
의회	(66)	24.2	54.5	19.7	1.5	78.8	1.5	4.02
집행부	(34)	14.7	61.8	23.5	0.0	76.5	0.0	3.91
성별								
남자	(63)	23.8	55.6	19.0	1.6	79.4	1.6	4.02
여자	(37)	16.2	59.5	24.3	0.0	75.7	0.0	3.92
근무지역								
서울	(9)	22.2	66.7	11.1	0.0	88.9	0.0	4.11
인천/경기	(16)	18.8	50.0	31.3	0.0	68.8	0.0	3.88
경북/대구	(21)	23.8	61.9	14.3	0.0	85.7	0.0	4.10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0.0	100.0	0.0	4.33
광주/전라	(23)	13.0	52.2	34.8	0.0	65.2	0.0	3.78
대전/충청	(13)	23.1	53.8	15.4	7.7	76.9	7.7	3.92
강원/제주	(15)	26.7	60.0	13.3	0.0	86.7	0.0	4.13

[표 53] 공평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3 - 대상자·관계자로부터 불만이나 소송제기는 없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 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11.0	54.0	33.0	2.0	65.0	2.0	3.74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3.00
30대	(21)	0.0	66.7	33.3	0.0	66.7	0.0	3.67
40대	(41)	12.2	51.2	31.7	4.9	63.4	4.9	3.71
50대 이상	(37)	16.2	51.4	32.4	0.0	67.6	0.0	3.84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3.8	50.8	35.4	0.0	64.6	0.0	3.78
3~5년	(12)	0.0	83.3	16.7	0.0	83.3	0.0	3.83
5~10년	(6)	0.0	33.3	50.0	16.7	33.3	16.7	3.17
10년이상	(17)	11.8	52.9	29.4	5.9	64.7	5.9	3.71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8	57.1	33.3	4.8	61.9	4.8	3.62
미도입	(79)	12.7	53.2	32.9	1.3	65.8	1.3	3.77
소속								
의회	(66)	10.6	53.0	33.3	3.0	63.6	3.0	3.71
집행부	(34)	11.8	55.9	32.4	0.0	67.6	0.0	3.79
성별								
남자	(63)	11.1	52.4	33.3	3.2	63.5	3.2	3.71
여자	(37)	10.8	56.8	32.4	0.0	67.6	0.0	3.78
근무지역								
서울	(9)	11.1	55.6	33.3	0.0	66.7	0.0	3.78
인천/경기	(16)	18.8	50.0	31.3	0.0	68.8	0.0	3.88
경북/대구	(21)	9.5	61.9	28.6	0.0	71.4	0.0	3.81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0.0	100.0	0.0	4.00
광주/전라	(23)	4.3	60.9	30.4	4.3	65.2	4.3	3.65
대전/충청	(13)	15.4	46.2	30.8	7.7	61.5	7.7	3.69
강원/제주	(15)	13.3	33.3	53.3	0.0	46.7	0.0	3.60

[표 54] 공평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4 - 자치법규의 내용이 과거의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한 것은 아닌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26.0	45.0	26.0	3.0	71.0	3.0	3.94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4.00
30대	(21)	9.5	57.1	33.3	0.0	66.7	0.0	3.76
40대	(41)	26.8	41.5	24.4	7.3	68.3	7.3	3.88
50대 이상	(37)	35.1	40.5	24.3	0.0	75.7	0.0	4.11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4.6	47.7	27.7	0.0	72.3	0.0	3.97
3~5년	(12)	25.0	66.7	8.3	0.0	91.7	0.0	4.17
5~10년	(6)	33.3	0.0	33.3	33.3	33.3	33.3	3.33
10년이상	(17)	29.4	35.3	29.4	5.9	64.7	5.9	3.88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8.1	38.1	19.0	4.8	76.2	4.8	4.10
미도입	(79)	22.8	46.8	27.8	2.5	69.6	2.5	3.90
소속								
의회	(66)	30.3	37.9	27.3	4.5	68.2	4.5	3.94
집행부	(34)	17.6	58.8	23.5	0.0	76.5	0.0	3.94
성별								
남자	(63)	28.6	42.9	23.8	4.8	71.4	4.8	3.95
여자	(37)	21.6	48.6	29.7	0.0	70.3	0.0	3.92
근무지역								
서울	(9)	22.2	44.4	33.3	0.0	66.7	0.0	3.89
인천/경기	(16)	31.3	50.0	18.8	0.0	81.3	0.0	4.13
경북/대구	(21)	19.0	52.4	28.6	0.0	71.4	0.0	3.90
부산/울산/경남	(3)	66.7	33.3	0.0	0.0	100.0	0.0	4.67
광주/전라	(23)	21.7	43.5	26.1	8.7	65.2	8.7	3.78
대전/충청	(13)	30.8	23.1	38.5	7.7	53.8	7.7	3.77
강원/제주	(15)	26.7	53.3	20.0	0.0	80.0	0.0	4.07

[표 55] 공평성 항목의 신규 포함 항목

(단위 : %)

	사례수 (명)	역차별/ 약자의 배려 정도	실질 적인 평등/ 공평이 반영 되었 는가	처벌및 규제가 상위 법령 대비 적절 한가	의견 수렴이 적절하 였는지	지역 사회 발전예 기여 하는지	중첩 되는/ 중복 되는 것은 없는지	부패 영향 평가 항목 필요함	추가 항목 없음
■ 전 체 ■	(100)	19.0	3.0	5.0	2.0	2.0	1.0	1.0	67.0
연령									
20대	(1)	0.0	0.0	0.0	0.0	0.0	0.0	0.0	100.0
30대	(21)	23.8	4.8	9.5	0.0	0.0	0.0	0.0	61.9
40대	(41)	19.5	2.4	4.9	2.4	2.4	2.4	0.0	65.9
50대 이상	(37)	16.2	2.7	2.7	2.7	2.7	0.0	2.7	70.3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6.9	1.5	6.2	0.0	1.5	1.5	1.5	70.8
3~5년	(12)	16.7	8.3	8.3	8.3	0.0	0.0	0.0	58.3
5~10년	(6)	16.7	0.0	0.0	0.0	0.0	0.0	0.0	83.3
10년이상	(17)	29.4	5.9	0.0	5.9	5.9	0.0	0.0	52.9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4.3	9.5	9.5	4.8	0.0	0.0	0.0	61.9
미도입	(79)	20.3	1.3	3.8	1.3	2.5	1.3	1.3	68.4
소속									
의회	(66)	18.2	1.5	4.5	3.0	1.5	1.5	0.0	69.7
집행부	(34)	20.6	5.9	5.9	0.0	2.9	0.0	2.9	61.8
성별									
남자	(63)	20.6	3.2	4.8	1.6	3.2	0.0	0.0	66.7
여자	(37)	16.2	2.7	5.4	2.7	0.0	2.7	2.7	67.6
근무지역									
서울	(9)	33.3	0.0	11.1	11.1	0.0	0.0	0.0	44.4
인천/경기	(16)	18.8	6.3	12.5	0.0	0.0	0.0	6.3	56.3
경북/대구	(21)	23.8	0.0	0.0	0.0	4.8	0.0	0.0	71.4
부산/울산/경남	(3)	33.3	0.0	0.0	0.0	0.0	0.0	0.0	66.7
광주/전라	(23)	21.7	0.0	0.0	4.3	0.0	0.0	0.0	73.9
대전/충청	(13)	15.4	7.7	7.7	0.0	0.0	0.0	0.0	69.2
강원/제주	(15)	0.0	6.7	6.7	0.0	6.7	6.7	0.0	73.3

[표 56] 입법평가 협동성 중요도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Top2	평 균
▣ 전 체 ▣	(100)	18.0	60.0	22.0	78.0	3.96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3.00
30대	(21)	9.5	66.7	23.8	76.2	3.86
40대	(41)	22.0	58.5	19.5	80.5	4.02
50대 이상	(37)	18.9	59.5	21.6	78.4	3.97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6.9	56.9	26.2	73.8	3.91
3~5년	(12)	25.0	66.7	8.3	91.7	4.17
5~10년	(6)	0.0	83.3	16.7	83.3	3.83
10년이상	(17)	23.5	58.8	17.6	82.4	4.06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9.0	61.9	19.0	81.0	4.00
미도입	(79)	17.7	59.5	22.8	77.2	3.95
소속						
의회	(66)	15.2	63.6	21.2	78.8	3.94
집행부	(34)	23.5	52.9	23.5	76.5	4.00
성별						
남자	(63)	19.0	58.7	22.2	77.8	3.97
여자	(37)	16.2	62.2	21.6	78.4	3.95
근무지역						
서울	(9)	0.0	77.8	22.2	77.8	3.78
인천/경기	(16)	31.3	56.3	12.5	87.5	4.19
경북/대구	(21)	14.3	66.7	19.0	81.0	3.95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100.0	4.00
광주/전라	(23)	13.0	65.2	21.7	78.3	3.91
대전/충청	(13)	23.1	46.2	30.8	69.2	3.92
강원/제주	(15)	26.7	40.0	33.3	66.7	3.93

[표 57] 협동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1 -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 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40.0	45.0	14.0	1.0	85.0	1.0	4.24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4.00
30대	(21)	33.3	38.1	23.8	4.8	71.4	4.8	4.00
40대	(41)	36.6	51.2	12.2	0.0	87.8	0.0	4.24
50대 이상	(37)	48.6	40.5	10.8	0.0	89.2	0.0	4.38
근무경력								
3년 미만	(65)	38.5	44.6	15.4	1.5	83.1	1.5	4.20
3~5년	(12)	50.0	33.3	16.7	0.0	83.3	0.0	4.33
5~10년	(6)	33.3	50.0	16.7	0.0	83.3	0.0	4.17
10년이상	(17)	41.2	52.9	5.9	0.0	94.1	0.0	4.35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52.4	23.8	19.0	4.8	76.2	4.8	4.24
미도입	(79)	36.7	50.6	12.7	0.0	87.3	0.0	4.24
소속								
의회	(66)	42.4	40.9	15.2	1.5	83.3	1.5	4.24
집행부	(34)	35.3	52.9	11.8	0.0	88.2	0.0	4.24
성별								
남자	(63)	46.0	41.3	11.1	1.6	87.3	1.6	4.32
여자	(37)	29.7	51.4	18.9	0.0	81.1	0.0	4.11
근무지역								
서울	(9)	11.1	55.6	33.3	0.0	66.7	0.0	3.78
인천/경기	(16)	37.5	50.0	6.3	6.3	87.5	6.3	4.19
경북/대구	(21)	38.1	52.4	9.5	0.0	90.5	0.0	4.29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0.0	100.0	0.0	4.33
광주/전라	(23)	43.5	39.1	17.4	0.0	82.6	0.0	4.26
대전/충청	(13)	53.8	38.5	7.7	0.0	92.3	0.0	4.46
강원/제주	(15)	46.7	33.3	20.0	0.0	80.0	0.0	4.27

부 록 2

[표 58] 협동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2 -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 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11.0	58.0	29.0	2.0	69.0	2.0	3.78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4.00
30대	(21)	9.5	52.4	33.3	4.8	61.9	4.8	3.67
40대	(41)	12.2	56.1	31.7	0.0	68.3	0.0	3.80
50대 이상	(37)	10.8	62.2	24.3	2.7	73.0	2.7	3.81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2.3	53.8	30.8	3.1	66.2	3.1	3.75
3~5년	(12)	0.0	75.0	25.0	0.0	75.0	0.0	3.75
5~10년	(6)	16.7	50.0	33.3	0.0	66.7	0.0	3.83
10년이상	(17)	11.8	64.7	23.5	0.0	76.5	0.0	3.88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4.3	52.4	28.6	4.8	66.7	4.8	3.76
미도입	(79)	10.1	59.5	29.1	1.3	69.6	1.3	3.78
소속								
의회	(66)	12.1	60.6	25.8	1.5	72.7	1.5	3.83
집행부	(34)	8.8	52.9	35.3	2.9	61.8	2.9	3.68
성별								
남자	(63)	9.5	60.3	27.0	3.2	69.8	3.2	3.76
여자	(37)	13.5	54.1	32.4	0.0	67.6	0.0	3.81
근무지역								
서울	(9)	11.1	77.8	11.1	0.0	88.9	0.0	4.00
인천/경기	(16)	25.0	43.8	25.0	6.3	68.8	6.3	3.88
경북/대구	(21)	4.8	61.9	28.6	4.8	66.7	4.8	3.67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0.0	100.0	0.0	4.00
광주/전라	(23)	8.7	56.5	34.8	0.0	65.2	0.0	3.74
대전/충청	(13)	15.4	53.8	30.8	0.0	69.2	0.0	3.85
강원/제주	(15)	6.7	53.3	40.0	0.0	60.0	0.0	3.67

[표 59] 협동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3 -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Top2	평 균
▣ 전 체 ▣	(100)	20.0	69.0	11.0	89.0	4.09
연령						
20대	(1)	0.0	100.0	0.0	100.0	4.00
30대	(21)	14.3	71.4	14.3	85.7	4.00
40대	(41)	22.0	73.2	4.9	95.1	4.17
50대 이상	(37)	21.6	62.2	16.2	83.8	4.05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8.5	69.2	12.3	87.7	4.06
3~5년	(12)	16.7	83.3	0.0	100.0	4.17
5~10년	(6)	16.7	66.7	16.7	83.3	4.00
10년이상	(17)	29.4	58.8	11.8	88.2	4.18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23.8	57.1	19.0	81.0	4.05
미도입	(79)	19.0	72.2	8.9	91.1	4.10
소속						
의회	(66)	22.7	65.2	12.1	87.9	4.11
집행부	(34)	14.7	76.5	8.8	91.2	4.06
성별						
남자	(63)	22.2	66.7	11.1	88.9	4.11
여자	(37)	16.2	73.0	10.8	89.2	4.05
근무지역						
서울	(9)	0.0	88.9	11.1	88.9	3.89
인천/경기	(16)	25.0	68.8	6.3	93.8	4.19
경북/대구	(21)	28.6	57.1	14.3	85.7	4.14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100.0	4.00
광주/전라	(23)	13.0	78.3	8.7	91.3	4.04
대전/충청	(13)	30.8	53.8	15.4	84.6	4.15
강원/제주	(15)	20.0	66.7	13.3	86.7	4.07

[표 60] 협동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4 -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하였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23.0	56.0	18.0	3.0	79.0	3.0	3.99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3.00
30대	(21)	14.3	52.4	23.8	9.5	66.7	9.5	3.71
40대	(41)	29.3	56.1	12.2	2.4	85.4	2.4	4.12
50대 이상	(37)	21.6	59.5	18.9	0.0	81.1	0.0	4.03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1.5	58.5	16.9	3.1	80.0	3.1	3.98
3~5년	(12)	16.7	66.7	16.7	0.0	83.3	0.0	4.00
5~10년	(6)	33.3	16.7	33.3	16.7	50.0	16.7	3.67
10년이상	(17)	29.4	52.9	17.6	0.0	82.4	0.0	4.12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9.0	61.9	9.5	9.5	81.0	9.5	3.90
미도입	(79)	24.1	54.4	20.3	1.3	78.5	1.3	4.01
소속								
의회	(66)	22.7	53.0	21.2	3.0	75.8	3.0	3.95
집행부	(34)	23.5	61.8	11.8	2.9	85.3	2.9	4.06
성별								
남자	(63)	23.8	54.0	17.5	4.8	77.8	4.8	3.97
여자	(37)	21.6	59.5	18.9	0.0	81.1	0.0	4.03
근무지역								
서울	(9)	22.2	44.4	33.3	0.0	66.7	0.0	3.89
인천/경기	(16)	25.0	56.3	6.3	12.5	81.3	12.5	3.94
경북/대구	(21)	28.6	47.6	23.8	0.0	76.2	0.0	4.05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0.0	100.0	0.0	4.00
광주/전라	(23)	13.0	60.9	21.7	4.3	73.9	4.3	3.83
대전/충청	(13)	30.8	53.8	15.4	0.0	84.6	0.0	4.15
강원/제주	(15)	26.7	60.0	13.3	0.0	86.7	0.0	4.13

[표 61] 협동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5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30.0	52.0	16.0	2.0	82.0	2.0	4.10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4.00
30대	(21)	23.8	47.6	23.8	4.8	71.4	4.8	3.90
40대	(41)	31.7	51.2	17.1	0.0	82.9	0.0	4.15
50대 이상	(37)	32.4	54.1	10.8	2.7	86.5	2.7	4.16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6.2	55.4	15.4	3.1	81.5	3.1	4.05
3~5년	(12)	33.3	58.3	8.3	0.0	91.7	0.0	4.25
5~10년	(6)	33.3	33.3	33.3	0.0	66.7	0.0	4.00
10년이상	(17)	41.2	41.2	17.6	0.0	82.4	0.0	4.24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3.3	47.6	14.3	4.8	81.0	4.8	4.10
미도입	(79)	29.1	53.2	16.5	1.3	82.3	1.3	4.10
소속								
의회	(66)	31.8	50.0	16.7	1.5	81.8	1.5	4.12
집행부	(34)	26.5	55.9	14.7	2.9	82.4	2.9	4.06
성별								
남자	(63)	31.7	50.8	14.3	3.2	82.5	3.2	4.11
여자	(37)	27.0	54.1	18.9	0.0	81.1	0.0	4.08
근무지역								
서울	(9)	11.1	66.7	22.2	0.0	77.8	0.0	3.89
인천/경기	(16)	37.5	43.8	12.5	6.3	81.3	6.3	4.13
경북/대구	(21)	38.1	47.6	14.3	0.0	85.7	0.0	4.24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0.0	100.0	0.0	4.33
광주/전라	(23)	26.1	56.5	17.4	0.0	82.6	0.0	4.09
대전/충청	(13)	38.5	38.5	23.1	0.0	76.9	0.0	4.15
강원/제주	(15)	20.0	60.0	13.3	6.7	80.0	6.7	3.93

[표 62] 협동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6 - [주민참가형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것이 기능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Top2	평 균
▣ 전 체 ▣	(100)	13.0	56.0	31.0	69.0	3.82
연령						
20대	(1)	0.0	100.0	0.0	100.0	4.00
30대	(21)	4.8	57.1	38.1	61.9	3.67
40대	(41)	12.2	63.4	24.4	75.6	3.88
50대 이상	(37)	18.9	45.9	35.1	64.9	3.84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0.8	56.9	32.3	67.7	3.78
3~5년	(12)	25.0	50.0	25.0	75.0	4.00
5~10년	(6)	16.7	50.0	33.3	66.7	3.83
10년이상	(17)	11.8	58.8	29.4	70.6	3.82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28.6	19.0	52.4	47.6	3.76
미도입	(79)	8.9	65.8	25.3	74.7	3.84
소속						
의회	(66)	15.2	53.0	31.8	68.2	3.83
집행부	(34)	8.8	61.8	29.4	70.6	3.79
성별						
남자	(63)	12.7	57.1	30.2	69.8	3.83
여자	(37)	13.5	54.1	32.4	67.6	3.81
근무지역						
서울	(9)	11.1	66.7	22.2	77.8	3.89
인천/경기	(16)	18.8	31.3	50.0	50.0	3.69
경북/대구	(21)	9.5	76.2	14.3	85.7	3.95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100.0	4.33
광주/전라	(23)	17.4	52.2	30.4	69.6	3.87
대전/충청	(13)	7.7	46.2	46.2	53.8	3.62
강원/제주	(15)	6.7	60.0	33.3	66.7	3.73

[표 63] 협동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7 - 조례의 집행에 주민이나 NPO의 참여·협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 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7.0	58.0	30.0	5.0	65.0	5.0	3.67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3.00
30대	(21)	0.0	66.7	23.8	9.5	66.7	9.5	3.57
40대	(41)	7.3	58.5	29.3	4.9	65.9	4.9	3.68
50대 이상	(37)	10.8	54.1	32.4	2.7	64.9	2.7	3.73
근무경력								
3년 미만	(65)	6.2	53.8	35.4	4.6	60.0	4.6	3.62
3~5년	(12)	8.3	75.0	16.7	0.0	83.3	0.0	3.92
5~10년	(6)	0.0	66.7	0.0	33.3	66.7	33.3	3.33
10년이상	(17)	11.8	58.8	29.4	0.0	70.6	0.0	3.82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8	52.4	33.3	9.5	57.1	9.5	3.52
미도입	(79)	7.6	59.5	29.1	3.8	67.1	3.8	3.71
소속								
의회	(66)	10.6	53.0	30.3	6.1	63.6	6.1	3.68
집행부	(34)	0.0	67.6	29.4	2.9	67.6	2.9	3.65
성별								
남자	(63)	9.5	57.1	28.6	4.8	66.7	4.8	3.71
여자	(37)	2.7	59.5	32.4	5.4	62.2	5.4	3.59
근무지역								
서울	(9)	11.1	55.6	33.3	0.0	66.7	0.0	3.78
인천/경기	(16)	12.5	43.8	37.5	6.3	56.3	6.3	3.63
경북/대구	(21)	4.8	66.7	23.8	4.8	71.4	4.8	3.71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0.0	100.0	0.0	4.00
광주/전라	(23)	13.0	60.9	17.4	8.7	73.9	8.7	3.78
대전/충청	(13)	0.0	53.8	38.5	7.7	53.8	7.7	3.46
강원/제주	(15)	0.0	53.3	46.7	0.0	53.3	0.0	3.53

[표 64] 협동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8 - 새로운 주민참가나 주민협동을 도입할 가능성은 없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 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9.0	51.0	36.0	4.0	60.0	4.0	3.65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3.00
30대	(21)	0.0	57.1	38.1	4.8	57.1	4.8	3.52
40대	(41)	9.8	61.0	26.8	2.4	70.7	2.4	3.78
50대 이상	(37)	13.5	37.8	43.2	5.4	51.4	5.4	3.59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0.8	47.7	36.9	4.6	58.5	4.6	3.65
3~5년	(12)	8.3	66.7	25.0	0.0	75.0	0.0	3.83
5~10년	(6)	0.0	66.7	16.7	16.7	66.7	16.7	3.50
10년이상	(17)	5.9	47.1	47.1	0.0	52.9	0.0	3.59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9.5	61.9	28.6	0.0	71.4	0.0	3.81
미도입	(79)	8.9	48.1	38.0	5.1	57.0	5.1	3.61
소속								
의회	(66)	10.6	48.5	37.9	3.0	59.1	3.0	3.67
집행부	(34)	5.9	55.9	32.4	5.9	61.8	5.9	3.62
성별								
남자	(63)	11.1	50.8	36.5	1.6	61.9	1.6	3.71
여자	(37)	5.4	51.4	35.1	8.1	56.8	8.1	3.54
근무지역								
서울	(9)	0.0	44.4	55.6	0.0	44.4	0.0	3.44
인천/경기	(16)	12.5	37.5	43.8	6.3	50.0	6.3	3.56
경북/대구	(21)	4.8	61.9	28.6	4.8	66.7	4.8	3.67
부산/울산/경남	(3)	0.0	66.7	33.3	0.0	66.7	0.0	3.67
광주/전라	(23)	13.0	56.5	26.1	4.3	69.6	4.3	3.78
대전/충청	(13)	7.7	46.2	38.5	7.7	53.8	7.7	3.54
강원/제주	(15)	13.3	46.7	40.0	0.0	60.0	0.0	3.73

[표 65] 협동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9 - 주민으로부터 불만이나 상담은 있는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10.0	60.0	27.0	3.0	70.0	3.0	3.77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3.00
30대	(21)	4.8	61.9	28.6	4.8	66.7	4.8	3.67
40대	(41)	14.6	56.1	26.8	2.4	70.7	2.4	3.83
50대 이상	(37)	8.1	64.9	24.3	2.7	73.0	2.7	3.78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0.8	60.0	26.2	3.1	70.8	3.1	3.78
3~5년	(12)	8.3	75.0	16.7	0.0	83.3	0.0	3.92
5~10년	(6)	0.0	83.3	16.7	0.0	83.3	0.0	3.83
10년이상	(17)	11.8	41.2	41.2	5.9	52.9	5.9	3.59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9.5	66.7	23.8	0.0	76.2	0.0	3.86
미도입	(79)	10.1	58.2	27.8	3.8	68.4	3.8	3.75
소속								
의회	(66)	13.6	54.5	30.3	1.5	68.2	1.5	3.80
집행부	(34)	2.9	70.6	20.6	5.9	73.5	5.9	3.71
성별								
남자	(63)	9.5	58.7	30.2	1.6	68.3	1.6	3.76
여자	(37)	10.8	62.2	21.6	5.4	73.0	5.4	3.78
근무지역								
서울	(9)	11.1	55.6	33.3	0.0	66.7	0.0	3.78
인천/경기	(16)	18.8	62.5	18.8	0.0	81.3	0.0	4.00
경북/대구	(21)	14.3	57.1	23.8	4.8	71.4	4.8	3.81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0.0	100.0	0.0	4.00
광주/전라	(23)	4.3	69.6	26.1	0.0	73.9	0.0	3.78
대전/충청	(13)	15.4	30.8	38.5	15.4	46.2	15.4	3.46
강원/제주	(15)	0.0	66.7	33.3	0.0	66.7	0.0	3.67

[표 66] 협동성 항목의 신규 포함 항목

(단위 : %)

	사례수 (명)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는지	주민/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었 는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 는지	타 기관과 업무협조가 제대로 진행되었 는지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되었 는지	추가항목 없음
■ 전 체 ■	(100)	1.0	14.0	2.0	4.0	3.0	76.0
연령							
20대	(1)	0.0	0.0	0.0	0.0	0.0	100.0
30대	(21)	0.0	23.8	4.8	4.8	4.8	61.9
40대	(41)	2.4	9.8	0.0	2.4	2.4	82.9
50대 이상	(37)	0.0	13.5	2.7	5.4	2.7	75.7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5	13.8	1.5	3.1	4.6	75.4
3~5년	(12)	0.0	0.0	8.3	0.0	0.0	91.7
5~10년	(6)	0.0	16.7	0.0	16.7	0.0	66.7
10년이상	(17)	0.0	23.5	0.0	5.9	0.0	70.6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8	19.0	0.0	0.0	0.0	76.2
미도입	(79)	0.0	12.7	2.5	5.1	3.8	75.9
소속							
의회	(66)	1.5	12.1	0.0	4.5	3.0	78.8
집행부	(34)	0.0	17.6	5.9	2.9	2.9	70.6
성별							
남자	(63)	1.6	14.3	1.6	4.8	1.6	76.2
여자	(37)	0.0	13.5	2.7	2.7	5.4	75.7
근무지역							
서울	(9)	0.0	22.2	0.0	11.1	0.0	66.7
인천/경기	(16)	0.0	25.0	12.5	0.0	0.0	62.5
경북/대구	(21)	0.0	14.3	0.0	4.8	0.0	81.0
부산/울산/경남	(3)	0.0	0.0	0.0	0.0	0.0	100.0
광주/전라	(23)	4.3	4.3	0.0	4.3	8.7	78.3
대전/충청	(13)	0.0	23.1	0.0	0.0	7.7	69.2
강원/제주	(15)	0.0	6.7	0.0	6.7	0.0	86.7

[표 67] 입법평가 적법성 중요도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Top2	평 균
▣ 전 체 ▣	(100)	44.0	46.0	10.0	90.0	4.34
연령						
20대	(1)	100.0	0.0	0.0	100.0	5.00
30대	(21)	38.1	52.4	9.5	90.5	4.29
40대	(41)	51.2	36.6	12.2	87.8	4.39
50대 이상	(37)	37.8	54.1	8.1	91.9	4.30
근무경력						
3년 미만	(65)	43.1	47.7	9.2	90.8	4.34
3~5년	(12)	50.0	41.7	8.3	91.7	4.42
5~10년	(6)	16.7	50.0	33.3	66.7	3.83
10년이상	(17)	52.9	41.2	5.9	94.1	4.47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8.1	52.4	9.5	90.5	4.29
미도입	(79)	45.6	44.3	10.1	89.9	4.35
소속						
의회	(66)	42.4	45.5	12.1	87.9	4.30
집행부	(34)	47.1	47.1	5.9	94.1	4.41
성별						
남자	(63)	46.0	46.0	7.9	92.1	4.38
여자	(37)	40.5	45.9	13.5	86.5	4.27
근무지역						
서울	(9)	55.6	22.2	22.2	77.8	4.33
인천/경기	(16)	50.0	43.8	6.3	93.8	4.44
경북/대구	(21)	23.8	76.2	0.0	100.0	4.24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100.0	4.33
광주/전라	(23)	26.1	52.2	21.7	78.3	4.04
대전/충청	(13)	69.2	23.1	7.7	92.3	4.62
강원/제주	(15)	66.7	26.7	6.7	93.3	4.60

[표 68]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1 -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위임근거 하에 제정되고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44.0	45.0	9.0	2.0	89.0	2.0	4.31
연령								
20대	(1)	100.0	0.0	0.0	0.0	100.0	0.0	5.00
30대	(21)	38.1	52.4	9.5	0.0	90.5	0.0	4.29
40대	(41)	43.9	46.3	7.3	2.4	90.2	2.4	4.32
50대 이상	(37)	45.9	40.5	10.8	2.7	86.5	2.7	4.30
근무경력								
3년 미만	(65)	47.7	44.6	7.7	0.0	92.3	0.0	4.40
3~5년	(12)	50.0	25.0	25.0	0.0	75.0	0.0	4.25
5~10년	(6)	0.0	50.0	16.7	33.3	50.0	33.3	3.17
10년이상	(17)	41.2	58.8	0.0	0.0	100.0	0.0	4.41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28.6	52.4	14.3	4.8	81.0	4.8	4.05
미도입	(79)	48.1	43.0	7.6	1.3	91.1	1.3	4.38
소속								
의회	(66)	37.9	48.5	10.6	3.0	86.4	3.0	4.21
집행부	(34)	55.9	38.2	5.9	0.0	94.1	0.0	4.50
성별								
남자	(63)	49.2	42.9	6.3	1.6	92.1	1.6	4.40
여자	(37)	35.1	48.6	13.5	2.7	83.8	2.7	4.16
근무지역								
서울	(9)	55.6	22.2	22.2	0.0	77.8	0.0	4.33
인천/경기	(16)	62.5	31.3	6.3	0.0	93.8	0.0	4.56
경북/대구	(21)	33.3	61.9	4.8	0.0	95.2	0.0	4.29
부산/울산/경남	(3)	66.7	33.3	0.0	0.0	100.0	0.0	4.67
광주/전라	(23)	30.4	47.8	13.0	8.7	78.3	8.7	4.00
대전/충청	(13)	53.8	38.5	7.7	0.0	92.3	0.0	4.46
강원/제주	(15)	40.0	53.3	6.7	0.0	93.3	0.0	4.33

[표 69]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2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였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46.0	40.0	13.0	1.0	86.0	1.0	4.31
연령								
20대	(1)	100.0	0.0	0.0	0.0	100.0	0.0	5.00
30대	(21)	33.3	52.4	14.3	0.0	85.7	0.0	4.19
40대	(41)	53.7	31.7	12.2	2.4	85.4	2.4	4.37
50대 이상	(37)	43.2	43.2	13.5	0.0	86.5	0.0	4.30
근무경력								
3년 미만	(65)	46.2	40.0	13.8	0.0	86.2	0.0	4.32
3~5년	(12)	50.0	41.7	0.0	8.3	91.7	8.3	4.33
5~10년	(6)	33.3	16.7	50.0	0.0	50.0	0.0	3.83
10년이상	(17)	47.1	47.1	5.9	0.0	94.1	0.0	4.41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3.3	47.6	19.0	0.0	81.0	0.0	4.14
미도입	(79)	49.4	38.0	11.4	1.3	87.3	1.3	4.35
소속								
의회	(66)	47.0	36.4	15.2	1.5	83.3	1.5	4.29
집행부	(34)	44.1	47.1	8.8	0.0	91.2	0.0	4.35
성별								
남자	(63)	50.8	36.5	11.1	1.6	87.3	1.6	4.37
여자	(37)	37.8	45.9	16.2	0.0	83.8	0.0	4.22
근무지역								
서울	(9)	66.7	22.2	11.1	0.0	88.9	0.0	4.56
인천/경기	(16)	62.5	25.0	12.5	0.0	87.5	0.0	4.50
경북/대구	(21)	38.1	52.4	9.5	0.0	90.5	0.0	4.29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0.0	100.0	0.0	4.33
광주/전라	(23)	39.1	39.1	17.4	4.3	78.3	4.3	4.13
대전/충청	(13)	53.8	30.8	15.4	0.0	84.6	0.0	4.38
강원/제주	(15)	33.3	53.3	13.3	0.0	86.7	0.0	4.20

[표 70]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3 -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별칙규정을 두고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49.0	40.0	9.0	2.0	89.0	2.0	4.36
연령								
20대	(1)	100.0	0.0	0.0	0.0	100.0	0.0	5.00
30대	(21)	42.9	42.9	14.3	0.0	85.7	0.0	4.29
40대	(41)	53.7	36.6	4.9	4.9	90.2	4.9	4.39
50대 이상	(37)	45.9	43.2	10.8	0.0	89.2	0.0	4.35
근무경력								
3년 미만	(65)	46.2	43.1	10.8	0.0	89.2	0.0	4.35
3~5년	(12)	58.3	33.3	0.0	8.3	91.7	8.3	4.42
5~10년	(6)	33.3	50.0	16.7	0.0	83.3	0.0	4.17
10년이상	(17)	58.8	29.4	5.9	5.9	88.2	5.9	4.41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2.9	42.9	14.3	0.0	85.7	0.0	4.29
미도입	(79)	50.6	39.2	7.6	2.5	89.9	2.5	4.38
소속								
의회	(66)	48.5	39.4	9.1	3.0	87.9	3.0	4.33
집행부	(34)	50.0	41.2	8.8	0.0	91.2	0.0	4.41
성별								
남자	(63)	57.1	33.3	6.3	3.2	90.5	3.2	4.44
여자	(37)	35.1	51.4	13.5	0.0	86.5	0.0	4.22
근무지역								
서울	(9)	66.7	22.2	11.1	0.0	88.9	0.0	4.56
인천/경기	(16)	56.3	31.3	12.5	0.0	87.5	0.0	4.44
경북/대구	(21)	47.6	42.9	9.5	0.0	90.5	0.0	4.38
부산/울산/경남	(3)	66.7	33.3	0.0	0.0	100.0	0.0	4.67
광주/전라	(23)	34.8	52.2	8.7	4.3	87.0	4.3	4.17
대전/충청	(13)	61.5	30.8	0.0	7.7	92.3	7.7	4.46
강원/제주	(15)	40.0	46.7	13.3	0.0	86.7	0.0	4.27

[표 71]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4 - 주민/사업자의 권리/이익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아니한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44.0	46.0	8.0	2.0	90.0	2.0	4.32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4.00
30대	(21)	23.8	61.9	14.3	0.0	85.7	0.0	4.10
40대	(41)	53.7	39.0	2.4	4.9	92.7	4.9	4.41
50대 이상	(37)	45.9	43.2	10.8	0.0	89.2	0.0	4.35
근무경력								
3년 미만	(65)	44.6	46.2	9.2	0.0	90.8	0.0	4.35
3~5년	(12)	41.7	50.0	0.0	8.3	91.7	8.3	4.25
5~10년	(6)	33.3	50.0	16.7	0.0	83.3	0.0	4.17
10년이상	(17)	47.1	41.2	5.9	5.9	88.2	5.9	4.29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7.6	42.9	9.5	0.0	90.5	0.0	4.38
미도입	(79)	43.0	46.8	7.6	2.5	89.9	2.5	4.30
소속								
의회	(66)	45.5	45.5	6.1	3.0	90.9	3.0	4.33
집행부	(34)	41.2	47.1	11.8	0.0	88.2	0.0	4.29
성별								
남자	(63)	47.6	42.9	6.3	3.2	90.5	3.2	4.35
여자	(37)	37.8	51.4	10.8	0.0	89.2	0.0	4.27
근무지역								
서울	(9)	55.6	33.3	11.1	0.0	88.9	0.0	4.44
인천/경기	(16)	56.3	31.3	12.5	0.0	87.5	0.0	4.44
경북/대구	(21)	33.3	61.9	4.8	0.0	95.2	0.0	4.29
부산/울산/경남	(3)	66.7	33.3	0.0	0.0	100.0	0.0	4.67
광주/전라	(23)	30.4	56.5	8.7	4.3	87.0	4.3	4.13
대전/충청	(13)	53.8	30.8	7.7	7.7	84.6	7.7	4.31
강원/제주	(15)	46.7	46.7	6.7	0.0	93.3	0.0	4.40

[표 72]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5 - 행정소송이나 불복심사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한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26.0	47.0	25.0	2.0	73.0	2.0	3.97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0.0	3.00
30대	(21)	19.0	52.4	28.6	0.0	71.4	0.0	3.90
40대	(41)	29.3	46.3	19.5	4.9	75.6	4.9	4.00
50대 이상	(37)	27.0	45.9	27.0	0.0	73.0	0.0	4.00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9.2	44.6	26.2	0.0	73.8	0.0	4.03
3~5년	(12)	16.7	58.3	25.0	0.0	75.0	0.0	3.92
5~10년	(6)	16.7	50.0	16.7	16.7	66.7	16.7	3.67
10년이상	(17)	23.5	47.1	23.5	5.9	70.6	5.9	3.88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23.8	33.3	38.1	4.8	57.1	4.8	3.76
미도입	(79)	26.6	50.6	21.5	1.3	77.2	1.3	4.03
소속								
의회	(66)	28.8	40.9	27.3	3.0	69.7	3.0	3.95
집행부	(34)	20.6	58.8	20.6	0.0	79.4	0.0	4.00
성별								
남자	(63)	27.0	44.4	25.4	3.2	71.4	3.2	3.95
여자	(37)	24.3	51.4	24.3	0.0	75.7	0.0	4.00
근무지역								
서울	(9)	11.1	55.6	33.3	0.0	66.7	0.0	3.78
인천/경기	(16)	37.5	37.5	25.0	0.0	75.0	0.0	4.13
경북/대구	(21)	33.3	57.1	9.5	0.0	90.5	0.0	4.24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0.0	100.0	0.0	4.00
광주/전라	(23)	21.7	43.5	30.4	4.3	65.2	4.3	3.83
대전/충청	(13)	38.5	23.1	30.8	7.7	61.5	7.7	3.92
강원/제주	(15)	13.3	53.3	33.3	0.0	66.7	0.0	3.80

[표 73]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6 - 조례내용이 헌정질서 및 상위 법령에 배치되거나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41.0	50.0	8.0	1.0	91.0	1.0	4.31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4.00
30대	(21)	38.1	52.4	9.5	0.0	90.5	0.0	4.29
40대	(41)	46.3	43.9	7.3	2.4	90.2	2.4	4.34
50대 이상	(37)	37.8	54.1	8.1	0.0	91.9	0.0	4.30
근무경력								
3년 미만	(65)	40.0	52.3	7.7	0.0	92.3	0.0	4.32
3~5년	(12)	41.7	33.3	16.7	8.3	75.0	8.3	4.08
5~10년	(6)	33.3	50.0	16.7	0.0	83.3	0.0	4.17
10년이상	(17)	47.1	52.9	0.0	0.0	100.0	0.0	4.47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3.3	52.4	14.3	0.0	85.7	0.0	4.19
미도입	(79)	43.0	49.4	6.3	1.3	92.4	1.3	4.34
소속								
의회	(66)	40.9	47.0	10.6	1.5	87.9	1.5	4.27
집행부	(34)	41.2	55.9	2.9	0.0	97.1	0.0	4.38
성별								
남자	(63)	49.2	46.0	3.2	1.6	95.2	1.6	4.43
여자	(37)	27.0	56.8	16.2	0.0	83.8	0.0	4.11
근무지역								
서울	(9)	55.6	22.2	22.2	0.0	77.8	0.0	4.33
인천/경기	(16)	37.5	56.3	6.3	0.0	93.8	0.0	4.31
경북/대구	(21)	42.9	57.1	0.0	0.0	100.0	0.0	4.43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0.0	100.0	0.0	4.00
광주/전라	(23)	34.8	47.8	13.0	4.3	82.6	4.3	4.13
대전/충청	(13)	53.8	46.2	0.0	0.0	100.0	0.0	4.54
강원/제주	(15)	40.0	46.7	13.3	0.0	86.7	0.0	4.27

[표 74]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7 -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 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전혀 중요하지 않다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31.0	49.0	17.0	2.0	1.0	80.0	3.0	4.07
연령									
20대	(1)	100.0	0.0	0.0	0.0	0.0	100.0	0.0	5.00
30대	(21)	28.6	52.4	19.0	0.0	0.0	81.0	0.0	4.10
40대	(41)	41.5	46.3	9.8	2.4	0.0	87.8	2.4	4.27
50대 이상	(37)	18.9	51.4	24.3	2.7	2.7	70.3	5.4	3.81
근무경력									
3년 미만	(65)	30.8	49.2	16.9	1.5	1.5	80.0	3.1	4.06
3~5년	(12)	41.7	41.7	8.3	8.3	0.0	83.3	8.3	4.17
5~10년	(6)	16.7	33.3	50.0	0.0	0.0	50.0	0.0	3.67
10년이상	(17)	29.4	58.8	11.8	0.0	0.0	88.2	0.0	4.18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3.3	42.9	19.0	4.8	0.0	76.2	4.8	4.05
미도입	(79)	30.4	50.6	16.5	1.3	1.3	81.0	2.5	4.08
소속									
의회	(66)	30.3	50.0	15.2	3.0	1.5	80.3	4.5	4.05
집행부	(34)	32.4	47.1	20.6	0.0	0.0	79.4	0.0	4.12
성별									
남자	(63)	34.9	50.8	11.1	3.2	0.0	85.7	3.2	4.17
여자	(37)	24.3	45.9	27.0	0.0	2.7	70.3	2.7	3.89
근무지역									
서울	(9)	22.2	66.7	11.1	0.0	0.0	88.9	0.0	4.11
인천/경기	(16)	50.0	31.3	18.8	0.0	0.0	81.3	0.0	4.31
경북/대구	(21)	28.6	61.9	9.5	0.0	0.0	90.5	0.0	4.19
부산/울산/경남	(3)	0.0	100.0	0.0	0.0	0.0	100.0	0.0	4.00
광주/전라	(23)	30.4	39.1	26.1	4.3	0.0	69.6	4.3	3.96
대전/충청	(13)	23.1	46.2	23.1	0.0	7.7	69.2	7.7	3.77
강원/제주	(15)	33.3	46.7	13.3	6.7	0.0	80.0	6.7	4.07

[표 75]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8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Top2	평 균
▣ 전 체 ▣	(100)	34.0	54.0	12.0	88.0	4.22
연령						
20대	(1)	0.0	100.0	0.0	100.0	4.00
30대	(21)	19.0	66.7	14.3	85.7	4.05
40대	(41)	41.5	53.7	4.9	95.1	4.37
50대 이상	(37)	35.1	45.9	18.9	81.1	4.16
근무경력						
3년 미만	(65)	30.8	55.4	13.8	86.2	4.17
3~5년	(12)	41.7	58.3	0.0	100.0	4.42
5~10년	(6)	16.7	50.0	33.3	66.7	3.83
10년이상	(17)	47.1	47.1	5.9	94.1	4.41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33.3	61.9	4.8	95.2	4.29
미도입	(79)	34.2	51.9	13.9	86.1	4.20
소속						
의회	(66)	39.4	50.0	10.6	89.4	4.29
집행부	(34)	23.5	61.8	14.7	85.3	4.09
성별						
남자	(63)	36.5	57.1	6.3	93.7	4.30
여자	(37)	29.7	48.6	21.6	78.4	4.08
근무지역						
서울	(9)	44.4	44.4	11.1	88.9	4.33
인천/경기	(16)	37.5	43.8	18.8	81.3	4.19
경북/대구	(21)	38.1	47.6	14.3	85.7	4.24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100.0	4.33
광주/전라	(23)	30.4	56.5	13.0	87.0	4.17
대전/충청	(13)	30.8	53.8	15.4	84.6	4.15
강원/제주	(15)	26.7	73.3	0.0	100.0	4.27

[표 76] 적법성 세부항목의 중요도 9 - 사법절차로 인해 조례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없는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	보 통	중요하지 않은 편	Top2	Bottom2	평 균
▣ 전 체 ▣	(100)	28.0	54.0	17.0	1.0	82.0	1.0	4.09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0.0	4.00
30대	(21)	19.0	61.9	19.0	0.0	81.0	0.0	4.00
40대	(41)	31.7	56.1	9.8	2.4	87.8	2.4	4.17
50대 이상	(37)	29.7	45.9	24.3	0.0	75.7	0.0	4.05
근무경력								
3년 미만	(65)	26.2	53.8	20.0	0.0	80.0	0.0	4.06
3~5년	(12)	33.3	50.0	8.3	8.3	83.3	8.3	4.08
5~10년	(6)	0.0	83.3	16.7	0.0	83.3	0.0	3.83
10년이상	(17)	41.2	47.1	11.8	0.0	88.2	0.0	4.29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19.0	61.9	19.0	0.0	81.0	0.0	4.00
미도입	(79)	30.4	51.9	16.5	1.3	82.3	1.3	4.11
소속								
의회	(66)	30.3	50.0	18.2	1.5	80.3	1.5	4.09
집행부	(34)	23.5	61.8	14.7	0.0	85.3	0.0	4.09
성별								
남자	(63)	31.7	54.0	12.7	1.6	85.7	1.6	4.16
여자	(37)	21.6	54.1	24.3	0.0	75.7	0.0	3.97
근무지역								
서울	(9)	44.4	33.3	22.2	0.0	77.8	0.0	4.22
인천/경기	(16)	37.5	50.0	12.5	0.0	87.5	0.0	4.25
경북/대구	(21)	33.3	47.6	19.0	0.0	81.0	0.0	4.14
부산/울산/경남	(3)	33.3	66.7	0.0	0.0	100.0	0.0	4.33
광주/전라	(23)	17.4	60.9	17.4	4.3	78.3	4.3	3.91
대전/충청	(13)	30.8	46.2	23.1	0.0	76.9	0.0	4.08
강원/제주	(15)	13.3	73.3	13.3	0.0	86.7	0.0	4.00

[표 77] 적법성 항목의 신규 포함 항목

(단위 : %)

	사례수 (명)	헌법적 가치 고려	상충, 중복 되는 것은 없는지	적법성에 대한 지나친 평가는 삼가 해야 함	과거 유사한 내용의 쟁송이 있었 는지	자치 입법의 확대 기여도	과도한 규제 또는 혜택은 없는지	특수성, 풍속 등을 담아내고 있는지	절차 제도의 효과/ 구비 정도	추가 항목 없음
■ 전 체 ■	(100)	4.0	6.0	3.0	3.0	1.0	4.0	1.0	2.0	76.0
연령										
20대	(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0대	(21)	9.5	9.5	0.0	4.8	0.0	4.8	0.0	0.0	71.4
40대	(41)	0.0	4.9	4.9	2.4	0.0	2.4	0.0	2.4	82.9
50대 이상	(37)	5.4	5.4	2.7	2.7	2.7	5.4	2.7	2.7	70.3
근무경력										
3년 미만	(65)	1.5	7.7	1.5	1.5	0.0	6.2	0.0	3.1	78.5
3~5년	(12)	8.3	0.0	16.7	0.0	0.0	0.0	0.0	0.0	75.0
5~10년	(6)	0.0	0.0	0.0	33.3	0.0	0.0	0.0	0.0	66.7
10년이상	(17)	11.8	5.9	0.0	0.0	5.9	0.0	5.9	0.0	70.6
평가도입여부										
도입	(21)	4.8	4.8	4.8	9.5	0.0	0.0	0.0	0.0	76.2
미도입	(79)	3.8	6.3	2.5	1.3	1.3	5.1	1.3	2.5	75.9
소속										
의회	(66)	4.5	3.0	4.5	3.0	1.5	4.5	1.5	1.5	75.8
집행부	(34)	2.9	11.8	0.0	2.9	0.0	2.9	0.0	2.9	76.5
성별										
남자	(63)	6.3	4.8	3.2	3.2	1.6	3.2	1.6	1.6	74.6
여자	(37)	0.0	8.1	2.7	2.7	0.0	5.4	0.0	2.7	78.4
근무지역										
서울	(9)	0.0	11.1	11.1	0.0	11.1	0.0	11.1	11.1	44.4
인천/경기	(16)	18.8	12.5	0.0	0.0	0.0	6.3	0.0	6.3	56.3
경북/대구	(21)	4.8	0.0	0.0	0.0	0.0	0.0	0.0	0.0	95.2
부산/울산/경남	(3)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광주/전라	(23)	0.0	4.3	8.7	8.7	0.0	4.3	0.0	0.0	73.9
대전/충청	(13)	0.0	15.4	0.0	0.0	0.0	7.7	0.0	0.0	76.9
강원/제주	(15)	0.0	0.0	0.0	6.7	0.0	6.7	0.0	0.0	86.7